

2023 年度 第 16 回韓日・日韓政治思想学会 共同学術会議

ポピュリズムとデモクラシーの行方

(파퐁리즘과 데모크라시의 행방)

日程：2023 年 12 月 9 日

会場：国際基督教大学・国際会議室（東ヶ崎潔記念ダイアログハウス 2 階）

（도가사키 기요시 기념 다이알로그 하우스 2층）

共催：国際基督教大学社会科学研究所

協賛：公益財団法人社会科学国際交流江草基金、財団法人日韓文化交流基金

使用言語：日本語、韓国語、英語

Program

Opening Remarks (9:00-9:15)

木部尚志 Takashi KIBE（国際基督教大学、日本・政治思想学会代表理事）

First Session (9:15-11:00)

司会者 徐載晶 서재정/Jae-Jung Suh（国際基督教大学）

報告者 朴珍坤 박진곤/Jin-gon Park（誠信女子大学校）

「Partisanship in the Age of Polarization」 山口晃人 Akito YAMAGUCHI（日本学術振興会）

「なぜ今ロトクラシーか？ーロトクラシーに対する誤解を取り除く」

（왜 지금 로토크라시인가: 로토크라시에 대한 오해와 해명）」

咸圭鎮 함규진/Kyujin Ham（ソウル教育大学校）「중용

사상과 포스트데모스론의 친화성에 대한 고찰」（「中

庸思想とポストデモス論の親和性に関する考察」）

討論者 井上彰 Akira INOUE（東京大学）

李尙遠 이상원/SangWon Lee（仁川大学校）

Coffee Break (11:00-11:15)

Second Session (11:15-13:00)

司会者 金敬熙 김경희/KyungHee Kim（梨花女子大学）

報告者 山岡龍一 Ryuichi YAMAOKA（放送大学）

「不正義の感覚と、感情の政治としてのデモクラシー」

（부정의의 감각과 감정의 정치로서의 민주주의）

表光民 표광민/Kwangmin Pyo（慶北大学校）

「멸망의 정치학과 카테콘:주권자의 비극적 결단에서 만나는 칼 슈미트와 신카이 마코토」

（「滅びゆく世界におけるカテコンー主権者の悲劇的決断で出会うカール・シュミットと新海誠」）

和田昌也 Masaya WADA（同志社大学）

「抗争・自治・蜂起ーフランスのラディカルデモクラシーについて」

（「항쟁・자치・봉기: 프랑스의 급진 민주주의에 대해서」）

討論者 崔亨翼 최형익/Hyung-ik Choi（韓信大学校）

長野晃 Akira NAGANO（慶應義塾大学）

Lunch (13:00-14:00)

Third Session (14:00-15:45)

司会者 松田宏一郎 Koichiro MATSUDA (立教大学)

報告者 林慶石 임경석/KyungSeok Lim (京畿大学校、眞誠愛教養大学)

「위기 시대의 극복과 공생을 위한 정치철학: 칸트의 ‘영구평화’와 맑스의 ‘해방적 비판’ 사상의 상보성을 중심으로」

(「危機時代の克服と共存のための政治哲学—カントの「永久平和」とマルクスの「開放的批判」思想の相補性を中心に」)

千葉眞 Shin CHIBA (国際基督教大学名誉教授)

「ポピュリズムは民主主義の活性化に寄与するのか」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崔亨翼 최형익/Hyung-ik Choi (韓信大学校)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지(大地)의 노모스’의 위기」

(「ウクライナ戦争と「大地のノモス」の危機」)

討論者 川出良枝 Yoshie KAWADE (東京大学)

表光民 표광민/Kwangmin Pyo (慶北大学校)

Coffee Break (15:45-16:00)

Fourth Session (16:00-17:45)

司会者 荻部直 Tadashi KARUBE (東京大学)

報告者 柳愛林 류애림/Aerim Ryu (九州大学)

「デモクラシーの別名、共和政から民主主義まで—近代日本における『アメリカのデモクラシー』の受容」

(「데모크라시의 별명, 공화정에서 민주주의까지: 근대 일본의 『미국의 데모크라시』 수용」)

蘇眞瑩 소진형/Jeanhyoung Soh (ソウル大学校)

「“서양” 개념의 형성과 굴절: 『벽위신편』의 천주교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西洋」概念の形成と屈折—『關衛新編』の天主教関連論議を中心に」)

杉山亮 Ryo SUGIYAMA (東京都立大学)

「包摂と排除—南北朝正閏問題周辺」

(「포섭과 배제—남북조 문제와 그 주변」)

討論者 金杭 김항/Hang Kim (延世大学校)

李セボン Saebom Lee (成蹊大学)

Closing Remarks (17:45-18:00)

金聖昊 김성호/Sung Ho Kim (延世大学校、韓国政治思想学会会長)

Session 1

박진곤
(誠信女子大学校)

**“Partisanship in the Age of
Polarization”**

*Work in progress: Do not circulate or cite without permission.

Title: “Partisanship in the Age of Polarization”

Park, Jin-g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jgpark87@gmail.com)

Paper Goal:

- Critically engaging with contemporary ‘pro-party’ theorists by reconstructing and assessing the American political philosopher Russell Muirhead’s thoughts on political partisanship (Muirhead is one of the leading participants in the contemporary debate on the topic).
- Works that were considered:
 - *The Promise of Party: in a Polarized Age* (2014) (Muirhead’s most comprehensive and lengthy work on partisanship)
 - Three major articles on partisanship since *The Promise of Party*:¹
 - ◆ “Partisan Justification” (2017)
 - ◆ “The Political Theory of Parties and Partisanship: Catching Up” (2020)²
 - ◆ “Resisting Abusive Legalism: Electoral Fairness and the Partisan Commitment to Political Pluralism” (2020)³

I. Reconstruction of Muirhead’s theory of partisanship⁴

(A) Background for Muirhead’s theorizing about partisanship

- (i) The current prevalence of pathological partisanship (historical)
 - Common pathologies of partisanship: “blind loyalty, enmity, distrust, and perceptual distortion.” p. 16
 - Many of today’s partisans hold to their preferences “with uncompromising certitude.” p. 247
 - ◆ They believe they possess “the whole truth,” often lacking any “negative capacity” to “turn against their own goals and values even intellectually and experimentally.” p. 247
 - There is too much “low partisanship” (though this sort of partisanship is necessary to some extent). p. 238
 - Sometimes partisans intentionally threaten to destroy the common good (e.g., the debt ceiling crisis in the US).
 - Partisanship can potentially destroy the political community and make common public deliberations impossible.
 - Partisanship can lead to violence because the stakes are perceived to be so high.
- (ii)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s neglect of the topic (theoretical)
 - Currently, we do not know how to value and understand partisanship.
 - Partially addressed by the recent ‘pro-party’ theorists like Muirhead himself.

(B) The meaning of partisanship

- (i) The definition of the partisan
 - Muirhead does not explicitly define it in a comprehensive way.
 - In *The Promise of Party*, its meaning is established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citizen types.
 - “The extremes (the power seeker and the zealot) are morally deficient and practically hazardous. The midpoint (the moral purist) is more admirable, but ineffectual. What gets lost is any distinctly *political* virtue—an orientation that blends the pragmatic and the principled.” p. 27
 - The willingness to compromise in order to form a group large enough to legitimately, democratically seize power is what sets the partisan apart from the other types of principled political actors.
 - The willingness to ‘stand with’ others rather than standing only for principles or policies is what distinguishes the partisan from other political types like the ideal independent citizen who acts

¹ In this research note, direct quotes from the articles are separately and informally cited in footnotes. Ones from *The Promise of Party*—more numerous—are marked with page numbers only.

² Co-authored with Nancy L. Rosenblum.

³ Co-authored with Lise Esther Herman.

⁴ I do this by taking *The Promise of Party* as the starting point and using the three later articles as supplements.

alone. (Here, the ability to ‘stand with’ others means the ability to “associate with those who disagree” p. 19).

- There is a strong indication in “Resisting Abusive Legalism” (2020) that Muirhead understands partisanship as entailing an identification with or commitment to a political party.
- The partisan is willing to make electoral aggregation happen.
 - In this regard, partisanship is “a virtue of democratic citizens”: “it displays a democratic sympathy, a willingness to compromise, to give and to take, and (perhaps most of all) to bear the burdens of standing with one’s fellow citizens.” p. 91
- Also, they are loyal to their political parties, leaders, and programs.
 - Partisanship is a kind of friendship.
- (ii) The significance of parties and partisans for liberal democracy (even for deliberative democracy)
 - Deliberative democracy needs parties and partisanship because they make democracy decisive by making elections (aggregation of preferences) happen (existence of mere reasonable citizens is not sufficient to achieve this outcome).
 - Partisanship cannot be escaped but has to be managed (not less but better partisanship).
 - To be political is to be partisan; the choice confronting every citizen how to be partisan (rather than whether he or she should be partisan).

(C) Ethical partisanship

- (i) Content
 - Constitutional partisanship rather than revolutionary partisanship (which seeks to change the regime itself)
 - ◆ Agreement among constitutional partisans
 - The constitutional agreement about process rather than principle (not an agreement about ideas but about how to disagree)
 - “The single procedural principle that ethical partisans never transgress is the prohibition of violence.” p. 107
 - “[It] is an agreement to engage in disagreement without threatening to exit or to destroy the constitutional process of disagreement.” p. 55
 - “Rival partisans are adversaries, not opponents. Even when opponents disagree on constitutional fundamentals—and they will—they can agree in general about how such disputes should be settled. They forsake violent revolution, for one. This means, concretely, that they peacefully transfer the powers of the offices they have held when they lose elections.” p. 107
 - “For minimalists like Rosenblum and me, ethical partisanship is found in the renunciation of violence and the acceptance of a regulated rivalry.”⁵
 - => In sum, agreeing to an established constitutional process of disagreement that is nonviolent and fair (i.e., agreeing to getting and losing power through a free and fair election)
 - Agreement regarding ‘the first principles of political morality’
 - “Modern politics posits certain basic, first principles of political morality—that citizens are free and equal, that government should be founded on consent, that individuals have rights.” p. 53
 - “In agreeing to the form, we agree to the possibility of first principles of political morality, to accept the possibility that these first principles might be true, and therefore also to the possibility that the rule of law is not entirely a veil that makes the power some exercise over others palatable.” p. 240
 - The norm of arguing using ‘first principles of political morality’
 - “What binds the partisan community together is not a settled conviction that we possess first principles of political morality and agree about precisely how they are to be applied—that our reason has settled what for so long has divided us. It is rather that we agree to argue in terms of these principles.” p. 240
 - ◆ Holds “pluralist commitment”⁶

⁵ “Partisan Justification” (2017), p. 2.

⁶ “Resisting Abusive Legalism” (2020), p. 11.

- “[It] requires that partisans reject holism, or the view that the people are essentially *one* and that there is therefore only one legitimate way of understanding the common good.”⁷
- “Beyond the rejection of holism, partisans committed to pluralism have a more positive ability to recognise that, even if they hold strong political convictions, democratic politics is characterised by the co-existence of a plurality of legitimate claims to the common good. Consequently, pluralist partisans accept their party’s status as only a part in the polity, though they may strive to represent the whole, and thus the necessity to uphold procedures that guarantee electoral fairness.”⁸
- ◆ Do not seek an end to political contestation, a final, permanent victory (do not conceive themselves as a “last party” unlike the historical Marxist party)
- Loyalty grounded in memory and patience
 - ◆ Loyalty “sustains a kind of commitment that goes beyond what plain reason can underwrite,” (p. 17) “a commitment that goes beyond what might be rationally justified in the moment.” (p. 20)
 - Partisan loyalty is the precondition for long-term political accomplishments.
 - ◆ “[At] its best is grounded in memory and patience.” p. 17
 - Memory about “what the group is about, what it counts as achievements (that need protection), and what it has yet failed to achieve” p. 129
 - “Politics requires patience, and patience takes loyalty. Patience is loyalty. Loyalty does not ask you to close your mind to elemental facts—only to wait, at least a bit longer than you might otherwise.” p. 130
 - Loyalty at its best is compatible with “a critical capacity about our own convictions.” p. 109
 - It must be chosen informed by reason.
- “Ultimately, I defend a kind of party spirit that is worn lightly, one that is open to facts and revision, and tolerant of—even appreciative of—opponents.” p. 17
 - ◆ “Negative capacity” p. 98
 - E.g., John Stuart Mill⁹
 - Muirhead wants a blend of the passionate partisan and the disinterested bystander whom Mill sharply distinguishes in the passage in *On Liberty*.
 - Being partisan without being ideological (not being “narrow” or “one-eyed”) p. 103
 - Seeing more than one side of the truth
 - A capacity to critically assess one’s existing political commitments and loyalties (being open to “facts and revision”)
 - Presupposes “political humility, which allows us to see our own commitments as imperfect approximations.” p. 18
 - “The best partisans stand for something, but in other moments see that theirs is not the only reasonable place one can take a stand. They possess a negative capacity that ideology disables. A negative capacity allows us to see ourselves from a distance, to turn on the commitments and loyalties that define our political orientation and see them more critically.” p. 106
 - ◆ Respect for political opponents (partisans on the other side)
 - “To accommodate oneself to others, even when those others seem unreasonable or wrong, is a kind of respect. The political virtues involve accommodating others even when we do not agree with their reasons, do not understand their reasons, and think they might have no good reasons.” p. 52
 - “To glimpse the possibility of agreement in spite of the variability of human situations and the inevitably of disagreement is a political virtue.” p. 52
 - “Partisans need to believe that their opponents are genuinely motivated by a desire to serve the common good. This is the basis of good faith and civic respect; it is what makes the permanent and peaceful disagreement of rival partisans possible.” p. 251

⁷ Ibid.

⁸ Ibid.

⁹ “If he could embrace a partisan cause, he nevertheless retained a negative capacity to step back from his own commitments. His partisan commitments never compressed the scope of his thought, and his philosophy in turn never unhinged his partisanship. He was both a partisan and a thinker, and if he did not disconnect the two, neither did he tether one in service entirely to the other.” p. 99

- ◆ Deliberative:
 - “For citizens to reflect on and deliberate over the rival conceptions of the common good that each party stands for ...” p. 259
 - Rf. The idea of common good (or common good orientation/motivation)
 - ◆ “To disagree about what counts as the common good is one thing, and makes partisanship both inevitable and interesting; intentionally threatening to destroy the common good is something else. The connection to the common good is what makes partisanship legitimate—and admirable. When this connection is broken, partisanship can only reflect political ambition.” p. 251
 - ◆ “Yet the idea of the common good is essential to healthy partisanship—perhaps nothing is more important.” p. 251
 - ◆ “Low partisan calculations that make it thinkable to threaten the common good for the sake of leverage or advantaging one’s side not only give partisanship a bad name—they sever partisanship from the people, corrupt the political culture, and ultimately make it impossible for us to cooperate for the sake of the common good.” p. 251
 - But partisans may use both public and non-public reasons to form a winning majority coalition and thereby accomplish “sociological legitimacy.”¹⁰
- (ii) Scope and preconditions (applicability)
 - Muirhead conceives partisanship as a general norm of good citizenship for nearly all democratic citizens in contemporary America.
 - Times when reasonable partisanship is appropriate:
 - ◆ Based on ‘temporal’ or ‘epochal’ contrasts
 - Contemporary period vs. early modern period (e.g., Mill’s era)
 - That constitutional (not revolutionary) and self-critical (not narrow) partisanship is appropriate for the contemporary period
 - ◆ When parties are not “evil and corrupt”
 - When they are evil and corrupt, being an “activist,” a “rebel,” or a private citizen disgusted with politics—all who refuse to “stand with others for the sake of generating a legitimate claim to rule”—“may be more admirable than partisanship.”¹¹ p. 20
 - Muirhead also suggests that “when important moral principles are at stake” being a moral purist (who like Henry David Thoreau “remain in a party of one”) might be necessary.¹² p. 47
 - ◆ A situation when ‘centrism’ (like the one Mill suggests) is appropriate:
 - “The centrist instinct may be appropriate when the extremes are truly ideological and reflect a principled but narrow approach to politics. In these conditions, picking the best from each side may b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 to social complexity. But when centrism becomes its own principle (‘the middle is always best’), it loses its coherence. No law of nature places the optimal policy between the ideally preferred points of liberals and conservatives. On fiscal policy, health care, foreign policy—on any policy, the best approach might well be the position advocated for by one party. Centrism makes sense when there is a range of broadly popular policies and programs, but where party loyalty prevents the coalition that could enact them from forming.” p. 246

¹⁰ “Partisan Justification” (2017), p. 4.

¹¹ “Perhaps they regard all of the existing parties as too corrupt. Or perhaps they think the rival parties collude to protect what is evil (like the great American parties prior to the Civil War). In their refusal to stand with others for the sake of generating a legitimate claim to rule, these types are not really partisans at all. They might be activists, and try to illuminate the corruption and evil at stake. They might be rebels, and take to either violence or nonviolent protest. They might turn away from politics in disgust and tend their backyard gardens. When parties are evil and corrupt, all of these options (with the possible exception of violence) may be more admirable than partisanship.” p. 20

¹² “The cost to one’s integrity is most severe when the principles at stake involve matters of moral urgency. When important moral principles are at stake, we should perhaps emulate Henry David Thoreau and remain in a party of one.” p. 47

II. Critique of Muirhead’s theory of partisanship (tentative)

(A) **Re: The fundamental agreement on constitutional procedures shared among reasonable partisans**

- **Muirhead’s sharp distinction between ‘procedures’ and ‘ideas/principles’ and neglect of the latter as a matter of firm conviction is problematic.**
 - Because constitutional procedures (which embody the principle that the issue of who gets power should be decided through a free and fair election) presuppose (or at least have been traditionally grounded in) certain fundamental political ideas or principles (e.g., ‘the first principles of political morality’ “that citizens are free and equal, that government should be founded on consent, [and] that individuals have rights.” p. 53)
 - Muirhead’s insistence that we only think that the first principle of political morality *might be*¹³ true leaves constitutional partisans without a firm rational ground for agreeing and committing to the constitutional procedures.

(B) **Re: Being deliberative**

- **It is unclear how Muirhead’s reasonable partisans are supposed to live deliberatively**
 - What kind of deliberators are they?
 - ◆ Ones who give fair consideration to a rival conception of the common good?
 - ◆ Ones who deliberate in terms of both public and non-public reasons?
 - ◆ Ones who are only selectively deliberative in their political lives?
 - Ultimately, it is unclear exactly what the content of Muirhead’s blend of Mill’s impassioned partisans and impartial bystanders is. What of the latter is being adopted for partisanship? Respect for ‘elemental facts’ while refusing to consider the other side’s perspective on/understanding of the common good?
 - ◆ Or someone who are occasionally truly impartial between “the rival conceptions of the common good that each party stands for” (see below)? How exactly are partisan loyalty (partial) and deliberative capacity (impartial) blended and harmonized within Muirhead’s overall conception of ‘reasonable citizenship’?
 - Rf. “For citizens to reflect on and deliberate over the rival conceptions of the common good that each party stands for ...” p. 259
 - ◆ => This line seems to imply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artisanship of ordinary citizens and that of “each party” concerning the way of deliberating about the common good, though Muirhead does not make this distinction in his explicit theory of reasonable partisanship. Should ordinary citizens try to be a neutral deliberator between the rival parties? If so, how is this sort of ‘partisanship’ different from Mill’s impartial bystander, the type which Muirhead does not fully embrace in his discussion of Mill?
 - ◆ Perhaps Muirhead’s system at any given moment requires reasonable partisans who are in different modes (partisan vs. deliberative)?

(C) **Re: Judgment on the times when reasonable partisanship is appropriate**

- Muirhead implicitly distinguishes those circumstances when reasonable partisanship is appropriate rather than other modes of civic being. But:
 - **The contemporary vs. early modern period dichotomy is not entirely convincing (especially with respect to epistemic humility and narrowness).**
 - ◆ For instance, Muirhead insists that we who occupy the contemporary period no longer need partisans with a narrow/ideological focus because we can act decisively in politics even without such narrowness.¹⁴ But (1) it is not clear why things are now different from, say, the nineteenth century in which Mill lived, and (2) Muirhead gives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 epistemic benefits which he himself associates (citing Mill) with ideological narrowness are no longer applicable to our current world.
 - **There is little or nothing in Muirhead to guide making situational judgements (as to whether to take up or not his reasonable partisanship).**

¹³ “In agreeing to the form, we agree to the possibility of first principles of political morality, to accept the possibility that these first principles *might be true*, and therefore also to the possibility that the rule of law is not entirely a veil that makes the power some exercise over others palatable [emphasis added].” p. 240

¹⁴ “Partisans do not need self-validating systems of thought in order to win—and they can afford to resist the narrowness that so often comes with conviction. In current political conditions, for all that is at stake in our public deliberations, it is a mistake to believe that decisiveness—a willingness to endorse a particular course of action—depends on narrowness.” p. 106

- ◆ Muirhead’s distinctions (e.g., when parties are not “evil and corrupt”) are too broad and open to interpretations to bring about the reform in partisanship he desires.
 - It seems that ‘pathological’ partisans (whom Muirhead criticizes and wishes to replace) are unlikely to be affected by his ideas; for instance, they can always insist that their opponents are in fact entirely wrong on a particular issue and motivated by self-interest rather than the concern for public good.

(D) **Re: The universal scope of partisanship**

- Whereas Muirhead offers reasonable partisanship as a general norm for contemporary democratic citizens,
- **In any given circumstance (including the one Muirhead thinks is appropriate for reasonable partisanship), why not narrow/ideological partisans (lacking epistemic humility) and independent thinkers (lacking the desire to associate and compromise with many other citizens)?**
 - It seems that both narrow partisans and independent thinkers can contribute to the democratic public sphere in their own ways. While the former might most forcefully and fully present a specific ideological perspective on a given issue, the latter, being more principled than partisans, might be able to check the danger of too much compromising on the part of partisans for victory. Also, independent thinkers might serve as a source of creative and integrative thinking that would not be supplied in their absence.
 - Rf. Mill’s implied point about the epistemic service of narrow/ideological partisans (which Muirhead himself points out):
 - ◆ “Different human types are disposed to see (and to be blind to) different things. If they were not blind in some respects, they would see less. Every capacity is also incapacity.” p. 102
 - ◆ “If Bentham and Coleridge shared nothing in their philosophy and politics, the point of Mill’s essays was to transcend the narrowness they could not. Mill appreciates each of them—their genius and their defects. This—taking them together—is where the real value of each is found. But to offer this value, each had to be deficient: the genius of each, however, is inseparable from his limitation. Mill describes Bentham, for instance, as a ‘one-eyed man.’ ‘For our part,’ Mill says, ‘we have a large tolerance for one-eyed men, provided their eye is a penetrating one; if they saw more, they probably would not see so keenly, nor so eagerly pursue one course of enquiry.’ Partisans are necessarily ideological, in Mill’s view. Their insights are generated within a self-contained system of thought that is both the source of their insight and their limitation.” p. 103

山口晃人 Akito YAMAGUCHI
(日本学術振興会)

“왜 지금 로또크라시인가:
로또크라시에 대한 오해와 해명”

왜 지금 로또크라시인가: 로또크라시에 대한 오해와 해명

야마구치 아키토 (일본학술진흥회)

서론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회의 대표자와 기성정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대의제의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제적 수단을 통한 기존의 대의제의 보완이 제창되고 있다. 그러나 2016 년 영국이 국민투표의 결과로 EU 에서 탈퇴한 브렉시트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러한 직접 민주제적인 수단에는 결정의 질적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본 발표의 주제는 이러한 직접 민주제적 수단의 한 종류로서 여기기 쉬운 ‘로또크라시(lottocracy)’라는 제도적 구상이다. 로또크라시는 선거가 아닌 유권자로부터의 무작위 추출을 통해 의회의 대표를 뽑는 제도적 구상이다. 로또크라시는 기존의 선거 대표제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발생했고 일반 시민에게 더 큰 의사 결정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제적인 제도 제안과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되어왔다.

이러한 현상을 배경으로 본 발표는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 로또크라시를 직접 민주제적인 제도 제안으로 간주하는 오해를 정정한다. 로또크라시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제적 어프로치가 아니라 선거 대표제와 동일하게 대의적인 어프로치이며, 국민투표와 다르게 일반 시민이 지닌 날 것 그대로의(raw) 민의가 아닌 숙의/숙려를 거친 민의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추구한다. 둘째로 로또크라시는 국민투표 등과는 대조적으로 그 결정의 질에 대한 기대감으로부터, 선거를 통한 기존의 대표제 통치의 유망한 대체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1. 로또크라시란 무엇인가

먼저 본 발표의 주제인 로또크라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전술하였듯이 로또크라시란 선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권자 중에 무작위 추출하여 의회의 대표자를 임명하는 제도적 구상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로또크라시는 배심원 제도와 재판원 제도의 입법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로또크라시는 논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한 가지는 기존의 선거제 의회를 폐지하고 대신하여 추첨제 의회를 도입하자는 ‘순수한 로또크라시’의 입장이다¹(Bouricius 2013; Guerrero 2014, 2021, Landemore 2020). 또 한 가지는 기존의

¹ 게레로는 농업, 이민, 의료 등 분야별로 정원 450 명, 임기 3 년의 추첨제 의회를 설치하고 그 의회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Guerrero 2021: 169-70).

선거제 의원(議院)와 더불어 추천제 의원(議院)을 설치하는 ‘선거제 의원+추천제 의원’의 입장이다(Abizadeh 2021, Barnett and Carty 2008, Buchstein and Hein 2010, Burgers 2015, Callenbach and Phillips 2008, Zakaras 2010, 岡崎 2019, 2022, 山口 2020a, 2020b, 2022c). 두 가지 타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것은 선거제 의원을 폐지하는가 아니면 남기는가 하는 점이다. 순수한 로토크라시의 경우에는 추천제 의회가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법안의 기초부터 그 체결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담당한다². 한편, 추천제 양원의 경우에는 법안의 기초를 주로 선거제 의원이 맡고 추천제 의원은 선거제 의원으로부터 송부된 법안에 대해 숙의/숙려하여³ 그것에 대한 찬부를 표시하게 된다.

이러한 구상들에 있어서 그 이외의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로토크라시 구상에서는 100~600 명 정도의 의원이 1~4 년의 임기로 일반 유권자로부터 무작위 추출(또는 성별과 지역을 바탕으로 층화 무작위 추출)로 뽑혀서 추천제 의회(의원)를 형성한다. 의원으로 뽑혀도 사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원이 된 경우에는 충분한 보수가 마련된다(Abizadeh 2021, Barnett and Carty 2008, Bouricius 2013, Buchstein and Hein 2009, Burgers 2015, Callenbach and Phillips 2008, Gastil and Wright 2019, Guerrero 2014, 2021, Zakaras 2010, ヴァン・レイブルック 2019: 147).

2. 도구적 가치와 비도구적 가치

여기에서는 이하 논의의 준비 작업으로서 데모크라시에 관한 분석적 논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적 가치와 비도구적 가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Christiano and Bajaj 2022, 小林 2019).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란, 입법 제도가 가져오는 결과에 관한 가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입법 제도가 가져오는 결과에는 입법제도의 직접적인 아웃풋인 법과 정책 외에, 정치참가를 통한 시민 육성 등의 부차적인 효과도 포함된다. 한편 비도구적 가치(non-instrumental value)는 입법 제도 그 자체의 가치이다⁴. 예를 들어 데모크라시에는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처우와 자기 통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비도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란데모어(Landemore 2020)의 구상에 대해서는(山口 2022a)、브리시우스(Bouricius 2013)의 구상에 대해서는(ヴァン・レイブルック 2019: 148-58)를 참조.

² 다만 브리시우스는 입법과정을 단일한 추천제 의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추천 혹은 자천의 여러 기관으로 분할하자고 제안하고 있다(Bouricius 2013, ヴァン・レイブルック 2019: 148-58).

³ 많은 로토크라시의 구상에서는 추천제 의회(의원)에서 추천으로 뽑힌 시민 대표들끼리 숙의를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선거제 의원+추천제 의원에서 선거대표 등에게 설명을 듣고 숙려(deliberation within himself/herself) 후에 투표할 뿐 아니라, 시민 대표들끼리 숙의(deliberation with other people)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Goodin 2008: Chap.3, 山口 2022b).

⁴ 비도구적 가치는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라고 불릴 때도 있으나 엄격하게는 내재적 가치 이외의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도구적 가치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의 분류에 대해서는, (Ziliotti 2020)를 참조.

로또크라시 논자들이 두 가지 가치 중에 더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도구적 가치이다. 그들이 로또크라시를 지지하는 것은 주로 기존의 선거제 의회보다도 좋은 결정⁵을 가져오기 쉽다는 이유 때문이며 로또크라시가 그 자체로서 바람직한 의사 결정 절차라는 것 때문은 아니다.

3. 로또크라시와 국민투표의 비교

국민투표와의 비교를 통해 로또크라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로또크라시와 국민투표는 한정적인 정치 엘리트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정치적인 의사 결정의 발언권을 널리 부여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 가지는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것이다.

로또크라시와 국민투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투표가 전원 참가를 인정한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로또크라시는 무작위 추출로 선출된 일부에게만 참가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그 의미에서 보면 로또크라시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제적 어프로치가 아닌 선거 대표제와 같은 대의제적 어프로치이다.

그렇다면 로또크라시 논자들은 왜 전원 참가가 가능한 국민투표가 아니라 일부밖에 참가할 수 없는 로또크라시를 지지하는 것인가.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제적인 구조는 로또크라시보다도 훨씬 포섭적이고 민주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입법 제도 그 자체의 가치인 비도구적 가치의 관점에서는 국민투표가 더 뛰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가 아니라 로또크라시를 지지하는 것은 입법제도가 산출하는 의사결정의 질, 입법제도의 도구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서술한 브렉시트의 사례가 보여주듯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제적 제도에서는 사람들이 부적절한 정보에 기반하여 투표한 결과로서 질이 낮은 결정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⁶. 그에 반해 로또크라시에서는 이러한 질이 낮은 결정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⁷. 첫째, 일상의 업무에 여념이 없는 국민투표의 투표자와는 달리 추첨제 의회의 의원은 의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둘째, 추첨제 의회의 의원은 합리적 무지의 문제에 시달리는 일도 없다. 국민투표의 투표자의 경우, 자신의 한 표가 국민투표의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투표를 위해 일부러

⁵ 무엇이 좋은 결정이고 무엇이 나쁜 결정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전쟁, 기아, 경제붕괴, 역병, 대량학살’이라는 ‘기본악(primary bads)’ (Estlund 2008: 163; 방점 원문 이탈릭)을 초래하는 결정이 나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부의 시민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정책이 좋다는 등 어느 정도의 공통 양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⁶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패한 경위에 대해서는 (Goodin and Spiekermann 2018: Chap.21)을 참조.

⁷ 도구적 가치의 평가에는 결정의 질과 더불어 결정에 드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도 산입해야 한다. 국민투표와 로또크라시의 결정의 질이 동등하다 하더라도 전원이 참가하는 국민투표에 비해 일부의 사람들만이 참가하는 로또크라시가 낮은 비용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로또크라시의 도구적 가치가 더 높다(山口 2022c).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도 무지인 채로 투표에 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Somin 2016, ソミン 2016). 반면 추천제 의회의 의원의 한 표는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기에 무지인 상태가 합리적이지 않게 된다. 실제로 토론형 여론조사와 시민의회 등 미니 퍼블릭스(mini-publics)라고 통칭되는,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으로 구성된 회의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다(Fishkin 2009=2011, 2018, OECD 2023, ヴァン・レイブルック 2019: 115-40).

국민투표와 로또크라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킨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지만 국민투표에 의해 반영되는 것이 날 것의(raw) 민의임에 반해 로또크라시에서 반영되는 것은 숙의/숙려를 거친 민의이다. 날 것 그대로의 민의는 종종 질이 낮은 결정을 초래하지만 숙의/숙려를 거친 민의는 그렇지 않다. 국민투표가 지지받는 것은 그것이 포섭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방법이기 때문이며, 이때 의사 결정의 질은 중시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로또크라시가 지지되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의사 결정의 질(도구적 가치) 때문이고 절차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성격(비도구적 가치)은 고작 부차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지 근거	반영되는 민의
로또크라시	도구적 가치(결정의 질)	숙의/숙려를 거친 민의
국민투표	비도구적 가치(민주적, 포섭적)	날 것 그대로의 민의

4. 로또크라시의 도구적 가치

그렇다면 도구적 가치의 관점에서 로또크라시는 어떠한 점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하에서는 도구적 가치의 관점에서 기존의 선거제 의회에 비해 로또크라시가 갖는 두 가지 이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로또크라시가 갖는 첫 번째 이점은 ‘기술적 대표(descriptive representation)’를 통해 보다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Farrell and Stone 2018, 山口 2020a). 기존의 선거제 의회는 유복한 중장년층 남성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비해 무작위 추출로 일정 인원수 이상의 의원이 임명되는 경우, 추천제 의회는 유권자의 ‘축소판’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 년 6 월 현재 일본의 국회에서의 여성 의원 비율은 중의원에서 9.9%, 참의원에서 22.9%이지만⁸ 추천제 의회 의원의 절반은 여성이 될 것이다. 여성의원원의 비율이 늘어나면 여성의 이익을 반영한 정책은 실현되기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온갖 사람들의 의견이 그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적절히 대표됨으로써 기존의 선거제 의회보다도

⁸ 내각부 남녀참획국
(https://www.gender.go.jp/about_danjo/whitepaper/r02/zentai/html/honpen/b1_s01_01.html 2023
년10월20일 최종열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 정책이 실현되기 쉬워진다⁹10.

로또크라시가 갖는 두 번째 이점은 추천제 의회의 의원이 타자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기 판단에만 근거하여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제 의회 의원의 다수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소속 정당과 이익단체, 선거구 유권자 등에게 항상 배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체의 이익이 되는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에 비해 추천제 의회의 의원은 선거를 의식할 필요가 없고 사회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취할 수가 있다¹¹. 이것은 로또크라시에 있어서 선거제 의회에 비해 바람직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

본 발표에서는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제적인 제도 제안과 로또크라시를 혼동하는 오해를 정정함과 동시에 로또크라시가 기존의 선거제 의회에 대한 매력적인 대체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기존의 선거 대표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오늘날, 질이 낮은 의사결정을 피하면서 숙의/숙려를 거친 민의를 반영하는 수단으로서 로또크라시는 유망한 구상이라고 생각된다.

*본 발표의 초고는 오카자키 세이키(岡崎晴輝) 선생님의 제미에서 보고하였으며, 오카자키 선생님을 비롯해 참석해주신 분들께 세심한 코멘트를 받았다. 이곳을 빌어 감사드린다.

【参考文献】

- Abizadeh, A. (2021). Representation, Bicameralism, Political Equality, and Sortition: Reconstituting the Second Chamber as a Randomly Selected Assembly. *Perspectives on Politics*, 19(3), 791-806.
- Barnett, A. and Carty, P. (2008). *The Athenian Option*. Imprint Academic.

⁹ 쿼터제 등과는 달리 성별 등 기지의 속성뿐 아니라 인구의 몇 퍼센트가 숙려 후에 어떤 정책을 지지할 것인지와 같은 미지의 속성에 대해서도 추천제 의회라면 비례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가능하다(山口 2020a: 367-8).

¹⁰ 이와 더불어 무작위 추출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과 휴리스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인지적으로 다양한 의회가 실현됨으로써 기존의 선거제 의회보다도 인식적으로 우수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는 논의도 있다(Landemore 2013). 인지적 다양성에 대해서는 (坂井 2022)를 참조.

¹¹ 기존의 선거제 의회 의원이 선거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활동에 얽매이지 않고 입법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로또크라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Bouricius, T. (2013). "Democracy Through Multi-Body Sortition: Athenian Lessons for the Modern Day." *Journal of Public Deliberation*, 9(1): 1–19.
- Buchstein, H. and Hein, M. (2009). "Randomizing Europe: The Lottery as a Decision-Making Procedure for Policy Creation in the EU," *Critical Policy Studies*, 3(1), 29-57.
- Burgers, J. W. (2015). "Are Citizens Capable of Representing Themselves?," *Constellations*, 22(1): 13-30.
- Callenbach, E. and Phillips, M. (2008). *A Citizen Legislature*. Imprint Academic.
- Christiano, T. and Bajaj, S. (2022). "Democracy",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pring 2022 Edition), Zalta, E. N. (ed.), URL =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pr2022/entries/democracy/>>. (2023 年 10 月 20 日最終アクセス)
- Estlund, D. M. (2008). *Democratic Authority: A Philosophical Framew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arrell, D. M. and Stone, P. (2018). "Sortition and Mini-Publics: A Different Kind of Representation," in Rohrschneider, R. and Thomassen, J.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Representation in Liberal Democracies*. Oxford University Press.
- Fishkin, J. (2009). *When the People Speak: Deliberative Democracy and Public Consul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曾根泰教監訳・岩城貴子訳(2011)『人々の声が響き合うとき——熟議空間と民主主義』早川書房。
- Fishkin, J. (2018). *Democracy When the People Are Thinking: Revitalizing Our Politics Through Public Delibe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Gastil, J. and Wright, E. O. (eds.) (2019). *Legislature by Lot: Transformative Designs for Deliberative Governance*. Verso.
- Goodin, R. E. (2008). *Innovating Democracy: Democratic Theory and Practice After the Deliberative Turn*. Oxford University Press.
- Goodin, R. E. and Spiekermann, K. (2018). *An Epistemic Theory of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 Guerrero, A. A. (2014). "Against Elections: The Lottocratic Alternative." *Philosophy & Public Affairs*, 42(2): 135–178.
- Guerrero, A. A. (2021). "The Epistemic Pathologies of Elections and the Epistemic Promise of Lottocracy," in Edenberg, E. and Hannon, M. (eds.), *Political Epistem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Landemore, H. (2013). *Democratic reason: Politics, collective intelligence, and the rule of the ma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ndemore, H. (2020). *Open Democracy: Reinventing Popular Rul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omin, I. (2016). *Democracy and Political Ignorance: Why Smaller Government is Smarter 2nd*

Edi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Zakaras, A. (2010). "Lot and Democratic Representation: A Modest Proposal." *Constellations*, 17(3): 455-471.

Ziliotti, E. (2020). "Democracy's Value: A Conceptual Map," *The Journal of Value Inquiry*, 54: 407-27.

OECD (2023) 日本ミニ・パブリックス研究フォーラム訳『世界に学ぶミニ・パブリックス くじ引きと熟議による民主主義のつくりかた』(세계로부터 배우는 미니 퍼블릭스 추첨과 숙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형성) 学芸出版社。

ソミン, イリヤ (2016) 森村進訳『民主主義と政治的無知 小さな政府の方が賢い理由』(민주주의와 정치적 무지: 작은 정부 쪽이 현명한 이유) 信山社。

ヴァン・レイブルック, D. (2019) 岡崎晴輝・D. ヴァンオーヴェルベーク訳『選挙制を疑う』(선거제를 의심하다) 法政大学出版局。

岡崎晴輝(2019)「選挙制と抽選制」(선거제와 추첨제) 憲法研究第5号。

岡崎晴輝(2022)「選挙制・任命制・抽選制」(선거제, 임명제, 추첨제) 瀧川裕英編『くじ引きしませんか?—デモクラシーからサバイバルまで』 信山社: 61-108.

小林卓人(2019)「政治的決定手続きの価値—非道具主義・道具主義・両立主義の再構成と吟味」(정치적 결정 절차의 가치: 비도구주의, 도구주의, 양립주의의 재구성 과 음미) 『政治思想研究』 19: 238-69.

坂井亮太(2022)『民主主義を数理で擁護する—認識的デモクラシー論のモデル分析の方法』(민주주의를 수리로 옹호하다: 인식적 데모크라시론의 모델 분석 방법) 勁草書房。

山口晃人(2020a)「ロトクラシー——籤に基づく代表制民主主義の検討」(로또크라시: 제비뽑기에 기초한 대표제 민주주의 검토) 『政治思想研究』 20: 359-92.

山口晃人(2020b)「議会政党の存在意義——政治哲学の観点から」(의회정당의 존재의의: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年報政治学』 2020=II: 100-24.

山口晃人(2022a)「【書評論文】『開かれた民主主義』の批判的検討」(서평논문 ‘열린 민주주의’의 비판적 검토) 『相關社会科学』 30/31: 93-97.

山口晃人(2022b)「熟議は必要か?—熟慮的なロトクラシーの可能性」(숙의는 필요한가?: 숙려적인 로또크라시의 가능성) 『筑波法政叢書(筑波法政別冊)』 3: 28-41.

山口晃人(2022c)「民主政の費用対効果—参加から代表へ」(민주정의 비용 대비 효과: 참가에서 대표로) 『社会思想史研究』 46: 186-205.

함규진
(ソウル教育大学校)

“중용사상과 포스트데모스론의
친화성에 대한 고찰”

중용사상과 포스트데모스론의 친화성에 대한 고찰

함규진(서울교육대학교)

I. 들어가며

사상은 계통에 따라 형성된다. 같은 스승에게 배웠다거나, 같은 학파에 속했다거나, 같은 문화권의 사람이라면 의식적으로 같은 개념과 이론을 사용하고, 무의식적으로 같은 사고방식을 활용하면서 스스로의 사상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혀 다른 계통, 동떨어진 학맥과 문화적 배경을 간 사상들끼리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축의 시대’에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그리스에서 각각 발생한 사상들이 그렇고, 중국 양명학, 일본 고학(古學), 한국 실학의 일파가 서구의 근대 개인주의 사상과 흡사한 주장을 했던 것도 그렇다. 이때의 사상가들은 서로 교류할 수 없었고 각자 처한 환경에도 큰 차이가 있었으나, 각자 주목한 문제의식의 상당한 유사성과 보편적인 인간 사유과정의 높은 유사성에 추동되어 비슷한 사상적 결과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루려 하는 당대의 ‘포스트데모스론’과 전근대 동아시아의 ‘중용사상’도 그러한 구도로 조명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먼저 포스트데모스론은 그 자체가 다양한 조류의 사상을 채용하여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 사상가들은 서로 일정하게 공명하지만 자신들을 하나의 유파로 묶는 일에 부정적이다. 그들 사상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가 ‘구획되지 않는다’일 정도라서, 포스트데모스론의 정의-구획은 ‘축의 시대의 사상’처럼 그 범위가 지나칠 만치 넓은 여러 사상들을 묶어서 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사변적 실재론(speculative realism),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객체지향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 에일리언 현상학(Alien Phenomenology), 사물정치생태론(thing-political ecology) 등등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스피노자(Spinoza), 듀이(John Dewey),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등의 사상을 두루 편취하는 한편 라캉(Jacques Marie Émile Lacan)의 정신분석학, 루만(Niklas Luhmann)의 사회체계이론, 바렐라(Francisco Varela)의 구성주의 생물학, 그리고 사이버네틱스,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등 여러 학문체계에서도 영향을 받은 당대의 사상들이다. 이들 사상은 서로 정합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대체로 ‘근대’와 ‘개인’의 기본 관념에 대해 비판적이며, 인간과 사물, 주체와 객체 사이의 경계를 부정하고, ‘세계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예측 불가능한 혼합체이다’는 입장을 공유한다.

이런 사상은 ‘이론’으로 불릴 만한 엄밀성을 스스로 부정하며, 모호성과 무경계성을 본분으로 삼고 있을 만큼, 관념체계 또는 ‘사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만(따라서 하나의 이름으로 포괄해 고찰하는 일이 애초에 무리가 있지만), 서구의 다양한 지성사에서 얻은 결실로 오늘날의 정치적, 인류적, 지구적 위기에 대해 일정한 입장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입장과 성찰에 따르면, 사물을 포함한 ‘모든 객체’에 ‘동등한 정치적 자격’을 부여하려고 경향이 포착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들 사상을 ‘포스트데모스론’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해서 고찰할 것이다.¹⁾

1) ‘신유물론’ ‘포스트휴머니즘’ 등등 여러 명칭으로 이 구획을 기피하는 사상들을 묶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정치사상적 성격에 주목하여 포스트데모스론이라고 묶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은 하나의 ‘학파’나 ‘유파’를 표상하는 명칭은 아니며(가령 그 가운데는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은 사상가들의 사상도

한편 전근대 동아시아의 중용사상은, 이처럼 넓은 포스트데모스론의 사상적 배경에 전혀 개재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러 관점에서 상당한 사상적 유사성 내지 친화성을 읽어낼 수 있다. 『중용』이라는 고전과 그 밖의 고전문헌에 근거하는 사상이면서 명확한 해석과 엄밀한 이론적 틀을 상징하기 불가능한 이론 아닌 사상으로, 그 핵심적 부분에서 포스트데모스론과의 높은 상동성이 인식되고, 그 사상적 효과(다시 말해서, 당대 정치에서의 포스트데모스적 대안 제시)에서도 비슷한 상동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통적 친밀성이 희박한 두 사상을 비교하며 친화성을 모색하는 일에는 두 가지 실용성이 있다.

첫째, 포스트데모스론은 서구적 언어를 활용해 구성된 관념체계다. 그렇다면 ‘존재의 집’인 언어를 전혀 다른 계통으로 활용해 이를 구성해볼 때, 이 주제에 대해 더 심층적이고 온전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 나아가 기존의 담론에서 부실했거나 정돈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²⁾

둘째, 포스트데모스론이 일정한 위기(정치적, 인류적, 지구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크게 비롯되었으며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입장과 성찰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 때, 특히 동아시아인들에게 보다 친숙한 관념체계가 갖는 친화성의 발견은 이 담론의 확충과 활성화, 현실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포스트데모스론의 정치사상적 궤적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중용사상의 정치적 해석과 그것과 포스트데모스론의 비교를 시도해 본다.

II. 포스트데모스론의 궤적

“현재 지구상에는 온난화, 폭우, 해수면 상승, 팬데믹과 같이, ‘인간의 조건’을 생각하는 전제를 뒤흔드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실존적 위기’라고도 볼 수 있다. 인간세계에 관한 전제 그 자체의 변화와 갱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인간세계와 자연환경의 구분이 고착화되고, 자연환경은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러한 근대적인 상정이 흔들리고 있다. 자연환경은 안정적인 배경이 아니라 인간세계의 존재방식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인식이 바뀌고 있다.”(篠原雅武 2022, 5-6)

“현대 정치는 거의 공황 상태 같은 현기증에 휩싸여 있다. 모두의 발밑에서 땅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처럼 생활 습관이나 소유물의 모든 근거가 한꺼번에 소멸해 버리고 있으며, 마치 사방에서 공격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Latour 2021, 27)

포스트데모스론은 이처럼 ‘거대한 요동과 붕괴’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개인을 중심으

들어 있다), ‘사조’, ‘지적 경향’을 표상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

- 2) 가령 라틴어 *neutralis*에서 비롯된 중립(*neutrality*)은 *medius*에서 비롯된 중용(*mean*)과 크게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한자어로는 똑같이 中을 사용하며, 『중용(中庸)』에 ‘중립(中立)’이 언급되기도 한다. 따라서 서구적 언어로 철학을 할 때와는 다른 시각을 동아시아적 언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은 이 사조의 중심 인물들 여럿에게 공유된다. 가령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 등은 ‘사물정치’라는 용어를 쓰면서 *dingpolitik*라는 독일어를 사용한다. 독일어 *ding*은 본래 사물(*thing*)과 집회(*meeting*)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하이데거의 지적을 참조한 것이다 (Latour 1998; Bogost 2022, 60). 도너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이렇게 밝힌다. “영어 밖으로 나가라.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늘어난다.”(Haraway 2021, 178)

로, 과학기술을 비롯한 합리성을 무기로 인류가 스스로를 통치하는 한편 자연에 군림한다는 ‘근대적인 인간 조건’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종말에 접어들고 있다는 인식이다.

‘근대’에 대한 비판과 회의론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자유주의적 계몽이 중대한 모순과 폐해를 품고 있다는 마르크시즘,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등의 지적에서부터 그것이 인간의 삶과 생명체, 지구에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무리함을 강요하고 있다는 생태주의의 지적이 20세기 내내 이어졌다. 하지만 포스트데모스론의 경우 그러한 비판과 회의론의 지적들을 두루 참고하는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근대적 사고와 문명의 틀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 주체-객체의 관계를 상정하고, 인간의 집합적인 행동을 개인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사회계약적 정치체라는 상정으로 뒷받침하며, 자연과학과 사회체제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온 점들 모두를 문제시하고, 부정한다. 그것은 결국 새로운 데모스, 새로운 민주주의를 지향하게끔 한다.

1. 정치적 존재/일에서 인간 주체성의 기각

마르크시즘은 경제(생산)활동이란 자본과 노동의 결합으로 이루어짐에도 자본에게만 주체성이 인정됨으로써 노동이 소외됨을 비판했고, 페미니즘은 노동에 있어서도 여성의 가사노동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여성이 소외됨을 비판했다. 한편 공리주의에 근거한 ‘종차별론’이 소외보다는 차별과 착취에 주목하면서 ‘동물권’을 주장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도너 해러웨이는 『사이보그 선언』 등에서 인공지능과 사이보그, 즉 인공적인 자동적 사고-행동자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을 인간과 같은 주체로 인정할 필요를 제기했다(Haraway 1985).

포스트데모스론의 ‘포스트휴먼’ 논의는 여기서 더욱 나아간다. ‘생명체’를 넘어 ‘사물’에게도 인간 및 모든 생명체와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존재론적 사유를 통해, 포스트데모스론자들은 ‘주체’와 ‘객체’의 구분을 부정하고 오직 ‘객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들은 실재에 관해 칸트(Immanuel Kant)처럼 ‘물 자체(ding an sich)’라는 추상적 설정을 하고 실증적 사고를 전개하는 것도, 현상학 및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에서처럼 외면해 버리고 관념적 사고를 전개하는 것도 거부하면서 실재는 인간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인간이 실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점 또한 있다, 즉 “환원되지 않음(irreducibility)” 내지 “물러서 있음(withdrawal)”의 속성 또한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체를 부정하고, 사물을 인간의 의도에서 해방한다.

“사물을 자율적인 객체(autonomous objects)로 보며, 인간이 접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지 않을 때가 왔다.”(Harman 2005, 17)

“돌멩이는 단지 견어차이기 위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며, 책상은 탁 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Latour 2010, 272)

인간 주체성의 부정은 정치의 부정 또는 소외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그들의 상당수)은 그것이 오히려 기존의 정치를 확장한다고 한다. 우리는 물려서 있는 사물에 온전히 접할 수 없지만 사물을 사유하고 사물과 상관할 수는 있다. 사상가에 따라 그 정도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만, 인간을 포함한 사물이 서로 관계할 수 있다면, 정치도 가능하다. 또한 사물이 어떤 원자적인 존재라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사유와 상관 과정에서 실재하는 ‘집합체’라고 본다면, 더더욱 그렇게 된다.

“정치는 일종의 생태계(...)이며 공중(public)은 함께 피해를 겪은 경험을 통해 촉발되는 인간-비인간 집합체이다.(...) 인간과 다른 물질성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수평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보다 생태학적인 감수성을 향해 나아가게 해줄 것이다.”(Bennet 2020, 29; 53)

“주체 혹은 문화 같은 객체는 여타 객체의 근거가 전혀 아니다. 그리하여 『객체들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응시에서 풀려나서 독자적으로 현존하는 객체들의 본질을 생각하려고 시도한다.(...)”

모든 실체가 실체라는 점에서 동등하다는 바로 그 의미에서, 객체들의 평등성, 객체들의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이런 민주주의에는 실체들이 서로 대등하다는 것, 실체들 사이에 아무 차이도 없다는 것, 그리고 다른 실체들보다 더 강하거나 더 약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실체가 실체라는 점에서 동등하다는 것이 수반된다.”(Briant 2021, 22; 97)

이처럼 “평평한 존재론”을 표방하는 포스트데모스론은 정치의 주체가 되는 데모스(demos)의 자격 범위를 극적으로 넓힘으로써 정치적 존재/일(res publica)에서 주체의 의미를 초월하거나, 무의미하게 한다. 그러나 정치-민주주의는 데모스의 자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치는 행동(action)으로 구현되고 작용해야 한다.

2. 정치 행동에서 의지의 기각

서구 근대의 정치사상적 틀은 ‘개인의 의지에 따른 행동’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전근대적 틀이 신이나 자연의 섭리 같은 초월적인 근거나 전통, 관습, 실력 등의 현실 그 자체에 의존했던 반면,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한 어떤 자연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실력은 그것만으로 어떤 권리도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인간들 사이의 모든 정당한 권위는 오직 계약에 따라야만 한다’(Rousseau 1968, 36)는 사상에 따라 정치체와 헌정질서는 주권자인 개인들의 의지에 따라 수립되고 운용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포스트데모스론은 이런 상정을 부정한다. 그 사상가들은 먼저 ‘자유 의지’를 회의한다. 인간의 의식적 결정은 이미 생리적 작용에서 결정된 것의 추인일 뿐이라는 현대 뇌과학의 발견을 신뢰하며(國分功一郎 2019, 37), 의식적 차원에서조차 순수하게 자발적,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일은 거의 찾을 수 없고 이런 저런 제약에 따라 결정과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國分功一郎 2019, 183-188). 또한 모든 인간 행동이란 인간의 육체적 범위를 넘는 존재의 개재를 통해 가능하며(가령 돌맹이를 걷어찬다, 바람을 맞으며 달린다), 인간의 육체조차 단일하고 균질적 존재가 아니기에(체내 조직, 세포, 미생물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활동에 따른 육체의 활동), 인간의 행동은 해당 인간의 고유 의지에 따른 독단적 행동(action)이라기보다 여러 존재들의 집합적 활동(activity), 그 구성물로 봐야 한다고 여긴다(Latour 2010, 98).

이에 따라 포스트데모스론의 사상가들은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객체-사물들에게 의지의 담지자로 여겨지는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행위 차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인 베넷은 물질에 행위자성(agency)을 인정하며(Bennet 2020, 7), 라투르는 인간과 물질을 모두 포함하는 존재자들을 동등한 행위소(actant)로 본다(Latour 2010, 98). 해러웨이는 인간과 비인간 생물, 기계 등 비인간을 모두 크리티어(critter)라 부르는 한편(Haraway 2021) 공-산(sympoiesi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지구상의 존재들이 무엇을 생산하든 반드시 서로 얽혀서 집합적으로 생산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Haraway 2021, 62). 그녀는 그런 공-산의 협력자들이 인간의 ‘친척’이라고 이해한다(Haraway 2021, 176-179).

“과속방지턱은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 교통경찰과 마찬가지로 특정 도로에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도록 행동을 강제하는 활동을 한다.”(Latour 1999, 186)

루소나 칸트라면 여기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과속방지턱은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려는 의지에 따라 존재하는, 그 의지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 자체로 활동’하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런 의지는 공적인 의지로,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의지에 따라 과속방지턱도 교통경찰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의지를 기각함에 따라 포스트데모스론은 ‘모든 주권자 개인의 의지에 따라 수립되고 운용되는 정치체와 헌정질서’라는 개념을 기각, 또는 포월(抱越)한다.

3. 객체와 사물에 ‘의한’ 민주헌정

근대 정치의 기본을 기각 또는 포월한다는 말은 ‘인간 의지만이 헌정의 근거’가 된다는 개념을 기각하면서, 그 헌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확충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 계열의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가령 ‘평평한 존재론’을 주장하는 마누엘 데란다, 그 레이엄 하먼, 레비 브라이언트 등은 것처럼 존재-객체들이 동등하게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민주화’는 충분하다는 입장에 가깝다. 그러나 그런 존재들에게 보다 능동적인 정치적 행동 능력을 기대하는 입장도 있다.

도나 해러웨이는 2016년에 쓴 그녀의 글, “촉수 사유: 인류세, 자본세, 쓸루세(Tentacular Thinking: Anthropocene, Capitalocene, Chthulucene)”에 “우리가 97퍼센트다”는 피켓을 든 문어, “척추가 없다고 마음(heart)이 없지는 않다”는 피켓을 든 메뚜기 등이 지구온난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월스트리트를 문어화(Octopi)하라!」 풍자화를 실었다. 물론 이는 글자 그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치 행동이지만, 그녀는 “복수종의 웰빙을 위해 함께 세계를 다시 만들고, 다시 상상하고, 다시 살고, 다시 연결”(Haraway 2021, 93)할 가능성을 그려한 ‘전복적 하위문화’에서 본다.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존재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의식과 문화가 그들과 ‘함께’ 변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브뤼노 라투르는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에서 토머스 홉스(Thomas Hobbs)로 대표되는 근대 사회계약론자의 구상에 따른 헌정체제란 “헌법기초자들의 뜻에 따라 구축된 것은 그 삼분의 일일 따름”이며 과학과 ‘하이브리드(인간과 물질이 연결된 혼종적 존재)’가 나머지 작업을 했다고 본다.(Latour 1993, 51)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학은 사회와 자연이 분리된 것처럼 보며, 하이브리드의 존재를 무시하며 다만 인간 의지의 공동체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비근대 헌법’을 주장한다. 그것은 어떻게 하이브리드들을 대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헌법이다(Latour 1993, 349-350; Blok-Jensen 2017, 142-143).

비근대 헌법을 실현할 수단으로, 라투르는 ‘사물 의회’를 거론한다. 그러나 해러웨이의 동물 시위대가 말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듯, 라투르도 돌맹이냐 강물이 의사당에 모여 토의를 하는 현실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에서 그 실체를 다소 모호하게 설명한 라투르는 결국 스스로 사유하고 정치적 입장을 개진할 수 없는 사물들을 대신해

서 사람들이 정치적 숙의와 결정을 하는 일을 제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대의제’는 해러웨이의 경우이든 라투르의 경우이든 “인간성에 대한 지나친 낙관”(신하경 2023) “휴머니즘적 오류”(박인찬 2023) “인간적인 표상”(Conty 2018) 등의 회의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후의 저작들에서 라투르는

“객체 지향적인 개념에서는 ‘의회’가 사람들 간의 관계나 목소리를 생산하는 다양한 것들 중 ‘사물들을 공공적으로 만드는 행위’를 지칭하는 기술적인 용어로 사용될 것이다.”(Latour 2010, 290)

이처럼 자신의 사물 의회 개념을 보다 명목적인 것인양 제시하는가 하면, 반대로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재진행적 형태로 제시하기도 한다.

“과학실험실, 기술학교, 시장, 교회와 사찰, 금융 사무실, 인터넷 포럼, 생태학 논쟁은 우리가 말하고 투표하고 결정하고 증명하고 설득당하기도 하는 포럼 또는 아고라이다. 각각의 영역은 고유의 독특한 구조, 발화의 기술, 복잡한 전개과정, 자유와 지배에 대한 정의 방식, 관련된 사람, 관련되지 않은 사람(관련된 사람보다 이편이 더 중요하다), 종결과 결정에 이르는 재빠른 방식 등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의 회와 정부를 포함하는 정치적 공간을 가로지르는 이러한 집회들의 묶음이 만들어지면, 국회나 정부부처의 사무실처럼 소위 정치적 영역을 관통하는 조직이 특정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희망한다.”(Latour 2010, 288-289)

그는 프랑스에서 하천 개발-관리 문제를 두고 ‘(특정 사물의 입장과)관련된 사람(관련 학자, 관련 사업가, 관련 취미 소유자, 현지 주민 등등)’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한데 모여 숙의를 벌인 경우를 이러한 ‘사물 의회’의 구체적 사례로 들기도 한다(Latour 1998). 보다 공식적인(즉 그의 표현으로는 ‘구헌법적 제도’인), 그리고 국제적인 사물 의회의 사례로는 유엔 산하기구로 조직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도 언급된다(Latour 2004).

그러나 이러한 제시에도 비판은 따른다. 사물 의회라는 이름의 ‘대의제’는 국민 대의제와는 달리 ‘대표자’들에 대한 선임, 해임, 비판 등을 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치명적인 정당성 문제를 떨 수밖에 없다는 점이 거듭 지적된다(Whiteside 2013).

그리고 공식 권력 운용의 틀 밖에 있는 민간기구나 숙의 과정 등이 그 공식 권력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기후변화 등의 지구적 위기 극복에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가(김상민 김성운 2021, 122), 결국 막연한 윤리적 각성 촉구이 그치는 것이 아닌가(유선무 2020, 151),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근원이 인간중심주의에 있다지만, 그 극복의 가능성도 결국 인간에게 있으므로 다른 방향으로 인간중심주의를 환기해야 하며, ‘비근대 헌법’도 결국 그런 입장이 아닌가(황정아 2022, 228-229) 등등, 이런 접근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비판이 많다.

이처럼 최근 높은 관심 속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 포스트데모스론에는 ‘이론’ 자체에 대한 내재적인 비판과 그 정치적 실효성에 대한 실용주의적 비판이 또한 많이 뒤따른다. 그런데 이를 중용사상과 비교함으로써, 그 정치사상으로서의 정체성과 실효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III. 중용사상과 포스트데모스론

1. 전근대 동아시아 중용사상의 『중용』 해석 논의

중(中)과 중용(中庸)은 『중용』 성립 이전부터 언급되고 있었다.³⁾ 하지만 『禮記』의 한 부분이던 『中庸』을 독립시켜 별도의 책으로 읽은 때는 대체로 한대(漢代) 이후이며, ‘중용사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전근대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중과 중용이 활발히 논의되게 된 계기는 주희(朱熹), 정이(程頤) 등등의 북송 성리학자들이 장구(章句)를 마련해 체제를 구분하고, 이를 ‘사서(四書)’의 하나로 특별히 존중한 뒤부터라고 할 것이다. 이 주자-성리학적 『중용』 해석은 이후 중용사상의 근간이자 정통이 되었으며, 다수의 사상가들은 이를 다만 답습할 뿐 감히 이견을 제시하지 못할 정도의 권위를 확보했다.⁴⁾

이후 전근대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중용』 관련 논의는 주자-성리학적 해석을 ‘더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과 ‘그 미비한 점을 보완 또는 비판하는 시도’ 사이에서 요동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그 모든 논의를 다루기는 무리이며, 가장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졌던 일부 구절들이자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깊은 구절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시하기로 한다.

1) 『중용』 1장(1)⁵⁾

“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修道之謂教.”

성(性)이 nature로 번역 가능한, 본성을 지칭한다는 데는 거의 이견을 찾을 수 없다. 문제는 그것이 ‘천명(天命)’이라는 서술이다. 이를 ‘타고난 대로’라고 일상화법적으로 해석한다면 ‘천명을 성이라고 한다’는 서술은 ‘본성은 타고난 대로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성 또는 본성이라는 어휘에 타고났다는 관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대로라면 『중용』의 첫 어구는 당연하고 따분한 동어반복이 된다. 그래서랄까, 주희는 천명을 천리(天理)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이치를 따져서 말할 때 천(天)이라 표현하고, 사람을 지향해서 말할 때 명(命)이라 할 뿐, 두 가지는 다르지 않다’고 정의했다.⁶⁾ 즉 마치 인격신과 같은 천이 있어서 사람을 포함한 만물에 그 성을 명령처럼 내려 준 듯 싶으나, 그것은 다만 비유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은 곧 이치가 된다(性即理).⁷⁾ 그리고 (天)性=(天)理에 어긋나지 않게 따르는 것이 도(道)이며, 도에 부합하도록 계몽하는 일이 교(教)다.

이후 대다수의 성리학자들에게 계승된 주자-성리학의 천명론은 천을 인격신이라기보다 자연의 흐름으로 보는 데서는 마찬가지로 ‘성이 곧 이치라기보다 마음(心)이 곧 이치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사욕 없는 마음은 곧 천리(天理)이며, 지선(至善)은 이미 그곳에 있다’⁸⁾고 본 왕수인(王守仁)에 의해 우회적으로 비판되었고, 그는 따라서 (천)성

3) 가령 『書經』 「虞書」 <大禹謨> “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 『論語』 「雍也」 “子曰，中庸之爲德也，其至矣乎。民鮮久矣。”

4) “自章句之行於世，人尊之如日月，信之如四時，愛之如骨肉，畏之如鈇鉞.” 『星湖全集』 卷54 「題跋」 <中庸疾書後說>

5) 『중용』의 장, 구 분절 편제는 주희에 의해 처음 이루어진 것인데, 이후 다른 분절 방안들이 나왔지만 주자-성리학의 편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그 편제에 따른다.

6) “蓋以理言之，謂之天。自人言之，謂之命。其實則一而已.” 『孟子集注』 「萬章章句上」

7) “命，猶令也。性，即理也。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氣以成形，而理亦賦焉，猶命令也.” 『中庸章句集注』

8) “愛問，至善只求諸心，恐於天下事理有不能盡。先生曰，心即理也。天下又有心外之事，心外之理乎。愛曰，如事父之孝，事君之忠，交友之信，治民之仁，其間有許多理在。恐亦不可不察。先生嘆曰，此說之蔽

=(천)리=(인)심이라는 구도에 이르렀다.⁹⁾

한편 정약용(丁若鏞)은 천을 자연의 흐름이 아니라 상제(上帝), 인격신과 같은 주재적 존재로 보면서 천명(天命)은 그야말로 상제가 인간에게 내린 명령으로, 선과 악 사이에서 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았다.¹⁰⁾ 그런데 그런 선택의 핵심 원칙, 말하자면 솔성(率性)의 도(道)이자 중용의 도는 사람들끼리 배려하고 양보하는 서(恕)다.¹¹⁾ 왕수인이 사람의 마음의 지위를 하늘에까지 끌어올렸다면, 정약용은 하늘을 높이되 하늘이 내린 도를 사람의 도로 범위를 좁혔다. 또한 오규 소라이(荻生徂徠)는 천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도란 천명의 도라기보다 선왕(先王)의 도로, 따라서 솔성(率性)의 주체는 선왕이며 그것은 다른 사람의 도라는 입장을 제시했다.¹²⁾

2) 『중용』 1장(2) 및 『중용』 제목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發而皆中節，謂之和。中也者，天下之大本也。和也者，天下之達道也。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

앞서 1장 첫머리의 천명론(天命論)과 연계하여, 주희는 中이란 성(性)의 체(體)이고, 和란 그 용(用)이라 보았다.¹³⁾ 한편 그 내용에 대해서는 ‘中은 편벽되거나 치우침이 없는 것이고, 和는 어그러짐이 없는 것’이라 풀이했는데¹⁴⁾ 앞서 『중용』 주해를 시작하는 첫머리에는 中을 ‘편벽되거나 치우침이 없고,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았다.¹⁵⁾ 그리고 책의 제목인 『중용』에서 中을 잇는 庸이란 ‘평상(平常)’으로 풀이하고 정이의 ‘변치 않는 것(不易)’이라는 풀이를 덧붙였다.¹⁶⁾

주희는 ‘희로애락’이라는 문구에 대해 정(情)이라고 해석했고, 이 정은 곧 심(心)의 용(用)이라 보았다.¹⁷⁾ 또한 심의 체(體)는 성(性)이고, 희로애락이 미발(未發)된 상태가 中이므로, ‘天命=性=中=心’이라는 구도가 일단 성립된다. 그리고 그 용(用)으로서 和와 情이 거론되는데, ‘和=情’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마음의 상태가 和를 이루고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和=情이 어그러짐이 없는 것’이라는 구도로 해석될 만하다. 그리고 어그러짐이 없도록 情(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일상적 현실에서 단속된 상황/단속하는 방식이 庸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이처럼 주자-성리학은 『중용』을 형이상학적 천리(天理)에 대한 텍스트로 해석하는 한편 마음에 대한 텍스트로도 해석함으로써, 자연철학과 도덕철학이 융합된 성리학의 테제를 구성해냈다.

久矣。豈一語所能悟。今姑就所問者言之。且如事父，不成去父上求箇孝的理。事君，不成去君上求箇忠的理。交友治民，不成去友上民上求箇信與仁的理。都只在此心。心卽理也。此心無私欲之蔽，卽是天理，不須外面添一分。以此純乎天理之心，發之事父，便是孝。發之事君，便是忠。發之交友治民，便是信與仁。只在此心去人欲存天理上用功，便是。”『傳習錄』上

9) “心者，天地萬物之主也。心卽天，言心卽天地萬物皆舉之矣。”：“心也，性也，天也，一也。”『傳習錄』下

10) “天賦我性，授之以好德之情，界之以擇善之情，此雖在我，其本天命也。”『與猶堂全書』集2 卷3『中庸自簪』

11) “欲行中庸之道者，非恕不能，一恕字可以貫萬事萬物。”『與猶堂全書』集2 卷3『中庸自簪』

12) “先王率人性以建道，故先王之道，人性所近。”『中庸解』

13) “中者，性之體。和者，性之用。”『近思錄』

14) “無所偏倚故，謂之中 (...) 無所乖戾故，謂之和。”『中庸章句集注』

15) “中者，不偏不倚，無過不及之名。”『中庸章句集注』

16) “庸，平常也。 (...) 不易之謂庸。”『中庸章句集注』

17) “喜怒哀樂，情”『中庸集注』：“性是心之體，情是心之用”『朱子語類』卷119.

18) “以性情言之，則曰中和，以德行之言，則曰中庸是也。”『中庸章句集注』

이 부분에 대해 보완 또는 비판론으로, 庸을 평상(平常)으로 풀이한 주희와 변치 않는 것으로 풀이한 정이의 차이점에 주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¹⁹⁾ 여기서 나아가 庸이 어그러짐 없이 단속된 상황보다는 어그러짐 없도록 꾸준히 단속해 나가는 행동에 중점을 두고 보아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었다.²⁰⁾

‘희로애락의 미발(未發)’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지 감정의 고요함, 적연부동(寂然不動)을 의미하는지, 사고행위 자체도 없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이는 미발 상태에서 中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中을 구하려 한다면 생각을 했다는 것이며, 그것은 미발이 아니라는 의미’라 대답하여 미발 상태에서는 사고도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²¹⁾ 주희도 이에 동의했다.²²⁾ 그리고 이통(李侗)의 행장에서 “종일토록 단정히 앉아 희로애락이 미발된 상태를 체험하여 中을 구했다.”²³⁾고 밝히, 묵상을 통한 무념무상의 체험이 中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인 듯 제시했다. 이는 주희 스스로도 얼마간 사상의 수정이나 보완을 기한 부분이지만(楊雅妃 2007) 왕부지(王夫之)는 ‘이통이 종일 단정히 앉아 마음을 고요히 만들었지만 그것은 감정일 뿐, 생각 자체를 끊은 것은 아니다’며 미발은 다만 감정이 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²⁴⁾ 왕수인은 미발의 中이 곧 양지(良知)이며, 적연부동과 감통(感通)의 구분이 없는 상태로, 평상시의 이기적인 마음을 몰아내는 수양을 통해 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다.²⁵⁾ 박세당(朴世堂)은 『맹자』를 근거로 미발이란 ‘하지 말아야 일을 하지 않고 욕심내지 말아야 할 일을 욕심내지 않는 것일 뿐’이라 풀이했다.²⁶⁾ 정약용은 ‘적연부동에 무사려가 미발의 경지라면 그것은 불가의 면벽수도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며 희로애락이 발한다는 말은 돌연 감정이 격동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中이란 초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았다.²⁷⁾ 그러나 이들 모두는 미발의 상태가 ‘이기심이 촉발되지 않은 상태’임에는 동의했다.

19) 가령 “程子謂不易之謂庸，說得固好，然於義未盡” 『北溪字義』「中庸」；“朱子曰，庸，平常也。 (...) 然與程子不易之訓少異，未知如何” 『芝峯集』卷26「題後」<題蔡子履中庸集傳贊後識>

20) 가령 “以實求之，中者體也，庸者用也。 (...) 自朱子以前，無有將此字作平常解者” 『讀中庸大全說』；“今按庸，恒也。 (...) 在於書則精一之義，與此表裏，精爲中，一爲庸，在於此書則首章所云道不可離者，已揭而示之。道者，中也。不可離者，庸也。學者果能執此名物，以察其理而求其實，亦可以識夫一篇所設，無非此義，其庶幾不失矣” 『思辨錄』「中庸」；“中者，至善也。庸者，能久也。至善而能久，則中庸也” 『與猶堂全書』集2 卷2「大學講義」

21) “或曰，‘喜怒哀樂未發之前，求中可否’曰，‘不可，既思於喜怒哀樂未發之前求之，又却是思也。既思即是已發’思與喜怒哀樂一般，纔發便謂之和，不可謂之中也。『二程全書』

22) “至遺書中‘纔思即是已發’一句，則又能發明子思言外之意。蓋言不待喜怒哀樂之發，但有所思，卽爲已發，此意已極精微，說到未發界至，十分盡頭，不復可以有加矣。” 『朱文公文集』卷48「答呂子約」

23) “危坐終日，以驗夫喜怒哀樂未發前氣像爲如何，而求所謂中” 『朱文公文集』卷97「延平李公行狀」

24) “若延平終日危坐以體驗之，亦其用力之際，專心致志，以求吾所性之善。其專靜有如此爾，非以危坐終日，不起一念爲可以存吾中也。” 『讀中庸大全說』

25) “未發之中，卽良知也。 (...) 寂然感通，可以言動靜，以良知無分於寂然感通也”；“須是平日好色好利好名等項一應私心，掃除蕩滌，無復纖毫留滯，而此心全體廓然，純是天理，方可謂之喜怒哀樂未發之中，方是天下之大本。” 『傳習錄』下

26) “孟子蓋亦嘗聞乎師而有得於斯，故其言曰無爲其所不爲無欲其所不欲，如斯而已矣。所不爲所不欲，卽此所謂未發之中也。無爲無欲則發而得其和也，如斯而已矣者，謂夫天下之道無復有加於此者也。” 『思辨錄』「中庸」

27) “案喜怒哀樂之未發，非心知思慮之未發。天下之事，多可以平心酬應者。其或特異於常例者，於是乎有喜怒哀樂。然而可喜可怒可哀可樂之事，皆乘於不意，到於無心。故人之應之也，最難中節。必其未發之時，秉心至平，執德至固，不失中正之體。然後猝遇可喜可怒可哀可樂之事，其所以應之者，能發而中節。故曰中曰和，皆得爲位天地育萬物之大德。此惟慎獨之君子，能有是德。若寂然不動，無思無慮，爲未發之光景，則少林面壁，方可以位天地而育萬物，其有是乎？” 『與猶堂全書』集2 卷2「心經密驗」<心性總義>

3) 『중용』 2장

“君子中庸，小人反中庸。君子之中庸也，君子而時中。小人之中庸也，小人而無忌憚也。”

주자-성리학적 중용사상에서 도(道)의 근거를 천명에 두고, 마음을 다스림을 도-중용-중화의 실체로 보았다면 그런 도에 보다 부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사회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군자와 소인의 구분인데, 주희는 군자란 庸=平常의 이치(理)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풀이했다.²⁸⁾ 고대부터 이어져온 ‘군자’의 개념에 대해 ‘(天)性-(天)理’를 알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실천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풀이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통사회의 현실에서 상류층은 군자, 하류인 백성은 소인이라고 통용되던 것과는 어찌되는가? 왕부지는 소인과 백성은 다른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²⁹⁾ 상류층 가운데서도 반중용(反中庸)을 하는 자, 가령 세속의 유행에 편승하거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자(왕안석(王安石) 같은), 은미하고 괴이한 일을 하는 자(왕수인 같은),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소인이라고 규정했다.³⁰⁾

그런데 무념무상의 수도를 꾸준히 시행하여 中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생업에 몰두해야 할 하류층에서는 배출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생득적 기질의 청탁(淸濁)에 따라 군자가 될 소질도 나뉜다면³¹⁾ 군자는 세습적인 상류층 가운데 일부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양명학자들, 실학자들은 이에 대체로 반대하며, 주자-성리학의 군자소인론이 경직된 엘리트주의의 근거가 되는 일을 비판했다.³²⁾

‘시중(時中)’의 의미도 때로 논란이 되었다. 그것이 ‘中을 시대에 따라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라 본 주희의 풀이에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따라서 中庸은 미발의 中과 현실에서의 中으로 나뉜다³³⁾는 풀이에 대해서는 주자-성리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다.³⁴⁾ 그러나 ‘과연 무엇이 시중인가?’의 논란은 ‘과연 누가 군자이고 누가 소인인가?’의 논란과 더불어 사상계보다 현실정치계에서 더 많이 벌어진다.

28) “蓋中無定體，隨時而在，是乃平常之理也。君子知其在我，故能戒謹不睹，恐懼不聞，而無時不中”『中庸章句集注』

29) “小人自小人，民自民”『讀中庸大全說』

30) “小人只是陷於流俗功利而有勸力者，隱怪方是異端，過不及乃儒之疵者。三種人各有天淵之別”『讀中庸大全說』

31) “所稟者厚而淸，則其仁之於父子也。至，義之於君臣也。盡，禮之於賓主也。恭，智至於賢否也。哲，聖人至於天道也。無不脗合而純亦不已焉。薄而濁，則反是，是皆所謂命也。”『孟子集注』「盡心章句下」

32) 가령 “人之善惡，不係氣稟之淸濁。周勃石奮，氣質大抵濁。王莽曹操，氣質大抵淸，商受有才力之稱。宋襄有渾厚之氣，豈必淸者爲賢，濁者爲惡。舜之璫璣玉衡，非聰慧者不能，而號泣旻天，底豫頑嚚，不係乎聰明才識。今閭巷卑微之民，椎鹵如牛，而能成孝子之行者，不可勝數，婦人淸歌妙舞辯慧機警者，鮮不爲淫，而黃首黑面恟愁陋劣者，多辨烈女之節。善惡之不係乎淸濁也如此。”『與猶堂全書』集2 卷6『孟子要義』

33) “大抵中和之中是專指未發而言，中庸之中却又是含二義，有在心之中，有在事之中，所以文公解中庸二字，必合內外而言。”『北溪字義』「中和」

34) “中和之中，與時中之中，均一而無二矣。朱子既爲分而兩存之，又爲合而貫通之，是已。然其專以中和之中爲體則可，而專以時中之中爲用則所未安。”『讀中庸大全說』：“北溪陳氏遂以中和之中中庸之中，分而兩之，似涉可疑。夫存諸中而未發於外之謂中，發乎外而不戾於中之謂和。發與未發，動靜雖殊，而中之體固自若也。靜常不偏，動亦不偏，渾然一理而已。程子曰，君子之於中庸也，無適而不中，則其心與中庸無異體。然則時中之中，亦與未發之中一也。”『芝峯集』卷26「題後」<題蔡子履中庸集傳贊後識>

주자-성리학적 테제들에 대한 보완 내지 비판론은 대체로 주자-성리학이 수립한 체제에서 자연철학의 비중을 낮추고, 도덕철학-정치학으로서의 의미를 강화하려는 경향성을 띠었다. 그것은 서구적 근대의 성격에 보다 친화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중용사상 자체를 전혀 혁신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것은 中과 中庸을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리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데 원인이 있다.

2. 중용사상의 정치적 실천 논의

전근대 동아시아 정치사에서, 『중용』은 군주를 비롯한 지배 엘리트가 끊임없이 학습하고 숙지해야 할 텍스트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한편으로, 현실적 정치 논의에서 중용사상의 해석이 개재되기도 했다.

“경상도 관찰사 김시양(金時讓)이 하직 인사에 임하니 상께서 이렇게 유시하셨다. “요즘 그 도의 풍속이 크게 어그러지고 있다. 관찰사로서 풍속을 바꿔 놓는 일을 우선으로 하라. 전임자 가운데 민성휘(閔聖徽)는 너무 급박했고, 이민구(李敏求)는 반대로 너무 완만했다. 경은 반드시 중용의 도를 택해 잘 다스리라.”³⁵⁾

“하루는 사헌부 동료들이 모여 앉았는데 정인홍(鄭仁弘)이 심의겸(沈義謙)의 일을 꺼내며 논핵 파직시키자 주장했다. 이이가 말하기를, ‘차자를 올려 논핵만 하는 것이 어떻겠소.’ 하니, 정인홍은 ‘그보다는 논핵하고 파직시키는 것이 분명하고 바르오.’ 하였다. 이이는 ‘이 일은 계사(啓辭)가 중용을 얻어야 하오. 만일 조금이라도 과격하면 반드시 사태가 만연될 수 있소. 그리고 기복(起復)하려고 한 일은 마땅히 반신반의(半信半疑)로 미뤄두고, 계사 가운데는 넣지 말아야 하오.’ 하니, 동료들이 모두 따랐다.”³⁶⁾

이처럼 ‘과불급’을 피해 적당한 선에서 정책을 쓰거나, 극단론을 피하고 온건론을 채택하는 차원에서 중용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길보(尹宣舉)는 원래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고인들처럼 절차탁마의 뜻으로 경계의 말을 했던 것인데, 너무 지나쳤던지 결국 친구를 잃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처지가 되니, 스스로 중립을 지키다가 가장 곤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선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중립을 지켰다며 죄가 면해지리라 보는 겁니까? 중립 그 자체가 틀린 선택입니다. 무슨 일이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 비록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으깨지더라도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일이라면 비록 털 하나를 뽑아 천하를 이롭게 한다고 해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현(聖賢)의 중용지도이니까요. 그런데 그는 중립을 내세웠으니 그것이 잘못입니다.”³⁷⁾

35) “慶尙道觀察使金時讓辭陞，上諭之曰，本道近日俗習大謬，移風易俗，誠按節者所當勉也。前日受任之人，閔聖徽太急，李敏求太緩，卿須處之得中。”『國朝寶鑑』卷35 仁祖 4年

36) “一日憲府齊坐，鄭仁弘發義謙事欲論罷。珥曰，上筭論其爲人何如。仁弘曰，不如論罷之爲明正矣。珥曰，此事必須啓辭得中，若稍過激則必有蔓延之患，且起復事當置之。疑信之間，不可入於啓辭中也。僚議皆從之。”『石潭日記』卷下「萬曆九年辛巳」

37) “吉甫有遠慮，自言愛吾君甚，發得箴警太切，以致不能保交道。吉甫既失於彼，又失於此，自謂中立而最困。先生笑曰，中立，固敗道也。事之當爲者，雖磨頂放踵，爲之。事之不可爲者，雖拔一毛利天下，不

“옛 태산군(泰山郡)에 한 거사(居士)가 있었다. 그 학문은 경사를 섭렵했고 그 뜻은 성현을 사으로 했으니, 두 차례 이단을 물리치는 상소를 함께 중용(中庸)에 의거했다.”³⁸⁾

이렇게 당파 사이의 대립에서 중립을 취함을 배격하거나, 이른바 ‘이단사설’을 공격하는 데 중용이 뒷받침되기도 했다. 中庸에 ‘중립(中立)’과 ‘적중(的中)’의 의미가 모두 있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시중인가?’의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근대 이후로는, 중용의 정치적 의미를 실용적 절충주의 내지 보수주의에서 찾는 경우가 있었다. 사회주의 이념을 확고히 따르면서도 현대 중국의 현실에 맞춰 적용해야 한다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정책이 중용사상에 근거했다는 분석이 있고(오문환 2000), 『중용의 정치사상』에서 이념적 극단주의를 피하고 ‘다수와 법의 지배’를 중심으로 실용적 정치를 추구하자고 밝힌 최상용도 있다(최상용 2012). 또 신정근은 ‘중용은 윤리적으로 일상에서 상식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의미이며, 정치적으로는 현실주의와 보수주의를 지향한다’고 해석했다(신정근 2010).

한편 『중용』 1장의 “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이나 20장의 “萬物並育而不相害，道並行而不相悖”，22장의 “惟天下至誠，爲能盡其性。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 등에서 현대 생태주의와의 친화성을 떠올리는 시각도 있다(장승희 2015; 김세정 2017; 황종원 2022). 이는 자연철학과 도덕철학이 융합되어 있던 주자-성리학적 중용사상에서 자연철학 쪽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하지만 정치사상적으로는 최근 중국이 국제외교에서 “萬物並育而不相害，道並行而不相悖”를 비유적으로 제시하며 평화공존론을 표방하는 정도에 그칠 뿐(方浩範 2017), 이미 제시한 대로 도덕철학적 면에 방점을 둔 실용주의-보수주의적 시각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포스트데모스론과의 접점을 생각해 보자.

3. 중용사상과 포스트데모스론의 친화성

중용사상과 포스트데모스론은 전혀 다른 배경에서 구성되었음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당한 친화성을 보인다.

1) ‘엄밀하지 않은 바름의 정치사상’

리쩌허우(李澤厚)는 동아시아(중국) 전근대 사상 일반에 대해 ‘이성과 감성이 분리되지 않는... 종교가 아닌 심미적 경계가 최고의 목표’라고 평가했다(李澤厚 2005, 1-594). 그것은 중용사상에 대해서도 적중한다. 에피스테메(episteme)를 고려하지 않는 프로네시스(phronesis), 아레테(arete)를 포기한 채 칼로스(kalos)를 우선하는 아가토스(agathos)다. 그것은 모호-복잡-혼란을 특징으로 할뿐더러, 철학으로서의 엄밀성을 아예 외면하며 이데아(idea)보다 이야기(story)를 선호하는(Harraway 2016, 109) 경향인 포스트데모스론과도 상통한다.³⁹⁾

또한 정치사상으로서의 중용사상은 ‘바름의 정치사상(political thought of right)’이며, ‘이

爲。此聖賢之中也。吉甫以中立爲道，此其所以失也。”『白湖集』『白湖先生文集附錄』〈年譜〉

38) “古泰山郡，有一居士。其學則涉獵乎經史，其志則師友乎聖賢，再上疏闢異端，依乎中庸矣。”『不憂軒集』卷2「文」〈不憂軒記〉

39) “이론이라 부를 만한 것도 없다.”(홍성욱 2018, 29); “흐리멍텅한 사유.”(Briant 2021, 399)

해관계의 정치사상(political thought of interest)'이 아니다. 근대 이후 '무엇이 바른인가'라는 질문이 퇴색하고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전제 아래 사적 이해관계의 공적 조정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이론과 사상이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정치는 바름이며(政者正也), 바름이란 천명(天命)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주희 이래 모든 고전 중용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개인의)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배제'를 中으로 돌아가고 中을 구현하는 데서 핵심 조건으로 삼아왔다.

그것은 포스트데모스론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보다 잘 보장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물론 그것을 배제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으나(그것은 중용사상도 그렇다), 정치의 기본 목표로 삼지는 않으며,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사물의 입장을 포괄하는 정치를 모색하려 한다. 중용사상이나 포스트데모스론이나, '이성과 감성이 분리되지 않는 차원에서 바르고, 따라서 아름다운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2) '인간과 사물의 융합적 접근'

포스트데모스론에서 인간과 사물을 구분한 데카르트(Descartes)적 이원론은 맹렬히 부정된다(Harraway 2016, 59; Briant 2021, 17-18; Harman 2005, 66; 338). 인간의 의지, 능동성이 정치영역에서 갖는 '특권'도 부정되고(國分功一郎 2019), 인간만 가능하다고 여겨져온 '(정치적)행동'은 '활동'으로 대체된다(Latour 1999; Ramond 2016).

전근대 동아시아인에게, 중용사상가에게 이런 입장은 별로 당혹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萬物並育而不相害，道並行而不相悖”，“惟天下至誠，爲能盡其性。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의 경지는 분명 당장의 현실은 아니지만, 인간이 中庸을 제대로 지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지다. 그런데 여기서 '전근대 사상 특유의, 주술적 애니미즘' 차원으로 천인감응(天人感應)을 이해하면 피상적이다. 인간과 사물을 분리해 보고, 전자가 후자를 무제한적으로 활용해 사적인 욕망-이익을 추구해도 된다는 사상이 서구 근대화의 배경이었고, 오늘날 '거대한 요동과 붕괴'를 초래한 배경이다. 마찬가지로, 그곳이 전근대 동아시아라 해도, 사람이 反中庸에 몰두해 천명을 벗어난 욕망 추구를 하다 보면 천치만물의 질서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中和가 이루어져야 '자연이 적당하게 운행하며, 만물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이다(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

3) '미발로서의 실재와 이발로서의 현실'

고전 중용사상가들은 한결같이 중용을 사람의 심리 중심으로 이해했다. 미발의 중이란 '희로애락이 동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한다고 『중용』에 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로애락이란 곧 욕망의 계기이며, 의지의 단초다. 홉스는 인간이 호(appetite)와 오(aversion)를 느끼게 되면서 비로소 운동하기 시작하고, 인간답게 살기 시작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호를 취하고 오를 피하려는 것이 의지(will)다(Hobbes 1977, 60-66). 인간 외의 많은 생물도 정도의 차이를 두고 감각-욕망을 발할 것이다. 그러나 '사물'은 그런 '쾌고감수능력'이 없거나, 무시된다. 인간도 사물-객체에 포함된다면, 희로애락이 미발된 세계에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현실(actual) 세계는 희로애락이 발동(act)된 세계다. 인간과 사물, 생물과 무생물이 구분되며, 인간들 사이에서도 구분이 이뤄지며, 각자의 욕망을 좇아 활용, 거래, 착취,

강압이 끝없이 진행되는 세계다.

레비 브라이언트는 모든 존재가 평평하게 존재하는 ‘실재계(real world)’와 동등하지만 동일하지 않게 존재하는 ‘현실계(actual world)’를 구분했다(Briant 2021, 345-410). 그가 그런 구분을 하면서 『중용』을 참조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는 ‘미발의 세계와 이발의 세계’라는 구분과 놀랄 만큼 유사하다. 그러므로 ‘존재의 평평함을 실제(real)’라 여기고 ‘현실에서 객체들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일은 ‘미발의 세계를 보다 근본적인 세계라 여기고(中也者, 天下之大本也)’ 이발의 세계에서도 절도에 맞게 욕망을 추구하여, 조화를 이루는(發而皆中節, 謂之和)’일로 ‘번역’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계에 두루 통할 위대한 길이며, 그런 조화를 완성했을 때 자연이 적당하게 운행하며, 만물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이다(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4) ‘천지의 화육에 동참하는 군자와 녹색계급’

그러나 ‘실제로’ 사물은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도, 의사표시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인간의 대의(representation)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문에, ‘어차피 현실의 국민 대의제에서도 실제로 모든 사람이 정치적 행동과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는다’고 라투르는 반박한다. 그가 구상하는 사물의회에서 ‘전문가들은 사물을 대표하여, 정치인들은 인간을 대표하여 인간과 사물이 관련된 주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다.’(Latour 2004, 99-128) 그리고 ‘녹색 계급’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당사자 의식을 강력히 느끼는 사람들’로, 전통적인 이해관계 정치에서의 ‘객관적’ 이익과 별개의 ‘녹색 의식’이 두드러지는 사람들이다.(Latour-Schultz 2022, 18; 26)

이러한 ‘사물의 대변자, 녹색 의식에 따라 구성된 계급’은 중용사상에서 제시된 ‘군자’와 유사하다. 군자는 中庸을 하며(君子中庸),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깊이 이해해 자연의 운행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존재다(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그들은 일단 정치적 행동과 의사표시를 할 수 없던 백성을 대표해 그들을 위해 정치를 했으며, 그것은 분명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를 백성에게 명목적 주권이 부여된 준(準)민주헌정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이상익 2006), 라투르도 아마 ‘군자 대의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교민주주의’와 ‘포스트데모크라티즘’은 묘하게 엮인다.

5) 공통의 정치적 한계점과 가능성

이처럼 중용사상과 포스트데모스론이 높은 친화성을 보이는 이상, 그에 대한 비판 역시 공통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

첫째, 실현 가능성이 높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포스트데모스론은 많은 사람들(‘녹색 계급’이 될 수 있을 만큼 생태의식이 높은 사람들을 포함하여)에게 너무 생경하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자체적인 불일치나 모이해도 적지 않다. 사상의 논변 공간에서는 유력할 수 있어도, 현실 정치 공간에서는 효과적으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용사상이 성리학자와 그 대안적 사상가들에게 활발한 논의를 촉발했으나, 정치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변혁을 이룬 정도는 크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애초에 ‘바름의 정치’가 ‘이해관계의 정치’에 맞서, dingpolitik이 realpolitik에 맞서 얼마나 큰 위력을 형성할 수 있을지, 설불리 기대

하기 어렵다.

둘째, ‘새로운 비민주적 권력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용사상을 근거로, 이른바 군자들은 소인으로 지목된 정적들을 배제하고, 크게는 백성을 배제-억압할 수 있었다. 中의 경지에 이르고 인성, 물성을 모두 파악한 인물을 두루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포스트데모스론에서 제시되는 ‘사물 의회’, 그곳에서 ‘사물을 대표해’ 인간 대표인 정치인들과 대등하게 정치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은 새로운 군자로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그것은 데모크라시라기보다 또 다른 형태의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가 될 수 있다. 라투르는 ‘녹색 계급’이라는 대중적 권력을 상정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듯하며, 이들은 결코 ‘전위집단’과 같지 않다고 강조하지만,⁴⁰⁾ ‘공동의 대위기’라는 인식 정도로 것처럼 자발적인 ‘사적 이익의 포기와 바름 정치의 수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가능하다면, 그것은 ‘녹색 독재’와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다.⁴¹⁾

지금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생태적 위기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 기원이 서구 근대적 사고체계에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때, 포스트데모스론과 같은 정치사상적 논의는 유용하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한계와 비효과성을 부정하기 힘들다면, ‘중도(中道)’에 대한 중도(中道)도 생각해볼직하다. 다시 말해, 아무래도 자연철학-도덕철학의 융합체제에서 자연철학에 좀 더 치우치는 지금의 포스트데모스론에 대하여, 좀 더 인간적-도덕철학적인 점에 무게를 두었던 양명학-실학-고학적 중용론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소외되어 온 다수 민중의 창발성에 중점을 두는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대안’에 대해 ‘중용’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사상적 차원에서 ‘사물의회’ 등의 대안에 부정적 결론을 내리면서도 그것이 숙의민주주의적 대안에 기여할 가능성을 유보하는 입장 등에 지지받으리라 여겨진다(Whiteside 2013).

IV. 나가며

21세기 초라는 당대 시점에서 학술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포스트데모스론’, 수백 년 전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활성화를 거친 ‘중용사상’. 여기서는 서로 접점이 전혀 없을 듯한 두 사상조류, 계통이 전혀 다른 관념체계에 대해 그 주된 논의 과정을 간략히 제시하고, 그 유사성에 근거한 친화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정치사상적 맥락, 즉 순전한 사상사적 관심사를 떠나 어떤 사상이 현실을 정치적으로 개변할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맥락에서, 이 두 사상 조류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연출했다. 자연철학과 도덕철학이 융합된 견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살고자 하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었고, 다르게 보면 개념과 관념의 유희 속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무력한, 혹여 유력해진다고 해도 그것대로 또 다른 심각성을 노정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래도 이러한 시도, 계통이 전혀 다른 두 관념체계를 비교하고 분석해 보는 시도의 유용성은 실존한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첫째, 인간과 사물의 문제에 대해 주어져 온 인간의 고민과 숙고가 동서와 근대의 경계를 넘어 일정한 맥락적 동형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 둘째, 그리

40) “옛 지도층에게는 전위가 있었고 후위가 있었다.(...) 감싸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키우는 것과 전혀 다른 지도가 요구된다. 녹색 계급은 옛 후위를 완전히 다르게 규정한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은 다른 계급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 반대로 다른 계급들과 마침내 합류한다.”(Latour-Schultz 2022, 110-111)

41) “객체지향 정치는 객체지향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역류할 여지가 크다”는 신현우의 비판도 이런 맥락이다(신현우 2021).

하여 서로 다른 배경의 비슷한 관념체계를 비교 분석함에 따라 각자의 차원에서 모호하거나 불분명했던 쟁점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 셋째, 중용사상-포스트데모스론이 직면했던 ‘대중적 호응 미흡의 문제’를 어찌면 조금이나마 해결할 방안이 이로써 마련될 있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해, 서구 철학사상의 흐름을 공부하고 숙고해 온 사람들과, 동아시아 전근대 사상에 대해 연구하고 숙지해 온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통해 좀 더 쉽고 일반적인 맥락적 이해를 하면서, 공통의 주장에 대해 공통의 지지를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제도를 넘어서는 생활 속의 과정이자 문화로 본 듀이에 공감하며, 스스로의 포스트데모스론을 정당화했던 라투르의 희망(Blok-Jensen 2017, 162)과 조응할 수 있다.

도나 해러웨이는 계통에 충실한 세대적 재생산이 지금의 지구적 위기에는 부적합하다며 ‘자식보다 친척을 만들자!’고 주장했다(Haraway 2016). 이를 원용해, 서구 철학과 정치사상을 천학해 온 사람, 동아시아 전근대 사상을 내내 공부해 온 사람, 이들을 ‘친척’으로 묶는 일이야말로 오늘날의 지적, 문명적, 지구적 위기에 대한 비상구를 배태할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생략)

Session 2

山岡龍一 Ryuichi YAMAOKA
(放送大学)

“부정의의 감각과 감정의 정치로서의
민주주의”

부정의의 감각과 감정의 정치로서의 민주주의

야마오카 류이치 (방송대학)

1. 포폴리즘 · 민주주의 · 자유주의

포폴리즘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은 많은 논자가 동의하는 바이다. 그것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고찰하려 하면 더욱 곤란함과 마주하게 된다. 나는 여기에서 포폴리즘에는 다양한 용법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¹, 매우 인상론적인 대상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두고자 한다. 즉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정치로부터 이탈하면서 민주주의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현상, 예를 들어 미합중국의 트럼프주의와 같은 것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만일을 위해 이 주제의 권위자 한 사람의 논의를 간단하게 확인해두자. 얀 베르너 뮐러에 의하면 포폴리즘은 「정체성 정치의 한 형태(a form of identity politics)」이며 반엘리트주의적이라는 것에 더하여 언제나 「반다원주의적(anti-pluralistic)」이며 나아가서 그 수사학이 도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뮐러는 「포폴리즘이 민주주의에 있어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유는 민주주의에는 다원주의(pluralism)와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².

나는 굳이 어떤 의미에서 훨씬 애매한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이러한 문맥에서 사용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나의 연구대상이 민주주의라는 것에도 의한 것이나 부분적으로는 현대정치이론 (특히 분석적인 그것)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뮐러가 포폴리즘이 민주주의에의 위협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민주주의에의 위협으로 다시 고쳐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포폴리즘은 민주주의의 타자인 것인가, 이탈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발현인가하는 질문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복잡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지향하지 않고 그에 대한 해답을 고찰하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논의를 제공했으면 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도 고전적인 문제이다. 여기에서도 권위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참고해보자. 이탈리아의 정치이론가 보비오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분석하면서 한편에서 민주주의를 국가는 일정한 제약과 기능을 부과하는 존재라고 하는 국가(state)의 구상이라고 간주하고 또 한편으로 민주주의를 구성원 전원이나 혹은 다수파의 제어하에 놓여있는 통치(government)의 한 형태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뱅자맹 콩스탕의 「고대인의 자유와 근대인의

¹ 예를 들어 Ionescu and Gellner (1969) 와 Canovan (1981) 을 참조.

² Müller (2016), pp.2-3 ; 일본어 번역 四~五頁을 참조.

자유」를 루소 비판으로서 소개하고 있다³.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와 통치=정부를 구별하고 그 상호작용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는 점이다. 민주주의라는 통치를 국가의 원리와 제도로 제어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국가의 원리와 제도를 바꿔 말한다면 입헌주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자유민주주의는 입헌민주주의(constituonal democracy)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를 현대정치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정의의 이념과 민주주의 이념의 상호작용의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롤스 이래의 리버럴파의 분석적 정치이론이 정의의 이론구축과 쇄신에 힘써왔던 이유의 하나가 이렇게 이해된 자유민주주의의 보다 좋은 구상의 탐구라고 하는 규범적 관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⁴. 그런 탐구중 가장 저명한 것이 롤스의 정치 자유주의이며 「공공이성(public reason)」의 이념이다. 이것은 입헌민주주의의 정치 액터(정치가, 재판관, 일반시민)의 행위와 담론이 합리적인 (reasonable) 것에 제한되는 것으로 리버럴한 정통성을 실현하려 하는 시도였다⁵. 거기서 제시된 것은 상호성의 기준(criterion of reciprocity)이며 입헌민주주의의 정치적 액터는 자신의 행위와 담론은 다른 모든 시민에 대해 정당화 가능한 것으로 해야(합리적인 거부권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정치의 구상이 제시된 것이다. 이 구상은 도덕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공공이성의 이념은 (서로 중첩되는 합의(overlapping consensus)와 협동하는 것으로) 정치적 안정성의 구축에 공헌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멋지게 정식화된 정의의 이념에 의한 민주주의의 제어라는 구상은 트럼프 주의라는 포퓰리즘이 롤스의 구상의 역사적 원천인 미국에서 맹위를 떨침으로 인해 그 위신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이 리베럴를 야유하는 빈정거림을 표현하는 말처럼 되는 담론이 확산하는 현상은 롤스적 정치이론에 힘써 노력해온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미루어 생각할 수

³ Bobbio (1990), pp.1-3.

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현대정치이론에서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여기에서의 나의 설명은 과도하게 관념적이고 도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20 세기 후기의 정치이론에 있어 이 주제에 관해서 훨씬 역사적이고 정확하게, 보다 뉘앙스를 동반한 설명은 Dowding and Goodin and Pateman (2004)의 Introduction 에 있다. 이 책에서는 정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성을 직접 소개한 정치이론가는 적는데 그 위대한 예외가 B·배리(Brian Barry)라고 되어 있다. 그 배리의 견해에 의하면 「민주적인 체제가 정의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이유 등은 거의 없다. 민주적인 결정은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보다 민주적이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다」 (p.5) 라고 여겨진다. 이 민주주의론은 사회정의에 의한 민주주의 제어라는 구상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⁵ 예를 들어 Rawls (2005), pp.217, 270, 441-442 등을 참조.

있다. 최근 적지 않은 정치이론 연구가가 민주주의의 이론적 탐구에 힘쓰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정신적 동요의 소산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면서 이것과는 다른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의 원리를 쇄신하고 그것을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에 적용한다는, 그 자체는 매우 진지하고 아마 앞으로도 많은 정치이론가들이 종사할 터인 행위에 대해서 그것과는 다른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싶다. 중요한 힌트는 국가와 통치의 개념적 구별이다. 보비오는 이 구별을 콩스탕에 의한 루소 비판속에 자리매김했지만 다른아닌 이 구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이 루소였다. 그는 정부(Gouvernement)에 대해서 논할 때 「정부는 부당하게도 주권자와 혼동되고 있다」⁶ 고 말했지만 이 경우 「주권자」에 의해 의미되고 있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가 관철된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가 대의제 통치를 부정한 것은 모든 시민의 의지가 일반의지로서 나타나는 것에 의해 비로소 정부를 바르게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루소는 정부의 형태로서는 민주주의를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⁷. 정부의 형태는 여러가지 역사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순수한 민주주의라는 통치형태는 실효적인 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비민주적인 형태로 될 수 있는 정부를 제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에 기반하는 국가=국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루소의 정치적 구상이다. 이것을 우리들의 문제로 번역한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통치=정부의 문제인 포폴리즘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이라는 것이 된다.

어쨌든 이것은 오늘날의 루소 추종자 즉 급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사고방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이상주의적 이라던지 비현실주의적 이라는 비판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매우 현실주의적으로, 회의주의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이론가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이 이론가는 정의를 논하는 것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보여주고 그 대체안으로서 부정의(不正義)를 논할 필요성을 말했다. 이하에서 나는 주디스 슈클라의 사상 특히 『부정의란 무엇인가(The Facesd of Injustice)』 (1990년) 에 나타난 사상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내가 이 저작을 소개하는 이유는 매우 우연적인 것이다. 1990 년에 출판된 이 저작은 올해 2023 년이 되어 비로소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번역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번역을 시도하게 된 계기는 2011 년 3 월의 동일본대지진의 경험이었다. 일찍이 겪은 적 없는 그 재해는 천재와 인재의 구별을, 즉 불운과 부정의의 구별을 격렬하게 흔드는

⁶ Rousseau (1972) III, 1: p.154=八八頁

⁷ Ibid., III, 4 를 참조. 「이 정도로 완벽한 정체(政體)는 인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p.165=一〇四頁)

것이였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그 주제로 하는 이 슈클라의 저작을 번역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된 것이였다. 번역작업은 난항을 거듭했지만 그 동안에 일본과 세계에서는 신형 코로나의 감염 대유행같은 이 주제를 상기시키는 사건이 차례로 일어났다(번역자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서울 이태원 혼잡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슈클라는 현대에서는 주로 매력적인 자유주의의 구상인 「공포의 자유주의(Liberation of Fear)」⁸의 제창자로서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덧붙여 현대정치이론에서 롤스적 접근을 비판하는 「정치현실주의」이라고 불리워지는 입장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슈클라를 호의적으로 논하는 경우가 많다⁹. 최근 정치현실주의를 우연히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던¹⁰ 나에 있어 『부정의란 무엇인가?』의 번역이 등장한 것은 이른바 「나루터에 갔더니 배가 나타난 (필요한 것이 때마침 갖춰지거나 나타난 것. 법화경 출전의 관용구-역주)」 셈 이었고 이를 숙독하게 되었다. 그때 우연히 이번 콘퍼런스의 이야기가 온 것이다.

이와 같은 우연성이 있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제시하는 나의 해석은 자유민주주의에 있어 포폴리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이 페이퍼의 주제에 있어 본질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2. 회의주의자의 부정의론

슈클라의 『부정의란 무엇인가』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불운과 부정의의 구별을 문제 삼는다. 그렇지만 현대정치이론의 대체적인 시도가 그러한 것처럼 양자의 구별을 개념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그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구별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의 불가능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함에 있어 슈클라는 현대정치이론의 주류파에 도전하는 듯한 논의를 전개한다.

부정의를 논할 때 일반적으로 정치이론가는 정의의 개념 혹은 일반이론을 확립하려 한다. 그것은 딱히 현대의 분석적 정치이론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슈클라에 의하면 정의를 취급하는 정치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롤스¹¹에 이르기까지 정의의 보편적 혹은 일반적 정식화를 목표로 하고 부정의의 문제는 그와 같은 일반적 원리의 적용의 문제로서 이해해왔다. 부정의는 정의의 결여체로서 인식되었던 것이다. 슈클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정의의 통상 모델(normal model of justice)」이라 부르고 그것이 「부정의라는 것에 대해 그것이 적합한 지적인 경의를 표하고 있지 않」는 까닭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통상 모델은 분배적 정의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⁸ Shklar (1989)

⁹ 예를 들어 Williams (2008). Runciman (2008). Sabl (2011) 를 참조.

¹⁰ 예를 들어 야마오카(山岡, 2019) 를 참조.

¹¹ 슈클라는 실제로는 이 모델의 설명에서 롤스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롤스의 이론이 이 정식에 들어맞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윤리적 신조와 일치되는 방식으로 식별하고 이 규칙이 정의의 구체적인 여러 문제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분배적 정의를 그녀는 「기본적 정의(primary justice)」라고 부른다 [17-18=三二~三三]¹².

슈클라가 정의의 통상 모델에 의문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이 부정의에 대해 개의치 않는 관점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델의 실천성에 관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³. 정의의 통상 모델의 한계를 보여줄 때 슈클라는 정치적 회의주의자 (political skeptics)¹⁴를 소환한다. 즉 플라톤, 아스구스티누스, 몽테뉴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몽테뉴다¹⁵. 그는 「순수하게 심리적인 회의주의」를 받든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자신이 타자를 이해하는 방식과 타자가 자기를 이해하는 방식 사이에 있는 필연적인 어긋남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규칙을 운용하는 능력의 한계를 밝히는 사고방식이다. 이 회의주의는 통상적인 정의에 대한 결정적인 비판을 구성한다. 즉 우리들에게 있는 어떻게든 할 수 없을 정도의 무지와 다양성이 일반적인 규칙의 실효성을 훼손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규칙을 신뢰하는 경우 우리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십상이며 그 과신이 우리들을 오만하게, 잔혹하게 그리고 폭정(暴政)적으로 만든다」고 여겨진다 [26-27=四九~五〇]

몽테뉴의 회의주의는 슈클라에 의하면 20 세기의 사회심리학에 의해 보증된다. 즉 우리의 사회적 사실과 가치에 관한 인지능력은 실제로는 매우 한정된 불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만한 방법도 노력도 취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적절하게 사고할 수 없는 것은 지성 내지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단독직업적으로 말해 그것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27=五一]. 그러한 까닭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의의 시스템은 우리들의 심리적 및 인지적인 한계를 무시하고 있다」 [28=五一~五二]는 사실이다. 즉 이와 같은 도덕심리학에 대한 통찰이 정의의 통상 모델에는 결여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모델은 부정의 주체에 논의의 초점을 좁히는 경향이 있다. 즉 부정의의 문제를 부정(不正)을 범한 인간의 문제로서 파악하는 경향이 전통적인 정의론에는 현저한 것이며 이것이 부정의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약화시켜 왔다고 여겨진다. 이 경향은 니체에 있어서는 정의란 약한자들에 의한 기품있고 자유로운 개인인 강한 자에 대한 억압이라는 표상조차 만들어 내었다 [33-

¹² 본고의 귀갑괄호(〔 〕)내의 숫자는 Shklar (1990) 원저의 쪽수 (아라비아 숫자)와 일본어 번역본의 쪽수 (한자 숫자)를 표시하는 것이다.

¹³ 이와 같은 비판은 슈클라의 초기작품인 Shklar (1964)의 발전으로 파악할 수 있다.

¹⁴ 정치적 회의주의란 「수용되어 있는 사회적 신념에 대한 틀에 박히지 않는 견해를 가지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20=三七].

¹⁵ 몽테뉴는 몽테스키외와 더불어 슈클라 만년의 주저로 여겨지는 Shklar (1984)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다.

34=六二~六三〕 .

슈클라는 단적으로 「철학은 부정의의 진정한 피해자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말해오지 않았다」고 갈파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정치이론이라면 그와 같은 피해자의 혼에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부정의의 감각(a sense of injustice)을 무시할 수는 없을 터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도덕적인 의미라는 것이 무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미란 모든 시민의 인생은 가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시민의 자신의 권리에 대한 감각이 널리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35=六六〕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녀는 「민주주의적인 에토스」와 모든 사람이 가진 「부정의의 감각」을 결부시킨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침묵하게 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터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의 본성적(本性的)인 곤란함이다. 정의를 둘러싼 정치이론이 일반적인 정식화를 지향하는 것임에 대하여, 부정의를 둘러싼 정치이론은 그와 같은 정식화를 거부하는 성질을 그 본성으로서 가진다. 피해자가 피해자로 되는 것은 매우 문맥의존적인 사건이라고 여겨진다. 피해자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코미디에 있어 상투적인 것처럼 피해자의 주관과 관찰자의 격차에는 다리를 놓기 힘든 것이 있다. 피해자의 감정에 다가가는 것은 보통의 인간에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슈클라는 부정의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서 「공적 규칙의 사정거리 바깥으로 완전하게 벗어나 버린 많은 부정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향하게 한다〔35-36=六七~六八〕.

정의의 통상 모델은 인지적인 레벨에서 피해자의 식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피해자라는 상태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이며 통상 모델이 의거하는 보편적인 규칙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37=六九〕.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견이 달라진다」〔38=七二〕는 사실이다. 그것은 제삼자가 피해자라고 인식한 바로 그 본인, 자신이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복잡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 차별과 착취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피해자로서 표상하지 않는 케이스는 적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싫은 것이다. 뭐라해도 그것만큼 꼴사나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38=七二〕. 이와 같이 슈클라에 있어 부정의의 문제는 「개인적이고 정치적인(personal and political)」 것이 된다〔14=二四, cf. 57=七〇~七一〕. 정치적 행위란 반드시 자신의 개인적인 불의에 관한 감각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에 몸소 다가가고자 하는 의식에서 생겨나는 것이 있다. 이 관점에서 슈클라는 수동적 부정의(passive injustice)의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3. 수동적 부정의와 그 부재

수동적 부정의란 키케로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생각이며 자기 친구가 부정(不正)을 뒤집어 쓴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부정이라는 발상이다. 슈클라는 이것을 공화주의적 시티즌십과 결부시키고 공포에서 자유로운 civic 한 정체(政體)의 시민 상호간의 (이상적인) 존재 형태로서 이해한다. 즉 자유로운 시민은 이와 같은 부정의의 감각을 서로 기대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기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변명하기 위해 부정의한 것을 불운한 것이라고 부르게 된다 [45=八五]. 정말로 억압적인 정부는 이와 같은 부정의를 불운으로 바꿔 읽는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이며 그러한 통치가 시민에게 「분노」와 「굴욕감」, 「증오」의 감정을 낳게 한다. 그리고 정치적 회의주의자는 정의의 통상 모델이 이러한 감정과 제대로 마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슈클라는 주장한다 [49=九一]. 우리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부정(否定)적인 감정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포폴리즘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불운과 부정의의 구별은 매우 정치적인 중요성을 띠게 된다. 슈클라는 이와 같은 구별에 관한 인지가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부정의를 불운으로 쉽게 바꿔 읽는 타입의 사고를 숙명론으로 이해하고 그와 같은 숙명론의 현대판으로서 자유시장을 필연성의 세계로서 이해하는 사람들 사회진화론자, 밀턴 프리드먼, 하이에크를 논하고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정치적 보수주의와 쉽게 결합하는 것을 지적한다 [73-79=一三七~一四七].

즉 자유시장을 필연적 세계로서 표상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에서는 고통과 불행은 불운으로서 간주되어 버린다. 다시 우리에게 있어 흥미롭게도 그와 같은 세계에서는 부정의의 감각은 음모론과 결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슈클라는 말한다. 이것은 포폴리즘에 익숙해진 자들에게는 자명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슈클라는 경제적 필연성을 제창하는 이론가도 사실은 음모론에 폭 빠져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즉 정부와 독점주의자, 조합이 진정한 적이라는 설명에 달려든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설명은 원래는 비합리적인 공포로부터 우리들을 해방하기 위한 설명이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그녀는 이와 같은 알곡은 사태가 생겨나는 이유를 심리학의 식견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음모론 쪽을, 일의 책임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보다도 선호하는 것이다 [81=一五一].

그러면 음모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는 누군가가 괴로움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방관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그 때 해야할 것은 「피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이 피해에 동반되는 손해를 막거나 경감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의의 감각에 응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들어보아야 할 것은 피해자의 목소리이며 그것은 [어떤 재해의 피해를 구제하]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회적 기대가 거절되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해석에 다가가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기대를 품을 것이 당연한 기대가 싸그리 무시당했다는 해석이 공유되는 경우 피해자에 다가가 우리들도 항의해야한다. 슈클라에 의하면 「이것은 민주주의 시민에 기대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라는 것이다 [81-82=一五二] .

4. 부정의와 민주주의

부정의의 감각이란 슈클라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약속된 편익을 부정당했을 때와 자신에게 적합한 몫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들이 느끼는 것과 같은 특별한 분노이다. 그것은 타자가 우리에게 가지게 했던 기대를 저버렸을 때 우리가 맛보는 배신의 경험에」 [에 유래하는 감각] 이다 [83=一六一] . 이러한 이해는 분명히 민주적인 에토스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입헌민주주의는 부정의의 감각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최소의 정치적인 대처책을 제시한다」 [85=一六四] 는 그녀의 주장에는 토톨로지의 요소가 있다. 그렇지만 토톨로지는 때때로 우리의 개념파악을 촉진한다. 실제로 「누구에 대해서든 최소한의 인간존엄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불공정하다」 는 원리를 민주적인 부정의의 요구로 하고 「민주주의란 원리적으로 말해서 부정의의 감각을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며 이 감각에 꽤 넓은 사정범위를 부여하는 것이」 [86=一六五] 라고 하는 그녀의 규정은 민주주의에 관한 하나의 매력적인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루소는 슈클라에 있어 중요한 사상가가 된다. 슈클라에 의하면 루소는 부정의에 대한 감각의 자연성을 제창했다. 즉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온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인 정의의 통상 모델이 얼마나 지배적인 것이 되고 부정의가 은폐되어 왔다고 해도 부정의의 감각은 자연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까닭에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소가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부정의의 감각은 우리들 인간성의 유일한 보편적인 표식이며, 우리들의 도덕성의 유일한 자연적인 중핵(中核)이」 라는 것이며 이 사고방식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슈클라는 주장한다 [87-89=一六八~一七一] . 이러한 루소의 사고를 존중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가장 먼저 피해자의 목소리를 신뢰해 볼 필요가 있」 게 된다고 하면서 슈클라는 이것이야말로 「결여될 수 없는 민주적 응답이」 라고 한다. 즉 「피해자의 목소리는 특권적인 목소리」 인 것이다 [90=一七三] . 민주주의 이론은 때때로 개인의 존엄에 호소하지만 슈클라는 이러한 구상을 부정의의 감각에서 재고(再考)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회의주의자인 슈클라가 민주주의를 부정의의 감각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라고 하는 소박한 사상에 머무를 리가 없다. 그녀는 여기에서 부정의의 감각이 불가피적으로 만들어내는 「복수의 요구(a call for revenge)」 라는 감정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91-92=一七四~一七七] . 이러한 복수의 감정=충동은 개인적인 동시에 정치적이기도 하다. 왜냐면 「자유로운 복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의지할 공적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개인간의 약속을 뒤집는 것과 같이 불법성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이기 때문이다 [93=一七八] .

복수는 본성상 주관적이며 예측 불가능하며 제어가 곤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험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가 필요하게 된다. 그렇지만 정의 특히 응보(應報)적 정의가 복수심으로 대치되어지거나 복수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슈클라는 말한다. 무엇보다도 정의는 그 본성상 중립성과 보편성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복수는 「개별적 특정한 케이스와 직접 마주하」는 것이라는 격차의 크기가 문제가 된다 [94=一七九~一八一] . 슈클라는 복수의 사회적 여러형태, 「의무적인 복구(復仇)obligatory vengeance)」, 「피의 복수(vendetta)」, 「정치적 보복(political retaliation)」 을 묘사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이야기 당사자의 상황의 복잡성, 즉 부정의와 그것에 대한 보복의 의미가 심각하게 문맥 의존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부정의를 말하는 매체로서는 문학이 가장 어울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94-97=一八一~一八七] . 불운한 피해자로서 기술된 사람들이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불의의 피해자로서 재기술(再記述)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용이하다. 그러나 그런 까닭에 테러리스트의 표상이 극히 양의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은 스스로가 내건 「정치적인 보복」을 「해방의 전쟁」으로 변화시키는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99=一九〇] . 슈클라에 의하면 보복은 장기적으로 보면 자멸적인 것이라도 부정의의 감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 정통성이 있지만 자멸적인 감정을 가라앉히는 방책(方策)을 민주주의는 제공할 수 있다고 슈클라는 생각한다. 그녀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복수를 시민적 사법 (civil justice)으로 대체될 수 있었던 것을 —— 설령 사법기관이 부여하는 기쁨은 복수와 비교해서 훨씬 작다고 해도 —— 평가한다 [101=一九三] . 이 점은 슈클라가 정의의 통상 모델을 완전하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그 평가의 이유는 그것이 정의에 들어맞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슈클라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법제도의 유용성을 똑같이 평가하던 이론가로서 마키아벨리가 있다. 그에 의하면 공화국의 안정을 위해서 시민의 불만 (그에게 있어 활동적인 공화국에서 시민간의 대립과 불화는 불가피한 것이며 바람직한 것이기 조차 했다) 의 배출구로서 공정한 법의 지배가 필요했다¹⁶. 슈클라에 의한 민주적 사법제도의 평가는 이같은 마키아벨리적인 정치적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적 정당화였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감정 정치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5. 민주주의와 감정의 정치

¹⁶ Machiavelli (2003) I. 7; esp. p.124.

인간본성에 기반하는 것이지만 민주적인 에토스에 의해서 함양되는 부정의의 감각은 수동적인 부정의에 대한 요구를 양성(釀成)한다. 그런 까닭에 수동적인 부정의가 정치적으로 배려되지 않는 경우 파괴적인 감정이 양성되어 음모론과 같은 인식이 확산되어 버리고 만다. 정의의 통상 모델은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한 대처법의 하나이지만 슈클라에 의하면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고 여겨진다. 즉 감정적인 매력의 결여이다. 불편성(不偏性 impartiality)에 호소하는 논의에는 부정의 감각에 있어 필요한 「감정적인 일격(emotional punch)」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정의의 통상 모델은 사람들 사이에 타자의 불행에 대한 무관심을 기르는 위험성조차 있다고 여겨진다 [103-105=一九五~一九九].

이렇게 하여 민주주의는 슈클라에게 있어 부정의의 감각에 대해서 적절하게 응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이상적인) 존재형태라는 것이 된다. 「민주주의는 그 원리원칙에 있어 항의의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 메시지를 존중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106=二〇一]. 민주주의는 시민상호간에 신뢰에 기반한 기대를 육성할 것이다. 그리고 슈클라는 나아가 불의의 감각을 가라앉히는 최선의 방법은 시민자신에게 규칙을 만들게 할 것, 그리고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고 그(그녀)들의 사적인 바람(願望)과 공적목적을 접근시키는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슈클라는 이러한 방책은 반수 이상의 미국시민에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도 인정한다 [107=二〇二]. 이와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양의적 태도¹⁷는 회의주의자 슈클라에게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 인간에게 가능한 범위에서의 최선의 방책은 루소적인 시민적 덕성의 정치적 유지이지만 그것은 현대사회라는 현실을 전제로 한 경우 적절한 정치적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경험주의이며 현실주의자이기도 한 슈클라는 자신의 논의의 적용범위를 자신에게 있어 가까운 예, 즉 미국시민에 한정하고 현대 사회과학의 식견에 근거하면서 부정의의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불평등 문제에 관해 미국인은 개별적인 케이스를 판단에 있어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철학자, 법, 사회과학은 일반적인 것을 지향하지만 시민은 구체적인 것에 고집한다」 [110=二〇九]. 이런 경향이 빈곤문제 등의 해결에 관해 자선활동같은 것을 국가에 의한 복지보다도 선호하는 국민적 기호를 설명하게 된다. 인종차별같은 문제는 일반적인 부정의로서 인정되지만 (다만 우리의 눈에 비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도 흔들리기 시작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부정의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현상」으로 보는 듯한 「강렬한 개인주의」가 미국시민에게는 있다고 슈클라는 논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며 그녀는 도덕적인 주장을 토로한다.

무엇이 안타까운가 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의를 뒤집어썼다고 느꼈을 때 조차

¹⁷ 계몽주의에 대한 슈클라의 양의적 태도에 대해서는 Moyn (2023) 의 제 1 절을 참조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향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이 생겨나는 것은 그 (그녀)들이 동료들(peers)로부터 지지도 바랄 수 없고 항의가 성공할 것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속에 만연하는 부정의에 대해서도, 부정의의 감각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결코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명백한 이유이다. [112=二一一] .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미국인은 클레임을 걸만한 확실한 근거를 얻을 수 없다고 해서 클레임을 보류해서는 안될 것이」 [112=二一二] 라고까지 말하는 슈클라의 주장은 도덕주의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처방전은 매우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지막 절에서 슈클라는 기본적인 정의와 부정의 감각의 관계를 다시 검토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입헌주의 정치에 일정한 평가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쉽게 부정의의 피해자들을 배제하는 것을 용인해버린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정의가 그것의 충분한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가장 혜택받지 못하는 구성원에게 그(그녀)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검증할 것」 [114-115=二一六~二一七] 이 불가결하다고 여겨진다. 부정의의 감각을 표출하는 「정치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 장치는 정치적인 동시에 개인적인 것 이기도 해야할 것이지만,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피해자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정의를 인식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억압받아왔다는 것이 현실에서의 정치의 역사였다.

그런 까닭에 다시금 슈클라는 「능동적이지 않은 정부(inactive government)」 즉 신자유주의적 통치를 비난한다 [118=二二三] . 감정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적 통치를 생각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데 있어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된다¹⁸ .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통치에의 비판은 슈클라에게 있어 포퓰리즘을 계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최초의 저작인 1957 년에 출판된 『애프터 유토피아』에서 계몽의 급진주의의 후계자이면서 거기에서 보수적인 일탈을 한 자유주의를 비판했을 때 슈클라는 구 자유주의(올드 리베러리즘)을 그러한 타락의 전형적인 예로서 소개했던 것이다. 거기에서 발견된 것은 경제결정론의 모습을 취한 숙명론이며 그것은 (이와 같은 말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부정의의 감각과 대립하는 필연성의 정치였던 것이다¹⁹. 이 점에서 정치적 감성에 관해 슈클라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사상가였다고 말할 수 있다.

슈클라가 지향한 것은 현실적이면서 가능한 한 포섭적인 민주적 방법의 탐구이다. 그러한 탐구에 노력할 때의 그녀의 자세는 매우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부정의에 대처할 방법을 실시해도 부정의는 반드시 계속 남아있을

¹⁸ 예를 들어 Brown (2019) passim, 특히 pp.174-182=二四一~二五〇頁을 참조.

¹⁹ Shklar (1957) pp.235-239=二三八~二四〇頁을 참조.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회적 변화도, 어떠한 새로운 법률도 공적 규칙의 어떠한 강제적 변경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부정(不正)한 것이다」〔120=二二六~二二七〕. 즉 정치란 하나의 부정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또 하나의 부정을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정치현실주의에 의거하면서 슈클라는 절차적 정의의 제도를 일정한 정도에서 평가한다. 다만 「절차적」 요소가 순화된 「제비뽑기」의 절차는 순수한 우연성에 굴하는 것을 의미하는 까닭에 불합리하다고 간주한다〔124-125=二三三~二三六〕.

요컨대 우리는 어딘가에서 포기하고 부정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부정의의 감각을 완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회의주의자인 슈클라에게 일반적인 해결법을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녀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우리의 결정은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피해자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녀의 목소리에 충분한 무게를 부여하지 않는 한 부정의한 것이 될 것이다」〔126=二三八〕라는 것이다. 슈클라의 가르침에 따라 정치이론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정의의 감각을 함양하는 것과 피해자에 관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공감적 서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끝없는 행위로서의 정치의 계속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쓸데없는 고생으로도 생각될 수 있는 행위에 있어 무언가의 희망이 불가결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애프터 유토피아』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종류의 절망감이었던 것에 대해서 『부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무언가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슈클라와 마찬가지로 서사의 중요성을 제창한 리처드 로티는 슈클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해 낙관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1996 년에 발표한 에세이에서 현대의 민주주의가 글로벌 레벨에서 위기에 빠진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하기 때문에 로티는 다시 유토피아적 비전의 불가결성을 주장했다. 「장래 세대를 위해서 보다 좋은 것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즉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서 보다 좋은 세계를 창조한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 없이 정치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 따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²⁰. 이 최소한의 희망에 지탱되는 회의주의야말로 우리가 슈클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참고문헌

- Bobbio, Norberto (1990) *Liberalism and Democracy*, trans. By Martin Ryle and Kate Soper, London: Verso (Originally published in Italian 1988)
- Brown, Wendy (2019) *In the Ruins of Neoliberalism: The Rise of Antidemocratic Politics in the We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河野真太郎訳『新自由主義の廃墟で——真実の終わりと民主主義の未来』人文書院、2022 年
- Canovan, Margaret (1981) *Populism* London: Junction Books Ltd.

²⁰ Rorty (2022) p.65.

- Dowding, Keith and Robert E. Goodin and Carole Pateman eds. (2004) *Justice and Democracy: Essays for Brian Bar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onescu, Ghița and Ernest Gellner eds. (1969) *Populism: Its meanings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Letchworth: The Garden City Press.
- Machiavelli, Niccolò (2003) *The Discourses*, trans. by Leslie Walker with revisions by Brian Richardson, London: Penguin Books.
- Moyn, Samuel (2023) *Liberalism Against Itself: Cold War Intellectual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üller, Jan – Werner (2016) *What Is Populism?* Philadelphia,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板橋拓己訳『ポピュリズムとは何か』岩波書店、2017 年
- Rawls, John (2005) *Political Liberalism*, expanded e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st. 1993)
- Rorty, Richard (2022) *What Can We Hope For? Essays on Politics*, ed. By W. P. Malecki and Chris Vopari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usseau, Jean-Jacques (1972) *Du Contrat Social*, ed. By Ronald Grimsley, Oxford: The Clarendon Press; 作田啓一訳『社会契約論』白水社、2010 年
- Runciman, David (2008) *Political Hypocrisy: The Mask of Power, From Hobbes to Orwell and Beyon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ble, Andrew (2011) ‘History and Reality: idealist pathologies and “Harvard School” remedies’ in Jonathan Floyd and Marc Stears eds. *Political Philosophy versus History? Contextualism and Real Politics in Contemporary Polit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klar, Judith N. (1957) *After Utopia: The Decline of Political Faith*,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奈良和重訳『ユートピア以後——政治思想の没落』紀伊國屋書店、1967 年
- Shklar, Judith N. (1964) *Legalism: Law, Morals, and Political Trial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田中成明訳『リーガリズム 法と道徳・政治』岩波書店、2000 年
- Shklar, Judith N. (1984) *Ordinary Vices*, 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Shklar, Judith N. (1989) ‘The Liberalism of Fear’ in Nancy L. Rosenblum ed. *Liberalism and the Moral Lif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hklar, Judith N. (1990) *The Faces of Injusti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川上洋平、沼尾恵、松元雅和訳。岩波書店、2023 年
- Shklar, Judith N. (1991) *American Citizenship: The Quest for Inclus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Williams, Bernard (2005) *In the Beginning Was the Deed: Realism and Moralism in Political Argument*, ed. By Geoffrey Hawthor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山岡龍一（2019）「方法論かエートスか？——政治理論におけるリアリズムとは何か——」
『政治研究』第 66 号

표광민

(慶北大学校)

“멸망의 정치학과 카테콘:
주권자의 비극적 결단에서 만나는
칼 슈미트와 신카이 마코토”

멸망의 정치학과 카테콘

: 주권자의 비극적 결단에서 만나는 칼 슈미트와 신카이 마코토

경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표광민

[초 록]

이 연구는 주권자의 비극적 결단이라는 관점에서 칼 슈미트의 정치사상과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들이 오늘날 인류 위기의 시대에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주장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 특히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속>을 슈미트의 개념인 예외상태와 카테콘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역으로 슈미트의 정치사상에 대한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려 한다. 20세기 초중반에 등장한 슈미트의 정치사상 개념과 21세기 초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감독의 주제의식을 관통하는 것은 세계가 멸망해 간다는 위기의식이다. 슈미트는 적그리스도에 맞서다 패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카테콘(저항하는 자)의 형상을 통해 멸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권자의 분투를 정당화한다. 예외상태와 주권자의 결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카이 마코토는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온 칼 슈미트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생태위기는 인간 종 전체의 삶을 위협하는 근원적 예외상태가 되고 있다. 예외상태를 극복할 대안 모색의 한 방편으로서 슈미트의 카테콘 사상이 신카이 마코토의 애니메이션으로 부활한 것이다.

1. 연구의 주제와 목적

이 연구는 주권자의 비극적 결단이라는 관점에서 칼 슈미트의 정치사상과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들이 오늘날 인류 위기의 시대에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신카이 마코토는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온 칼 슈미트임을 주장하려 한다. 물론 이 연구는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들이 적과 동지의 이분법, 비유럽에 대한 유럽의 배타적 우월성 등 슈미트의 극우적 사유를 지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신카이와 슈미트 사상의 유사성은 멸망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세계가 멸망해 간다는 위기의식, 즉 세계가 근원적인 예외상태에 처해 있다는 두려움이 20세기 초중반에 등장한 정치사상과 21세기 초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양차대전이라는 파국적 상황을 배경으로 형성된 슈미트의 정치사상은, 신학의 영향 아래 정치신학으로 확장되며 묵시론적 멸망의 개념을 포함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들 역시 기후변화와 생태위

기 등 멸망의 위기감을 배경으로 제작되고 있다. 고도로 발전된 21세기에 역설적으로 ‘인류세’, ‘여섯번째 대멸종’ 등의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며 인류 멸망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오늘날 생태위기는 인간 종 전체의 삶을 위협하는 근원적 예외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근원적 예외상태에 대한 주제의식과 함께 슈미트의 정치사상과 신카이의 영화들을 매개하는 구체적인 요소는 ‘주권자의 비극성’이다. 슈미트의 멸망론을 응축하고 있는 카테콘 개념은 다가올 멸망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 멸망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는 숙명적 비극성을 지닌다. 세계의 멸망이라는 파국을 배경으로 하는 신카이의 영화들 역시 멸망 앞에 놓인 인물들의 서사를 개인의 차원에서 조망하며 비극적 서정성을 획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슈미트의 사상과 신카이의 영화들을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근원적 예외상태로서의 인류 멸망의 위기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비극성을 고찰하려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선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들을 슈미트의 예외상태 및 카테콘 개념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너의 이름은.>을 비롯한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들은 일본은 물론 한국과 중국, 미국 등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바 있다. 이러한 성공은 그의 영화들이 재미와 오락성을 지녔기 때문일 뿐 아니라, 영화가 전달하는 주제의식이 오늘날의 세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호응하기 때문이다. 세계의 위기상황과 그 극복을 위한 시도라는 주제의식이 시대적 호소력을 가지는 것이다. 신카이의 영화들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위기들, 자연재해, 재난, 생태위기 등은 오늘날 실제 현실에서 세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들을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게다가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적 특성에 따라 그의 영화들은 파멸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전달하고 있다. 물론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것은 멸망의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주인공들의 분투(奮闘)이다. 이처럼 신카이의 영화들은 현대 세계의 위기상황에 대한 직접적 은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예술적인 영화 장르 작품일 뿐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세계질서에 내재한 위험요소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문제의식은 정치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카이의 작품들을 정치적 텍스트로 해석하기 위해 칼 슈미트의 주요 개념들을 활용하려 한다. 슈미트의 정치사상 자체가 멸망의 위기라는 한계 상황으로부터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슈미트의 개념인 예외상태와 카테콘을 활용하여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 특히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속>을 정치학 텍스트로서 분석하려 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멸망의 비극성이라는 관점에서 슈미트의 정치사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오늘날 생태위기와 관련하여 슈미트 사상의 현재적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다. 슈미트의 정치사상이 대중예술인 신카이의 영화 작품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바로 슈미트 사상에서 주권자가 처하게 되는 멸망의 비극적 상황이다. 신학적 묵시론에 착안한 슈미트의 정치사상은 현재 정치질서의 붕괴는 필연적이라는 숙명론적 멸망론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극단적 예외상태인 멸망의 파국에서 슈미트가 주목하는 것은 몰락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주권자이다. 파국을 회피하기 위한 주권자의 분투는 결국 필연적인 멸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무의미하고 덧없는 행위이다. 정해진 신탁(神託)을 거부하지만 결국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고대 그리스 영웅들의 서사처럼, 이미 운명 지어진 멸망 앞에서 주권자는 가망 없는 저항을 시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극성을 드러내기

위해 슈미트가 제시한 카테콘(Katechon) 개념을 고찰하려 한다. 주권자의 비극성을 통한 슈미트 사상의 이해는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슈미트의 정치사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슈미트의 예외상태와 카테콘 개념이 오늘날 생태 위기의 시대에 지니는 현재적 함의를 고찰하려 한다.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들을 슈미트의 개념들로 해석함으로써, 역으로 슈미트의 정치사상이 오늘날 인류적 위기 상황인 기후변화, 생태위기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재해, 재난에 대해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검토 : 슈미트와 신카이를 통한 멸망의 담론들

본 연구는 ‘멸망에 처한 주권자의 비극적 미학성’이라는 관점에서 칼 슈미트와 신카이 마코토라는 이질적 분야의 두 작가를 연결시키려 한다. 물론 슈미트와 신카이를 비교분석하는 작업은 시도된 바 없는 만큼, 본 논문은 보다 본질적 접근을 위해 슈미트의 멸망론과 신카이 작품이 속한 서브컬처 장르인 ‘세카이계(セカイ系; 世界系)’에 대한 연구들을 선행연구로서 검토하려 한다.

슈미트의 멸망론에 대한 연구들은, 슈미트 정치신학의 기반이 된 묵시론적 역사관념과 ‘카테콘(κατέχων)’ 개념에 주목해 왔다. 이들 연구들은 신학으로부터 세속화된 근대 정치질서가 형성되었다는 슈미트의 관점을 강조하며, 카테콘 개념을 통해 슈미트의 정치신학을 설명한다. 카테콘이란 ‘적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세계의 멸망을 막기 위해 저항하는 존재로서, 신학적 멸망론에 기반한 슈미트의 정치사상을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이다. 슈미트의 멸망론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고찰은 슈미트와 동시대의 인물이자 그의 지인이었던 야콥 타우베스(Jacob Taubes)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자신이 서구 종말론 연구의 권위자인 타우베스는 슈미트에 관한 회고록을 통해 그를 “반혁명의 종말론자(Apokalyptiker der Gegenrevolution)”라고 표현한다(Taubes, 1987: 7). 타우베스는 슈미트가 진보적 역사관을 거부하는 보수주의의 입장을 취하며, 이를 신학적 종말론의 관념 즉, 카테콘 개념을 통해 정당화한다고 말한다(Taubes 1993). 이후 슈미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된 90년대 중반의 독일에서는 슈미트 사상을 멸망론, 특히 카테콘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Grossheusch, 1996; Mehring, 1996; Meuter, 1994; Wacker, 1994;).

독일어권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2000년 이후로는 슈미트의 멸망론에 대한 영어권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줄리아 헬(Julia Hell)은 로마 제국 이래로 서구 사상의 기저에는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멸망의 관념을 정치이론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슈미트의 카테콘 개념이라고 분석한다. 제국의 몰락을 조금이라도 유예시키기 위해 기존의 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이 슈미트 멸망론의 핵심내용이라는 것이다(Hell, 2009; 2010; 2019). 이와 더불어 슈미트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그의 역사관념과 멸망론에 대한 심화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예외상태, 결단, 독재 등 이미 주목받아 온 슈미트의 다른 개념들과 카테콘 등 그의 정치신학적 개념들의 이론적 연관성을 고찰하고 있다(Collison, 2023; Falk, 2016; 2020; 2022; Virno, 2008). 또한 보다 신학적 관점을 강조하며, 기독교 멸망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슈미트의 파국적 역사관 및 카테콘 개념을 고찰하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De Wilde, 2013; Lievens, 2016;

Motschenbacher, 2000; Ostovich, 2007; Rech, 2016). 나아가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 위기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슈미트의 멸망론이 지니는 함의를 검토하는 연구들도 주목할 만하다(Methmann and Rothe 2012; Northcott, 2013; Pellizzoni, 2020; Skrimshire, 2019).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들에 나타난 멸망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그의 작품들이 속한 ‘서브컬처(subculture)’ 분야, 특히 ‘세카이계(セカイ系)’ 장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하위문화라고도 불리는 서브컬처란 영미권에서는 성적소수자 집단, 히피, 힙스터, 스킨헤드 등 특정 집단의 생활방식, 관습, 전통 등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¹ 그러나 아시아 문화권에서 서브컬처라는 용어는 일본 고유의 비주류 문화 장르로서 이해되고 있다. 즉, 서브컬처란 소위 ‘오타쿠(オタク) 문화’의 유의어로서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라이트 노벨² 등 특정 소비층을 겨냥한 문화 장르를 의미한다. 물론 서브컬처 문화의 영역이 점차 확장되면서 특정 집단만이 아닌 대중들의 관심을 받아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서브컬처 분야의 대중적 성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세카이계라고 불리는 하위장르이다. 세카이계는 1995년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대중적, 비평적 성공 이후 일본의 서브컬처 부문의 주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카이계 작품들의 특성은 물론 이러한 세카이계 작품들이 등장하고 대중들의 호응을 얻게 된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는 비평작업들이 발표되었다. 구체적인 작품들마다 편차가 있음에도, 대체적으로 세카이계 장르는 소년, 소녀의 정서적 관계와 세계의 운명을 직접 연관시킨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세카이계 작품들은 멸망의 위기에 놓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여, 주인공 소년, 소녀 또는 친구 집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 진전이나 갈등 해소가 직접적으로 세계의 구원으로 직결되는 서사 구조를 지닌다(마에지마, 2016: 128-129; 아즈마, 2012: 73-75). 이러한 세카이계 내러티브의 대중적 성공은 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투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90년대의 거품 경제 붕괴, 2000년대 들어 발생한 9·11 테러, 고이즈미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증대 등은 개인들에게 생존의 불안감을 각인시켰다. 즉, 구조조정과 실업난, 사회적 안전망 해체 등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로서 세계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는 세카이계 장르가 등장한 것이다(양원석, 2018; 宇野常寛, 2008; Hack, 2010). 나아가, 모토코 다나카(田中素子)는 <신세기 에반게리온>이 방영된 해인 1995년에 고베 대지진, 도쿄 지하철 사린 가스 살포사건 등이 발생하며 일본 사회에 멸망의 위기감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한다(Tanaka, 2014). 카사이 키요시(笠井潔)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가 대중들에게 사회계약의 해체, 즉 흡수적 자연상태의 도래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세카이계 작품들은 예외상태에서의 결단이라는 슈미트적 논리를 따르게 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笠井潔, 2009).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들 역시 이러한 세카이계 장르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의 영화들이 예외상태 및 결단주의와 같은 슈미트의 개념과 연관지어 고찰된 바는 없다. 다만, 신카이의 영화들에 등장하는 재해, 재난에 초점을 맞춘 국내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어 있다(김삼력

¹ 캠브리지 영어사전의 Subculture 정의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subculture> (검색일 : 2023년 10월 11일).

² 가벼운 내용을 담은 흥미 위주의 소설로서, 미화된 삽화를 많이 사용함. 캐릭터 중심의 전개가 특징.

2022; 김여진, 2021; 윤혜영 2018). 이에 본 연구는 세카이게 장르 작품으로서 신카이 마코토의 애니메이션들이 표현하는 세계 멸망의 위기와 이를 막기 위한 주인공들의 분투를 슈미트의 멸망론, 특히 카테콘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카테콘 개념을 중심으로 슈미트의 멸망론을 분석한 뒤(3장),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들이 그리고 있는 비극적 주권자로서의 카테콘의 형상을 살펴볼 것이다(4장).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슈미트의 멸망론에 따른 서사구조는 멸망의 위기에 대한 현재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음을 고찰할 것이다(5장).

3. 칼 슈미트의 비극적 주권자로서 카테콘

슈미트는 신학적 구조에 기반하여 세계가 멸망한다는 역사관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파국적 종말론으로부터 카테콘 개념을 제시한다. 슈미트의 멸망론은 인간 세계의 파국과 메시아의 재림이라는 요한계시록으로부터 기본구조를 차용한다. 슈미트가 『정치신학』에서 기적과 예외상태를 비교하여 “근대 정치학의 주요개념들은 세속화된 신학의 개념들”(Schmitt, 2009:43)이라고 말한대로, 그의 멸망론 역시 신학의 종말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슈미트에게 멸망은 세계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처럼 여겨지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극복 불가능한 절대적 예외상태라 할 수 있다. 슈미트는 정치체제의 존망이 위협받는 상황을 예외상태라고 정의하며, 주권자는 이러한 예외상태를 규정하고 그 극복을 위해 국가의 폭력을 동원하는 권능을 지닌 자라고 말한다(Schmitt, 2009:13-14). 그런데, 세계의 멸망은 묵시록의 예언대로 피할 수 없는 파국이기에 주권자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 예외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멸망 앞에 놓인 주권자의 형상으로서 슈미트는 카테콘 개념을 제시한다. ‘막는 자’, ‘저항하는 자’라는 의미의 카테콘은 사도 바울이 작성한 테살로니가 후편의 2장(3-8)에 등장하는 용어로서, 세계 멸망과 메시아의 재림 과정에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세계 멸망의 순간에 적그리스도(Antichrist)가 나타나는데, 카테콘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세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카테콘의 저항은 부질없는 것으로서, 신의 섭리에 따라 카테콘의 패배는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이다. 카테콘이 패배해야만 승리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며, 그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Rasch, 2004:99-100). 이러한 카테콘의 형상에서 슈미트가 떠올리는 것은, 세계의 몰락을 막을 수 없음에도 멸망해 가는 세계를 유지하려는 주권자의 모습이다. 슈미트는 『대지의 노모스』(1950)에서 성 제롬, 테르툴리아누스 등의 교부철학 이래로 카테콘이 기독교 질서를 수호하는 로마 제국과 그 후예인 유럽의 제국들을 의미했다고 말하며, 카테콘 개념이 세상의 질서를 수호하는 주권자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Schmitt, 1950: 29-31). 물론 카테콘의 저항은 세계의 붕괴를 방지할 수는 없으며, 단지 파국을 유예시킬 뿐이다. 따라서 멸망에 다다른 기까지의 잠정적인 시간(Äon, interim)을 지속하는 것이 카테콘의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마치 그리스 비극의 영웅들처럼, 정해진 운명에 부질없이 저항하는 것이 주권자 카테콘이 지닌 비극성의 본질이다.

4. 신카이 마코토, 멸망의 서정시인 혹은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온 칼 슈미트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들은 슈미트의 멸망론과 카테콘의 비극적 운명에 기반한 서사구조를 통해, 멸망의 위기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주인공들의 노력을 표현한다. 그의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들, 이른바 ‘재난 3부작’으로 불리는 그의 최근작들은 오늘날 세계가 느끼는 멸망의 위기감을 혜성의 충돌(<너의 이름은.>), 이상기후(<날씨의 아이>), 대지진(<스즈메의 문단속>) 등 재난, 재해의 모습으로 구체화한다. 2016년 작품인 <너의 이름은.>에서는 혜성의 충돌이라는 우주적 사건으로 인한 마을의 파괴와 주민 다수의 사망, 즉 한 지역의 멸망이 절대적 예외 상태로 등장한다. <날씨의 아이>에서는 기상 이변, 구체적으로는 한 소녀의 생명을 대가로 한 도쿄의 수몰 위기가 파국의 이미지로 등장한다.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은 <스즈메의 문단속>에서는 ‘미미즈(ミミズ)’라는 불가사의한 형체가 일으키는 대지진으로 멸망을 형상화한다. 주인공들은 우연한 계기로 재앙의 위기를 인식하고 주권자 카테콘의 역할을 떠맡게 되지만, 그럼에도 파국을 막기 위해 분투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 일행은 기성세대나 경찰력 등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감수하면서도 세계의 구원을 위해 카테콘의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적그리스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카테콘의 비극성 역시 영화에 나타나고 있다. <너의 이름은.>에서 서로에 대한 기억을 지운 것과 <날씨의 아이>에서 한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도쿄 절반의 수몰을 감수하는 것 등은 결국 패배할 운명을 지닌 카테콘의 한계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카테콘으로서의 주인공들은 세계,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는 세계를 위해 멸망을 유예시키며, 유예된 파국까지의 현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유예의 비극적 서정성은 <날씨의 아이>에서 남자 주인공인 소년의 기도를 통해 명확히 전달된다.

もしも神様がいるのならばお願いです
 만약, 신이 계신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もう十分です もう大丈夫です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僕たちは何とかやっていけます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요
 だからこれ以上僕たちに何も足さず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그 무엇도 더 주지 마시고
 僕たちから何も引かないで下さい
 우리에게서 그 무엇도 가져가지 말아 주세요
 神様お願いです
 신이시여, 이렇게 빕니다
 僕たちをずっとこのままでいさせて下さい
 우리를 계속 이대로 함께 있게 해주세요

5. 지구적 예외상태로서의 생태위기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들에 담긴 카테콘의 서사구조는 슈미트의 멸망론이 지닌 현재적 함의와 호소력을 보여주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전과 치안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연 재해 및 재난들 역시 빈번히 일어나며, COVID-19과 같이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와 병원균에 의한 감염병 위기가 등장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의 안전부터 도시와 국가의 소멸은 물론 인류 종(種) 전체의 위기까지, 멸망에 대한 담론이 낱설지 않은 현실이 되고 있다. 세계멸망에 대한 위기감의 확산은 그동안 세계가 보편적으로 믿어온 진보의 역사관에 도전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계와 인간의 삶은 개선될 것이라는 진보적 역사관은, 자유민주주의가 이데올로기 대립을 종식시켰다는 ‘역사의 종언’ 주장으로 정점에 달한 바 있다(Fukuyama, 1989). 그러나 21세기의 시작부터 발생한 테러 공격과 이후 테러와의 전쟁 국면은 즉각적으로 멸망의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Clarke, 2006; Girard, 2010; Kennedy-Pipe, 2006; Maier, 2005). 테러 문제 뿐 아니라, 미중 갈등이 세계질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멸망의 위기감을 초래했다(Broomfield 2003; Das 2008; Yee et al. 2002). 최근의 코로나 위기는 지구 상에서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본격화했다(Al-Aghberi 2021; Crossley 2021; Dein 2021; Pohl 2022). 또한 기후변화와 생태위기로 인해 파멸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증폭되며 인류의 멸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Alber 2021; Aravamudan 2013; Foust et al. 2009; Hoggett 2011; Masco 2021). 시대적 인식을 반영하는 대중예술 작품으로서 신카이 감독의 영화들은 현재 세계가 처한 불안감, 즉 멸망의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의 작품들이 거둔 대중적 흥행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들로 인해, 슈미트의 카테콘 개념이 현재적 함의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삼력(2022), “〈날씨의 아이〉, 신카이 마코토 이야기 세계관의 변화 - 기존의 이야기 세계와 〈날씨의 아이〉에서 달라진 세계”,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제27권, 5-33쪽.
- 김여진(2021), “재난서사 속 신화적 상상력과 무녀의 역할: 신카이 마코토 영화 <너의 이름은>과 <날씨의 아이>를 중심으로”, 『신학과 학문』 제31권, 36-64쪽.
- 마에지마 사토시(2016), 『세카이계란 무엇인가: 에반게리온 이후 오타쿠 문화의 역사』, 서울: 위크라이프.
- 아즈마 히로키(2012), 『게임적 리얼리즘의 탄생: 오타쿠, 게임, 라이트노벨』, 서울: 현실문화연구.
- 양원석(2018), “일본의 라이트노벨 연구: 서브컬처의 관점에서”, 건국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 윤혜영(2018),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에 나타난 재해”, 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

문화학보』, 79집, 177-192쪽.

- Al-Aghberi, Munir Ahmed(2021), "Pandemic Apocalypse In Between Dystopias: Observations from Post-Apocalyptic Novels", *Angles*, 12, <http://journals.openedition.org/angles/4595> (검색일: 2022.8.2).
- Alber, Jan(2021), *The Apocalyptic Dimensions of Climate Change*, Berlin/Boston: Walter de Gruyter.
- Aravamudan, Srinivas(2013), "The Catachronism of Climate Change", *Diacritics*, 41(3), pp. 6-30.
- Broomfield, Emma V(2003), "Perceptions of Danger: The China threat theor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2(35), pp. 265-284.
- Clarke, Lee Ben(2006), *Worst cases : terror and catastrophe in the popular imagin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 Collison, Luke(2023), "From the commissary dictator to the Katechon: continuity in Carl Schmitt's theory of intermediate authority", *Political Theology*, 24(2), pp. 164-182.
- Crossley, James(2021), "The Apocalypse and Political Discourse in an Age of COVID",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44(1), pp. 93-111.
- Das, Dilip K.(2008), *The Chinese Economic Renaissance: Apocalypse or Cornucop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De Wilde, Marc(2013), "Politics between times: theologico-political interpretations of the restraining force (katechon) in Paul's second letter to the Thessalonians", in *Paul and the Philosophers*, ed. Ward Blanton and Hent de Vries,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pp. 105-126.
- Dein, Simon(2021), "Covid-19 and the Apocalypse: Religious and Secular Perspective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60(1), pp. 5-15.
- Falk, Hjalmar(2016), "'Im Kampf um Rom' : Carl Schmitt's critique of Rudolph Sohm and the post-secular turn" in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Carl Schmitt: Law, Politics, Theology*, ed. Matilda Arvidsson, Leila Brännström and Panu Minkkinen, New York: Routledge, pp. 181-194.
- _____(2020), "Katechontic Democracy? Carl Schmitt and the Restraining Mediation of Popular Power", in *Constituent Power: Law, Popular Rule and Politics*, ed. Matilda Arvidsson, Leila Brännström and Panu Minkkine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pp. 151-165.
- _____(2022), "The modern Epimetheus: Carl Schmitt's katechontism as reactionary chronopolitics", *Frontiers in Political Science*, 4, <https://doi.org/10.3389/fpos.2022.957094> (검색일: 2023.10.11).
- Foust, Christina R. and William O'Shannon Murphy(2009), "Revealing and Reframing Apocalyptic Tragedy in Global Warming Discourse", *Environmental Communication*, 3(2), pp. 151-167.

- Fukuyama, Francis(1989),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16(Summer), pp. 3-18.
- Girard, Rene´(2010), *Battling to the end: conversations with Benoît Chantre*,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 Grossheutschi, Felix(1996), *Carl Schmitt und die Lehre vom Katechon*, Berlin: Duncker & Humblot.
- Hack, Brett Anthony(2021), “Anime and Social Imagination: Media Fictions in Japan’s Age of Neoliberalism”, 名古屋大学大学院人文学専攻映像学専門 博士論文.
- Hell, Julia(2009), “Katechon: Carl Schmitt’s Imperial Theology and the Ruins of the Future”, *The Germanic Review*, 84(4), pp. 283-326.
- _____(2010), “Imperial Ruin Gazers, or Why Did Scipio Weep?” in *Ruins of Modernity*, ed. Julia Hell and Andreas Schönle,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169-192.
- _____(2019), *The Conquest of Ruins The Third Reich and the Fall of Rom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ggett, Paul(2011), “Climate change and the apocalyptic imagination”, *Psychoanalysis, Culture & Society*, 16(3), pp. 261-275.
- Kennedy-Pipe, Caroline and Nicholas Rengger(2006), “Apocalypse Now? Continuities or Disjunctions in World Politics after 9/11”, *International Affairs*. 82(3), pp. 539-552.
- Lievens, Matthias(2016), “Carl Schmitt’s Concept of History”, in *The Oxford Handbook of Carl Schmitt*, ed. Jens Meierhenrich and Oliver Sim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401-425.
- Mehring, Reinhard(1996), “Karl Löwith, Carl Schmitt, Jacob Taubes und das “Ende der Geschichte””, *Zeitschrift für Religions- und Geistesgeschichte*, 48(3), pp. 231-248.
- Maier, Harry O.(2005), “The President’s Revelation: The Apocalypse, American Providence, and the War on Terror”, *Word & World*, 25(3), pp. 294-307.
- Masco, Joseph(2021), *The future of fallout, and other episodes in radioactive world-mak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Methmann, Chris and Delf Rothe(2012), “Politics for the day after tomorrow: The logic of apocalypse in global climate politics”, *Security Dialogue*, 43(4), pp. 323-344.
- Meuter, Günther(1994), *Der Katechon: Zu Carl Schmitts fundamentalistischer Kritik der Zeit*, Berlin: Duncker & Humblot.
- Motschenbacher, Alfons(2000), *Katechon oder Großinquisitor? : Eine Studie zu Inhalt und Struktur der Politischen Theologie Carl Schmitts*, Marburg: Tectum Verlag.
- Northcott, Michael S.(2013), *A Political Theology of Climate Change*,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Ostovich, Steven(2007), “Carl Schmitt, Political Theology, and Eschatology”, *KronoScope*, 7(1), pp. 49–66.
- Pellizzoni, Luigi(2020), “The environmental state between pre-emption and inoperosity”, *Environmental Politics*, 29(1), pp. 76–95.
- Pohl, Lucas(2022), “The empty city: COVID-19 and the apocalyptic imagination”, *City*, 26(4), pp. 706–722.
- Rasch, William(2004), *Sovereignty and its discontents: on the primacy of conflict and the structure of the political*, London: Birkbeck Law Press.
- Rech, Walter(2016), “Chapter Eschatology and existentialism: Carl Schmitt's historical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in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Carl Schmitt: Law, Politics, Theology*, ed. Matilda Arvidsson, Leila Brännström and Panu Minkkinen, New York: Routledge, pp. 147–164.
- Schmitt, Carl(1950), *Der Nomos der Erde: im Völkerrecht des Jus Publicum Europaeum*. Köln: Greven.
- _____(2009),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änität*, Berlin: Duncker & Humblot.
- Skrimshire, Stefan(2019), “Activism for End Times: Millenarian Belief in an Age of Climate Emergency”, *Political Theology*, 20(6), pp. 518–536.
- Tanaka, Motoko(2014), *Apocalypse in Contemporary Japanese Science Fic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Taubes, Jacob(1987), “Carl Schmitt: ein Apokalyptiker der Gegenrevolution”, in *Ad Carl Schmitt: gegenstrebige Fügung*, written by Jacob Taubes, Berlin: Merve.
- _____(1993), *Die politische Theologie des Paulus*,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 Virno, Paolo(2008), *Multitude: Between Innovation and Negation*, Los Angeles: Semiotext(e).
- Wacker, Bernd(1994), *Die eigentlich katholische Verschärfung ... Konfession, Theologie und Politik im Werk Carl Schmitts*, Munich: Wilhelm Fink Verlag.
- Yee, Herbert and Ian Storey(2002), *The China Threat: Perceptions, Myths and Reality*, New York: Routledge Curzon.
- 宇野常寛(2008), 『ゼロ年代の想像力』, 東京: 早川書房.
- 笠井潔(2009), “セカイ系と例外状態”, 『社会は存在しない』, 限界小説研究会 編, 東京: 南雲堂, 21–61頁.

和田昌也 Masaya WADA
(同志社大学)

“항쟁·자치·봉기:
프랑스의 급진 민주주의에 대해서”

항쟁 · 자치 · 봉기 — 프랑스의 급진 민주주의에 대해서 —

1. 들어가며 : 정치운동은 민주주의의 예외인가? 상태(常態)인가?

최근 아랍의 봄에서 노란셔츠 운동에 이르는 각국에서 전개되어 온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민주주의론에 대한 재질의(再質疑)가 성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민주주의속에서의 단순한 「쟁의 debate」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심급(審級)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인가? (Holman et al. 2015: 4). 때때로 포퓰리즘의 한 형태로서 일괄되어지기도 하는 그것들의 우발적이고 대항적인 운동의 존재형태를 민주주의의 언제나 그러한 상태로서 다시금 파악할 수 있도록 프랑스의 급진 민주주의의 논의가 참조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운동 new social movements」 등 시대의 위기의 여러 양상에 호응하는 것으로서 현재진형형으로 그것들이 현상(現象)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민주주의가 어떠한지 하는지 그 자체를 다시 묻는 것은 위기의 시대의 중요한 이론적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보고는 위에서 살펴본 시대의 과제에 대한 하나의 회답으로서 프랑스의 민주주의론의 이론적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970년대 이후 현대프랑스 정치철학의 융성 속에서 특히 눈부신 이론적 발전을 보여온 급진 민주주의론에 대해서, 클로드 르포르,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 미구엘 아벤수르라고 하는 세명의 정치철학자의 논의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어떠한 급진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해왔는지, 그 이론의 특질과 목적에 대해서 상호비교를 단서로 하여 밝혀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적으로는 삼인삼색의 방식이기는 하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것들의 이론적 의의를 지적하겠다.

2. 항쟁의 민주주의 : 클로드 르포르

프랑스에서 급진 민주주의 연구에 가장 먼저 착수했다고 할 수 있는 르포르의 논의의 기본적 특징은 그것이 전체주의에 대한 대항원리로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배경으로서는 특히 1970년대 초에 술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의 간행을 하나의 계기로 하는 「반전체주의적 전회 anti-totalitarian turn」 (Christofferson 2004) 라고 칭할만한 프랑스 지식인의 소련형 전체주의에 대한 지적 반성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과 그 자신의 지적 내력, 일찍이 카스토리아디스와 함께 「사회주의인가? 야만인가?」라는 마르크스주의 집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했지만, 마르크스주의 나아가서는 마르크스사상에 역사 결정론과 정치적인 것의 경시 등의 극복해야 할 이론적 과제를 발견함과 동시에 이반하고 새로운 정치철학 패러다임의 구축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전체주의를 미연에 방지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존재형태에 대해 르פור는 탐구를 개시했다¹.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의 전체주의 이해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된 인민 peuple-Un」을 구축하는 운동이며 사람들과 사회사이의 모든 차이를 말소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무화(無化)하는 위협으로서 알아차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주의가 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본래 부분에

지나지 않는 당의 존재가 전체로 여겨지는 것」(宇野 2019) ²처럼 민주주의 자신 내부에서 출현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르포르는 이와 같은 전체주의라는 위협에 대해서 어떠한 민주주의상을 그는 구축한 것일까? 그 특질은 아래와 같은 그의 정치사회관과 권력관에서 발견 할 수 있다.

첫번째로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항쟁conflit」에 입각한 모델이다. 그렇다면 항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 그것을 파악하는 열쇠는 그의 정치사회상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르포르는 항쟁을 「사회적인 것」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있어 민주주의 사회는 「원초적 분할division originaire」 즉 「지배하고 싶다는 욕망과 지배당하고 싶지 않은 욕망désir de dominer et désir de n'être pas dominé」(Lefort et Gauchet 1971: 13 note 6)이라는 정치적인간의 본래적 근원적인 욕망의 대항관계속에서 사회가 크게 계속적으로 분할되는 것과 더불어 서로 그 욕망을 부딪치는 범위안에서 「분할된 통일체」로서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르포르가 민주주의를 「항쟁의 제도화 institutionnalisation du conflit」라고 칭할 때 염두에 있는 것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복수(複數)의 항쟁의 실현과 구현화(具現化)인 것이지만, 예를 들어 그가 그 사례로서 「인권」과 「사회권」을 둘러싼 항쟁을 인용하는 것은 (Lacroix et Foessel 2019)언제나 항쟁에 의해서 입각하는 제도라는 민주주의 이해가 있고 더 이야기 하자면 그와 같은 사회적인 것의 항쟁을 통해서 「사회적 유대lien social」와 공적 공간이 창출되는 것이 그 기초조건으로서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권력관이다. 르포르에 있어서 민주주의 권력의 장(場)은 본래 공허해야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르포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권력의 장은 공허한 장 un lieu vide 이다. [중략]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통치자에게 권력을 탈취하거나 구현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이텔릭체 강조는 르포르) (Lefort 1986: 28). 바꿔 말하자면 「공허하고 누구도 점유할 수 없는 것- 어떠한 개인, 어떠한 집단도 그것과 불가분일 수 없는 것- 권력의 장은 그러낼 수 없는 것」(Lefort 1986: 28)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된 민주주의의 권력의 장은 누구에게도 점유될 수 없는 범위에 있어 사람들에게 열려진 정치의 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르포르는 비유하자면 전체주의의 반대의 모습으로서 민주주의를 파악하고, 항쟁을 기축으로 한, 분할되면서도 상호적으로 결합되는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형태를 그려내었다³. 그것은 전통적인 이해, 즉 인민의 권력을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권력의 레짐으로서, 바꿔 말하자면 권력의 중심은 공허하며 그것을 둘러싸고 정치는 전개되지만 누구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언제나 열려있고 나아가서는 미규정성을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의 구성원리를 부각시켰다. 확실히 이것으로 사회를 동질화하고 또 권력의 점유를 시도하는 인간집단의 등장은 이론적으로는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즉 중심이 공허하다고 하는 르포르의 권력관은 예를 들어 사람들의 해방의 실천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 사람들은 권력의 행사와 제도 없이 전체주의의 위협에 대항하거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Caumièrre 2013: 70) 다음에서 볼 카스토리아디스는 이 점을 극복하는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3. 자치의 민주주의 :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

카스토리아디스의 민주주의론에 대해 아래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르포르에 의한 정치적 주체와 권력분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람들의 「자치 autogouvernement」의 실천으로서 민주주의를 다시 파악하는 관점을 확립하고 있는 점일 것이다. 실제로 르포르를 직접 언급하는 방식으로 비판하는 것이 드문 카스토리아디스가, 늘 그렇듯이 이름을 지목하지 않고 「명시적인 권력을 구비한 제도가 없는 사회란 것은 웃기는 소리다」 (Castoriadis 2013: 488)라고 이야기할 때 르포르의 앞선 논의를 상기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⁴.

그러한 그의 민주주의의 범례가 되는 것이 고대 그리스의 정치다. 그것이 단순히 고대への 회귀를 말하기 위한 것이 물론 아니라는 것은 미리 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거기에는 우리들의 시대에도 실현 가능하다고 그가 생각하는 정치의 여러 형태가 존재하고 그것에 대해 사고하고 반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까닭에 그는 고대 그리스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는 어떠한 민주주의의 상(像)을 거기에서 뽑아내는 것일까? 이 점에 관해서 아래에서 그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1991 년의 논고 「어떠한 민주주의인가?」를 참조하면서 그가 말하는 주요한 두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들 수 있는 특징은 카스토리아디스가 민주주의를 「인민의 권력 pouvoir du *démos*」이라고 식별하고 그 집합체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인민의 권력의 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물론 아니다. 오히려 카스토리아디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 민주주의 사회는 초월적이고 초역사적인 사회밖의 규범에 의거한다는 타율(他律)을 배제하고, 자신의 손으로 제한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인민의 권력으로서의 민주주의 사회는 「자기제한 autolimitation 의 레짐」 (Castoriadis 2013: 400)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자율(자기지배)autonomie」, 「자기제도화 auto-institution」의 레짐이라고도 표현한다. 어느 쪽이든 카스토리아디스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 보여주는 것처럼 「휴브리스」를 회피할 수 있는 어떠한 궁극적인 법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법을 자기자신의 힘으로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인민의 권력이 존재하는 사회의 법의 이해이다.

두번째로 들 수 있는 특징은 평등의 사고방식이다. 앞선 부분과도 겹치는 바이지만 자율사회에서 자신 스스로 복종하는 법을 자신의 법으로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법의 형성에 동등하게 참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점에 관해서 카스토리아디스는 고대 그리스를 본받아 정치사회를 세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제시하고 그 조건을 밝히고 있다. 카스토리아디스에 의하면 고대 그리스의 자율한 정치의 존재형태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종종 말해지는 것과 같은 오이코스/폴리스, 즉 가정(家政)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이라는 공사(公私)이원론을 회피하는 것이며 오히려 오이코스/아고라(폴리스)/에클레시아라는 세계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⁵. 구체적으로는 오이코스는 말할 것도 없이 사적인 사항에 관계하는 가정의 영역인 한편, 아고라는 「사적이며 또한 공적영역」으로 위치설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곳은 「정치적 영역의 밖에서 시민들이 얼굴을 마주하는 장소」이며, 그의 예를 따르면 시장에서 책을 사거나 또 누군가와 의논을 하는 점에서 공적 영역인

것은 틀림없지만 동시에 어떠한 정치적 결정이 거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적영역의 성격도 띠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에클레시아아야말로 사람들의 집회와 재판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사람은 「결정하기 위해서 타자와 의논」을 하고 그 결정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구성하는 공적 권력에 의해 실효성 있는 것이 된다. 이 점에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공적이며 또한 공적영역 *sphère publique/publique* 이 참으로 공적이 되는 것」으로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Castoriadis 2013: 403). 여기에서 참으로 라고 강조하는 것은 카스토리아디스에 의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 앙시아레짐에서는 군주의, 전체주의에서는 하나의 당의 「사적인 것」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고, 보다 중요한 것으로 오늘날 서양 사회의 민주주의는 그와 같은 결정에 관여하는 공적 영역이 상실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다(Castoriadis 2013: 403).

이와 같이 카스토리아디스가 고대 그리스로부터 인용한 「자치」의 민주주의의 존재형태는 초월적인 규범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 사회의 법의 책정에 누구나가 평등하게 관여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자율적인 정치의 상으로서 그려지고 있다. 확실히 카스토리아디스는 자신이 직접 참가하는 민주주의를 조각(彫琢)할 때 대표제의 원리를 부정하고 정치엘리트를 자신의 정치상像(상)으로부터 배제하는 등(Castoriadis 1999: 289-290)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에서 대항하는 문자 그대로 급진적인 원리를 수립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옳고 그름은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르포르가 권력의 중심을 공허하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정치적 주체를 권력의 장에서 분리해버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카스토리아디스의 논의는 사람들의 정치적 자율을 위한 권력의 실천, 즉 사람들 스스로가 법을 입법하고 준수하는, 자기지배로서의 민주주의로서 다시금 파악하며, 말하자면 민주주의 그 자체를 보다 자율적인 것으로 재해석한 곳에 그 고유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물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자기해방」이라고도 할만한 정치는 사람들과 사회의 자율에 관한 여러 조건이 불충분한 경우에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아벤수르는 이 물음에 대해 전망을 세우게 된다.

4. 봉기의 민주주의 : 미구엘 아벤수르

아벤수르의 민주주의론을 개관(概觀)하기 전에 르포르, 카스토리아디스의 논의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해두고자 한다.

먼저 르포르에 관해서인데, 그의 항쟁을 기축으로 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벤수르는 공명하면서도 그가 특히 「인권」과 「사회권」을 둘러싼 항쟁을 통한 제도화를 중시하는 나머지 역설적이게도 국가의 기능강화에 연결되고 사람들에게 대한 억압의 가능성을 오히려 확대시켜 버리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한다. 이 점에 대해서 아벤수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국가에 의한 승인과 합의로 향하는 것이며 싫든 좋든 국가에의 강화로, 더욱 나쁘게는 국가의 영속적인 재건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Abensour 2012: 11=2019:6)라고 말이다. 한편 카스토리아디스의 자치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자율적인 정치의 이상적인 형태에는 일정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⁶ 그러한 정치형태는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불명확한 점이 아벤수르에 있어 극복되어야 할 문제가 된다.

요컨대 앞의 두 사람의 민주주의론에 대해 아벤수르는 르포르의 항쟁에 입각하는

민주주의에 모범을 취하면서도 그것을 제도화로 환원하지 않는 다른 (이상적인) 존재 형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한편 카스토리아디스의 논의에 대해서는 국가를 강화한다는 역설에서 자유로운 자율적 정치형태를 그려냈다는 점에서 평가하면서도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 같은 질문의 차원을 식별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단순한 제도화도 자치도 아닌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 것인가

아벤수르의 민주주의론의 특질은 단적으로 「봉기 *insurgeante*」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면봉기라고 간단하게 이야기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점에 관해서 주로 다음의 세가지 문제가 이해될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그 봉기의 대상으로서의 국가에 대해서이다. 아벤수르는 다음과 같이 직재적(直裁的: 돌려 말하지않고 분명하게-역주)으로 논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도래란, 국가를 「본래적」이고 또 특권적인 표적으로 삼는 투쟁의 개막이며 나아가서는 민주주의가, 혹은 통일되고 통합되어 조직화하는 형태-국가에 대항하는 「영원한 봉기」의 극장이다」 (Abensour 2012: 14=2019:8-9). 요컨대 봉기란 국가가 민주주의를 회유하고 무력화하는 것에 대항하여 자신의 자율적인 시간과 공간을 열어 짓히는 민주주의의 존재 형태인 것이다.

두번째로 지금의 부분과도 관련되지만 민주주의의 장은 「어떠한 설립도 허락되지 않는 장에서 설립되는 것이며 바로 (과거에)지나간 것과 (미래에)도래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두개의 국가형태 사이의 쟁점(원문은 구기레句切れ, 하이쿠에서 다른 의미의 내용이 시작되는 지점-역주) (Abensour 2012: 17=2019: 11)]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어떠한 형태의 국가이든 거기에 포섭되는 일 없이 그 외부에 계속 머무르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계속 형성하고 유지시켜가는 영속적인 실천이라는 이해이다.

세번째로 봉기하는 민주주의가 「쟁점을 분명하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요컨대 「해방을 정치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인 것의 승리(화해한 시민사회)로서 동시에 정치적인 것의 소멸을 초래하는 듯한 승리로서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빈번하게 은폐되어온 정치적인 것과 국가사이의 균열을 다시 여」는 것을 그것은 지향하는 것이다(Abensour 2012: 28=2019: 24)].

이상과 같이 르포르가 항쟁에 의해 국가를 강화해 버린다는 역설을 지적하면서 아벤수르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가에 대항하는 실천으로서 「봉기」를 모델화했다. 한편 르포르가 카스토리아디스의 자치가 발현되는 지평을 놓쳐 버렸다고 한다면 아벤수르는 민주주의를 순치(馴致)하는 국가의 지배에 대항하여 전망되는 영속적인 정치공동체로서 명확하게 수립했다는 점이 특필할 만한 것일 터이다⁷.

확실히 아벤수르의 이 모델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르포르가 강조한 인권과 사회권 등 권리보장의 주체를 상정하는 것 없이 정치사회의 성립이 어느 정도나 가능할 것인지 전망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러한 정치 공동체의 구체적인 존재형태는 카스토리아디스의 삼원론쪽에 보다 정확하고 치밀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렇다고는 해도 민주주의 그 자체의 발현이 그것을 회유하는 국가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구상되는 아벤수르의 모델은 명확하게 대상을 가지고 그 위협에 언제나 대항하는 방식으로 계속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을 가리켜 보일 수 있었다는 점에 고유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5. 끝으로 : 포퓰리즘의 시대의 민주주의의 재생을 향해서

이와 같이 민주주의를 정도의 차는 있어도 대표제를 주축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이해관심을 둘러싼 「항쟁」과 「자치」의 실천 나아가서 억압적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향하는 「봉기」쪽으로 그 질문의 차원을 깊이 고찰하고 넓혀 온 그들의 논의는 어느정도 설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히려 현실정치로부터 멀어지고 퇴각이라고 조차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와 같은 실효성을 도외시하는 것 없이 르포르르는 예를 들어 인권정치를 염두에 두고 제도화하는 것을 중시했고 카스토리아디스 자신도 그와 같은 법제도를 사람들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고 그것을 준수하는 자율적 정치제도의 이상적 형태를 자치라고 하여 그 의의를 강조해왔다. 그 점에서 아벤스루는 그들보다도 구체적인 제도화에는 그다지 언급함 없이 도리어 제도화가 국가의 지배를 강화해버린다는 역설을 지적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보다 구체적인 발현의 지평을 해방의 실천으로서 다시 파악하는 것으로 새로운 질문의 차원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사람들이 매일 직면하는 이해를 자각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차원으로 전개하는 항쟁, 사람들의 자발적 자치, 그리고 지배에 저항하는 봉기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보다 민주주의로서 적합한가라고 묻는 의논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비판하면서 힘써 고안해온 민주주의의 급진적 형태의 가능성은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것에 민감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상호 보완하면서 민주주의의 발현을 보다 명확한 것으로서 그 모습을 부각시켜온 것이 아닐까? 물론 이 짧은 개관이 그들의 논의를 모두 다 끌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 정치운동을 이해하고 그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관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포퓰리즘이 전지구적으로 나타나는(現象) 것으로 그 단어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그 의미내용이 확대해석되고 애매하게 되는 시대에 있어서 (Colliot-Thélène 2019), 정치적인 것을 철저히 파괴한 전체주의 시대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그들의 급진 민주주의의 논의는 단순한 전체주의로부터의 방위선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사람들이 자유를 구현화하기 위한 원천을 찾아내어 그 방법과 길을 비추어 내고 있다. 그 이상이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 착종된 작금의 이론적 실천적 상황으로 감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시대의 하나의 위기로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¹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르포르와 카스토리아디스의 관계는 르포르가 「사회주의인가 야만인가」를 이탈하는 1950년대 무렵부터 악화되어 가게 된다. 한편 후술할 아벤스루는 젊을 때부터 르포르들의 「사회주의인가 야만인가」의 활동과 그들의 담론에 접하고 공감하고 그 후 『Texture』지 등에서 그들과 지적활동을 같이 하게 되는 등 서로 접점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점은 첨언해두어도 좋을지도 모른다.

² 본서는 르포르와 카스토리아디스의 논의와 배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참고가 되었다.

³ 르포르의 전체주의론의 전회와 정치적인 것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정치철학」의 구상에 관해서는 줄고 「프랑스의 또 하나의 정치철학 복권의 모멘트: C.르포르의 1970년대의 「전회」의 시점에서」 『同志社グローバル・スタディーズ』10 (2020), p. 87-101 을 참조.

⁴ 똑같은 지적은 다음을 참조. Nicolas Poirier, « Dépasser ou assumer la division sociale ? Castoriadis et Lefort face à la révolution hongroise », *Rue Descartes* 2019/2 (N° 96), p. 30-40, p. 32.

⁵ 활동을 중시하는 카스토리아디스는 한나 아렌트의 논의를 호의적으로 언급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녀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파악한다. 그 주된 논점은 아렌트의 공사이원론의 타당성의 여부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별고를 통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카스토리아디스의 삼원론의 중간영역의 의의를 「공동적인 것」의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Pierre Dardot et Christian Laval, *Commun. Essai sur la révolution au XXIe siècle*, La Découverte, 2014.

⁶ 양자의 공통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Manuel Cervela-Marzal, « Cornelius Castoriadis, Miguel Abensour : quelles convergences ? », Nicolas Poirier (dir.), *Cornelius Castoriadis et Claude Lefort, l'expérience démocratique*, Le bord de l'eau, 2015, p. 169-181.

⁷ 아벤스루의 「해방의 사상」과 「지배의 비판」의 이론적 접합(articulation-역주)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줄고 「「비판적 정치철학」이라는 기도(企圖) : 현대 프랑스 정치철학의 융성에 있어 미구엘 아벤스루의 위치」『同志社グローバル・スタディーズ』11 (2021), p. 213-229 를 참조.

참고문헌

- Abensour, Miguel 2012 *La Démocratie contre l'État. Marx et le moment machiavélien*, Éditions du Félin[『国家に抗するデモクラシー』松葉類・山下雄大訳、法政大学出版局、2019年].
- Castoriadis, Cornelius 1999 *Les carrefours du labyrinthe, tome 2 : Domaines de l'homme*, Seuil ———2013 *Quelle démocratie ? tome 2(Écrits politiques, 1945-1997, IV)*, Éditions du Sandre
- Caumière, Phillipe 2013 « Au-delà de la division sociale, le peuple instituant. Une lecture croisée de Lefort et Castoriadis », *Tumultes* 1 (N° 40), 69-85
- Cervela-Marzal, Manuel 2015 « Cornelius Castoriadis, Miguel Abensour : quelles convergences ? », Nicolas Poirier (dir.), *Cornelius Castoriadis et Claude Lefort, l'expérience démocratique*, Le bord de l'eau, 169-181.
- Christofferson, Michael Scott 2004 *French Intellectuals against the Left: The Antitotalitarian Moment of the 1970s*, Berghahn Books
- Colliot-Thélène, Catherine 2019 « Quel est le peuple de populisme ? », Catherine Colliot-Thélène et Florent Guénard (dir.), *Peuples et populisme*, Puf
- Dardot, Pierre et Laval, Christian 2014 *Commun. Essai sur la révolution au XXIe siècle*, La Découverte
- Dubigeon, Yohan 2015 « Le conseillisme ou l'étroit sentier de l'auto-émancipation », Manuel Cervela-Marzal et Eric Fabri(dir.), *Autonomie ou barbarie : La démocratie radicale de Cornelius Castoriadis et ses défis contemporains*, Le Passager Clandestin, 283-301
- Holman, Christopher. Breaugh, Martin. Magnusson, Rachel. Mazzocchi, Paul. and Penner, Devin. 2015 "Introduction: Radical Democracy and Twentieth Century French Thought" in Martin Breaugh et al. eds., *Thinking Radical Democracy: The Return to Politics in Post-war Franc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Lacroix, Justine et Foessel, Michaël 2019 « Pourquoi Lefort « compte ». Avant-propos » *Esprit* 451, 41-48

Lefort, Claude 1986 *Essais sur le politique : XIXe-XXe siècles*, Seuil

Lefort, Claude et Gauchet, Marcel 1971 « Sur la démocratie: le politique et l'institution du social », *Textures*(N° 2-3), 7-78,

Poirier, Nicolas 2019 « Dépasser ou assumer la division sociale ? Castoriadis et Lefort face à la révolution hongroise », *Rue Descartes* 2 (N° 96), 30-40

宇野重規 2019 『[増補新装版]政治哲学へ：現代フランスとの対話』東京大学出版会

和田昌也 2020 「フランスにおけるもうひとつの政治哲学の復権のモメント：C.ルフォールの1970年代の「転回」の視座から」『同志社グローバル・スタディーズ』10、87-101

———2021 「『批判的政治哲学』という企て：現代フランス政治哲学の興隆におけるミゲル・アバンスールの位置」『同志社グローバル・スタディーズ』11、213-229

Session 3

임경석

(京畿大学校、眞誠愛教養大学)

“위기 시대의 극복과 공생을 위한 정치철학:
칸트의 ‘영구평화’와 맑스의
‘해방적 비판’ 사상의 상보성을 중심으로”

위기 시대의 극복과 공생을 위한 정치철학

- 칸트의 '영구평화'와 맑스의 '해방적 비판' 사상의 상보성을 중심으로 -

임경석(경기대)*

1. 서문

철학이 “경이로운 지적 호기심(Verwunderung/thaumazein)”¹⁾에서 출발한 이래로 그 분과 영역으로 활동 중인 정치철학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 즉, ‘어떤 조건들에서 권위와 질서가 정당한가?’란 질문이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당한 법과 세계질서의 합의체제가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역설적이게도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공동 삶(Zusammenleben)만이 정의롭다’라는 무정부주의적인 세계질서가 평화와 안전의 가능성을 약속할 수 있을 뿐이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1) 공동 삶의 질서체제 내부에 기본적인 질서체제 유지의 요소들인 육체와 생명의 상호인정 등이 전제되어야하며, 2) 적절한 교환업무들이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도록 상호간에 승인되는 가운데, 3) 주고받는 등가교환의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교환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강제권능(Zwangsbefugnis)을 대표하는 글로컬 차원의 법과 세계질서가 존재하도록 경주해야 한다.

오늘날 대학이 직면한 주요 현안의 하나로 언급될 수 있는 ‘기초학문과 인문학의 위기’란 문제를 생각해보자. 실상 이 문제도, 칸트의 오래 전 지적처럼, ‘만학의 여왕’이던 철학이 세분화되는 가운데 소위 인기 학과들의 부침 속에서도 정부의 관리와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 자기반성과 비판임무를 수행해야 할 자기책임의 방기에 따른 원인제공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²⁾ 더구나 우리 시대의 정치철학은 지구촌의 절박한 해결이 요구되는 “기후변화, 물부족과 수자원, 인구증가와 자원의 균형, 민주주의의 확산, 의사결정역량의 개선, IT기술의 융합과 발전방향, 빈부격차의 완화³⁾,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과 공중보건, 교육의 미래, 평화안보전략·인

* zxm0322@naver.com

1) Platon, 『Theaitetos』, 155d. Aristoteles, 『Metaphysika』, 982b 12-17.

2) 칸트는 『학부들 간의 논쟁』에서 전통적 분류 방식에 따라 신학, 법학, 의학의 세 분야를 상위 학부로 높이고 철학을 하위 학부로 칭한다. 다만, 칸트는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세 학부들과 달리 철학은 “정부의 명령으로부터 독립하여 학문적 관심, 즉 이성이 공적으로 말할 권리를 지녀야만 하는 진리에 관계하는 자유를 가지는” 학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비록 철학이 명칭으로 저급한 하위학부로 불릴지언정 “명령할 수 있는 자는 설령 그가 타자의 겸손한 하인일지라도 자유롭게 누군가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는 타자보다 스스로를 더 고상하게 여길 수 있다”란 역할론을 통해 철학의 수행과제와 자긍심을 제안한다. Vgl. I. Kant, 『Der Streit der Fakultäten』, A3-A9.
맑스도 자기반성의 시대적 임무에 주목한 「독·불연보와 관련한 서한」을 통해 현실에 대한 회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이제 다름 아닌 회개가 문제이다. 자신들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 인류는 오직 그들이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 Vgl. K. Marx, MEW 1. 346쪽.

3) 참고. <https://www.un.org/en/global-issues/ending-poverty>

최근 하루 1\$ 이하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통계상으론 계속 감소추세이지만, 하루 2\$ 이하인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는 여전히 세계인구의 거의 10%에 육박할 만큼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절박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과 국가차원의 빈곤퇴치를 위한 글로컬 차원의 적

종갈등과 테러, 여성의 지위신장, 국제조직범죄의 축소대책, 에너지 수요의 충족방안, 과학기술발전과 삶의 질, 지구촌 의사결정 협의체의 개혁”⁴⁾과 같은 밀레니움프로젝트의 갈등과 공생의 논제에 관해 ‘강단의 비판’으로만 머물고 있지 않은지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해 보인다.⁵⁾ 이 글은 정치철학이 당면한 모순적 위기현안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마주할 ‘합당한 불일치’의 지속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위기치유를 위한 변혁역량에 부정부 상태를 대신하는 ‘우선적 정당성’이란 정치철학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를 근대의 정치철학자인 “칸트(I. Kant)와 맑스(K. Marx)의 비판사상”⁶⁾에 내포된 특징과 결합가능성을 통해 제안해 보려는 목적의 초안이다.

2. 왜 칸트와 맑스인가?

우리 시대의 주요 모순은 ‘인간이 만든 죽은 것들이 살아있는 인간을 지배’하는 “전도의 역설”⁷⁾이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처럼 당대의 전도된 세계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했던 근대의 두 정치철학자의 해결방안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자신의 “『영구평화론(1795A, 1796B)』”⁸⁾에 등장하는 연방공화제형 ‘연합국가(Völkerstaat/Bundesstaat)’의 건설을 통해 “전쟁”⁹⁾을 대신할 비호전적 수단으로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겠다는 강력하게 의도된 세계평화의 사상을 구축한 칸트이다. 또 다른 인물은 『자본 I(1867)』에서 초기 자유방임

극적 공생프로그램의 도입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바, ‘글로벌 기본소득의 도입’은 문제해결의 최소해법의 하나로 몇몇 파일럿프로젝트를 통해 그 성과도 입증되고 있는 실천과제이다.

4) 박영숙·제롬 글렌 지음, 『유엔미래보고서 2045』, 262-343쪽.

5) 비판(Kritik)은 어원적으로 희랍어 ή κρίτικη에서 파생한 κρίνειν, κρίσις, κριτήριον, κρίτης처럼 같은 어간의 파생어와 함께 사용되면서 대립진영들 간에 ‘분리하다(scheiden)’, ‘선택하다(auswählen)’, ‘판단하다(beurteilen)’, ‘결단하다(entscheiden)’ 등 다중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동일한 어간으로부터 ‘비판(Kritik)’, ‘기준(Kriterium)’, ‘위기(Krise)’와 같은 중요 개념이 기원한 점이 특별히 주목된다. 아울러 이 용어가 역사적으로 처음 주목된 영역은 법학과 의학의 분야였다. 법정이냐 의료 행위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표준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후 서양철학은 이러한 용법을 학문적 비판의 전문용어로 부각시키게 된다. 참고. C. v. Bormann, Artikel <Kritik>, in: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 4, 1250-1262쪽.

6) 쾨니히스베르크의 철학자 칸트는 자신의 과업을 “우리 시대는 가히 모든 것이 비판에 놓여져야 하는 고유한 비판의 시대이다.”(I. Kant, KrV, A.)라고 천명하는 가운데 자신의 고유한 비판주의(Kritizismus)를 당대의 독단주의와 회의주의 양자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규명된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인식과 판단 능력의 시금석을 토대로 영원한 평화를 기획하고 있다.

7) 맑스의 역사관에 따르면, 인류는 원시공동체 시대엔 자신이 만든 신화나 우상의 지배를, 고대사회에선 공동체의 신분제 질서 안에서, 중세시대엔 인간이 만든 종교의 신에 의해, 근대 이후엔 자본의 지배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이다. 만약 인간이 지구인의 이름으로 주여의 자리에 바로서기 위해선 어떤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는 것일까? 필자는 이 물음의 열쇠를 칸트의 평화공동체와 맑스의 연대결사체의 실천노력에서 찾을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최고법과 도덕원리의 결합으로 평화사상을 정초하는데 있어서는 당위원칙에 따른 의무론적 보편성원칙이 합의되어야 하고, 이 원칙들을 특정한 개인과 집단의 공생적 삶의 구체적 현실상황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맑스의 해방이 지향하는 변혁규칙에 관한 합의과정을 통해 정당한 관리주체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8) 독일어 제목은 『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철학적 기획』이다.

9) 물론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뒤늦은 시대적 충고처럼 전쟁의 ‘정치적 성향’과 ‘군사적 성향’의 상관관계를 구분하는 가운데 전쟁의 본질은 그 각각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전투력(만)이 아닌, 영토의 점령과 국민 등이 참여하는 전쟁의지에 지배되는 현실적 이유와 “어떤 전쟁도 완전히 종결될 순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전쟁은 정치의 한 도구(수단)이기도 하다.”라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주목되어야 하는 논제이다. 참조.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류제승 역, 『전쟁론(Vom Kriege)』, 60쪽과 409-419쪽.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체제모순으로부터 코문주의 연대결사체에로의 이행 논거를 제시한 맑스이다. 필자는 이들은 남긴 정치철학적 유산을 결합하여 우리 시대의 위기 현안들에 대한 정치철학적 임무와 과제의 대안모델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그런 다음 정치철학적 실천의 행위주체인 시민과 함께 요구될 상위단체인 ‘글로벌 연방-세계공화국(glokale Föderal-Weltrepublik)’의 구축과 관련해 열띤 대조되는 칸트의 도덕규범적 당위원칙과 맑스의 현실정치적 수행원칙의 상보적 노력만이 인류가 당면한 위기조건의 극복을 위한 디딤돌이란 주장의 논거를 제시해 보겠다.

근대의 위대한 정치철학자들인 홉스, 로크, 루소 그리고 헤겔 등이 발표한 많은 저작들은 지리상의 발견과 대외무역의 확장으로 등장한 국제법적 법률공동체의 건설의 필요성과 더 나아가 세계적 평화체제의 구축과 건설에 필요한 연구와 관련해 만족스런 방향으로 연구결과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르네상스와 베스트팔렌조약 이래로 유럽중심주의 지역의 평화수립에의 호소와 여타 계획들이 국제법적 차원에서 출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두드러진 사례로 18세기 초엽 칸트에게 영향을 준 피에르(Abbe de Saint-Pierre)의 저서와 더불어 국제법의 초석을 제공한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 수아레즈(Francisco Suárez) 그리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와 벤담(J. Bentham) 등의 저서들에서 국제법과 평화란 주제와 관련된 이론의 단초들이 전개되었음을 살펴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저서들에는 분명히 세계적 평화체제를 제시하는 이론은 결여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당대 정치철학적 경향에 반해서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독자적인 예외를 보여준다. 그는 보편적 법공동체와 평화공동체의 실현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기존의 무관심과 달리 인류의 삶에서 영원히 전쟁을 추방하고 경멸할 구성내용을 제안한다.¹⁰⁾ 칸트는 이미 자신의 여러 저서들에서 이 주제와 관련한 자신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¹¹⁾ 특히 그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넘어 개체와 타 국가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세계시민권의 논쟁점인 ‘방문권(Besuchsrecht)’에도 주목한다. 그는 법적이며 도덕적인 실천이성의 요청에 적절히 부합하기 위해선 이 세 부분이 결합될 때에야 비로소 이성이 포괄적인 공적 현실태로 작동할 수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¹²⁾ 칸트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특별히 현대 정치철학적 과제수행의 논쟁점인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의 관계’에 대한 논쟁적인 관점에서의 주목을 요한다. 그는 소위 이성법을 특징짓는 문화와 시대의 특수성에 따른 기술적 논증의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역사와 사회의 예측으로부터 벗어난 문화 상호간의 규범적 논증이 시작되는 곳에서 상이한 요소들로 토대 지워진 국가들이 평화적 공생이란 관점에서 공통의 관심사에 의무 지워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성법적 출발이 갖게 될 넓은 의미의 장점은

10) 『영구평화론』의 구성은 전문(Preamble), 2. 예비 조항(The Preliminary Articles): 6개 항목으로 영구평화를 이룩하는데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 조항: 신의, 불간섭, 상비군 폐지, 국가채무 미발생, 무력간섭금지, 적대행위금지. 3. 규정 조항(The Definitive Articles): 3개항, 국내법, 국제법, 세계시민법, 4. 부가항목(Supplement): 2항, 영구평화의 보증, 비밀조항, 5. 부록(Appendix): 2항, 도덕과 정치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11) 이 점은 여기서 자세히 상론하지 않겠다. 참조.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적 역사이념 1784(7-9 Satz)』, 『KdU.1790, §83.』, 『Theorie-Praxis Schrift(1793, Abschn. III.』, 『Religionsschrift (1. Stück, III.』 등을 볼 것.

12) I. Kant, Zum ewigen Frieden, BA20-BA46

보편타당한 원리들로부터 행위 규칙들을 이끌어 내면서도 보다 명료한 원칙이론의 형성은 동시에 경험, 현명함 그리고 주변조건들에 늘 개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이 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법공동체와 평화공동체의 건설과 관련된 연방제-세계공화국의 실현방안의 모델도 제시한다는 점이다.¹³⁾

그런데 지금처럼 지구촌의 차등적인 국가위상이 실존하는 현실은 어떻게 다원주의적 관점을 취하면서 위기현안들에 대한 합당한 접근이나 당면한 실질적 억압과 공포의 강도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생기준에 대한 교환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난국의 상황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시대의 정치철학은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보편적 공생실현에 입각한 대원칙의 새로운 시작(the new beginning)을 위한 인정투쟁을 지난 세기 롤즈의 『정의론(1971)』이 상징했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을 통한 만장일치란 도전적 원칙제시를 거듭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변곡점의 과제가 정치철학적 의무로 제대로 인식되고 수행되지 못한다면, 소위 인문학의 위기에 정치철학은 편승하는 방관자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인문학의 학문적 존립기반을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회한으로만 남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전적 시도가 전형인 맑스는 코문주의란 대안공동체의 실현과제를 통해 칸트적 평화사상의 실천방안을 조우한 인물이다. 그는 무계급사회란 결사체의 정치철학적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는 사상적 지양과정인 소위 변증법적 사유의 ‘해방적 비판’이란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¹⁴⁾ 그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어떻게 주체인 인간의 자기소외와 더불어 “물신숭배”¹⁵⁾로 대상화된 자본에 예속되고 통제를 강화하는 신비한 성격의 힘으로 변모했는지를 ‘가치형태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지면관계상, 『자본 I』의 1편 4장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161-171쪽)를 중심으로 어떻게 가

13) 칸트의 세계공동체와 관련된 질서논의는 자유주의적 계약론의 틀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뒤늦게 논의되어 왔다. 그 대표적 사례는 롤즈의 『정의론: 공정성으로서의 정의(1971)』과 『정치적 자유주의(1993)』에 이은 『만민법(1999)』, 스켈론의 ‘합당한 거부불가능성(reasonable unrejectability)’으로서의 도덕성 개념, 베리의 “불편부당성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impartiality)” 그리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과 “합리적 담론” 등을 통해 전지구적 차원의 법과 평화의 유지관점에서 정의를 주제로 전개된 논의들이 주목될 수 있다.

14) 맑스 사상의 발전과정과 연관된 주제로는 철학, 종교, 국가와 법률의 비판에서 마침내 정치경제학 비판에로의 단절이 아닌 해방적 발전과정이 주목될 수 있다. 용어 해방(Emanzipation)은 로마법에서는 우선 노예의 석방(e-mancipium)을 의미했고, 이후엔 가부장적 지배로부터 성장한 자녀의 출가와 관련된 업무에도 사용했다. 이후 중세 시기의 해방 개념은 개인의 종교 활동에만 전반적으로 주목하다가 근대 이후에야 비로소 정신적·종교적인 의미와 더불어 법적이며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주목되었으며 후견, 불이익 혹은 부당함으로부터 집단적인 단체, 신분, 계급의 부자유나 억압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미하게 되었다. 오늘날엔 농어민, 시민, 프롤레타리아트, 인종, 여성, 소수자 등의 다층적 해방운동이 미성숙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계몽과정을 통해 출현하며 혁명적 자유, 평등, 형제애 및 정의를 기반으로 공적 업무에 대한 공동결정권의 보장과 보편적 인권의 관철을 위해 대변되고 있다. 참고. M. Greiffenhagen, Artikel <Emanzipation>, in: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 2, 448-9쪽.

15) “그러므로 상품형태의 신비성은, 상품형태가 인간 자신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노동생산물 자체의 물적 성격[물건들의 사회적인 자연적 속성]으로 보이게 하며, 따라서 총 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관계[즉, 물건들의 사회적 관계]로 보이게 한다는 사실에 있을 뿐이다. …… 거기에서는 인간 두뇌의 산물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가진 자립적인 인물로 등장해 그들 자신의 사이 그리고 인간과의 사이에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품세계에서는 인간 손의 산물들이 그와 같이 등장한다. 이것을 나는 물신 숭배(fetishism)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되자마자 거기에 부착되며, 따라서 상품생산과 분리 될 수 없다.” K. Marx, MEW23, 86-7쪽.

치증식만을 목표로 삼는 자본이 화폐로부터 탄생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착취와 수탈이란 모순을 유발하게 되는지가 주목된다. 최초의 자본은 화폐(G)라는 상품(W)의 현상 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된다. 맑스는 단순한 상품유통의 형태인 'W-G-W'와 달리 자본으로서의 화폐는 'G-W-G'의 일반적 정식의 형태로 나타남을 주목한다. 비록 양자는 'G-W'와 'W-G'라는 판매와 구매의 두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G-W-G'에서 처음의 G와 마지막의 G가 같게 된다면, 이 과정은 유통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 즉, 이 유통은 'W-G-W'에서 보여줄 양 극의 상품(W)의 교환가치는 같더라도 사용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즉 질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유통이 이루어진 반면에, 'G-W-G'에선 양 극의 화폐(G)가 양적으로 변화하면서 유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과정의 더욱 정확한 형태는 G-W-G'이고, 이 때 $G' = G + \Delta G$, 즉 처음 투하된 화폐액+일정 증가분이 되는 것이다. 이 증가분 [또는 처음의 가치 이상의 초과분]을 맑스는 “잉여가치(Mehrwert)”¹⁶⁾라고 부른다.

이처럼 유통과정에서 G는 양적으로 증식된 G'가 되고, 이러한 유통과정에서의 G가 자본이라 불리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 유통과정의 주체인 화폐소유자, 즉 자본가는 이런 가치증식의 담당자이며, 이러한 과정의 목적은 바로 자본의 자기증식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으로서의 화폐유통은 '상업 자본'만의 고유한 형태가 아니라, 산업자본과 대부업을 망라한 모든 자본의 일반적 형태이기도 하며 G'는 다시 G''를 낳고 이는 다시 G'''를 낳는 무한운동을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맑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이러한 운동의 결과가 종국엔 위기의 극복이 아닌 공황이란 또 다른 이름의 위기를 초래함과 지속적으론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의 법칙'으로 인한 신용의 붕괴로 자신의 진단을 제시한다. 더불어 그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파괴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방식으로 코뮌주의를 통한 지구촌의 공생관계로 재조직을 시도한다. 무엇보다도 가라타니 고진의 지적처럼 G-W-G'의 마지막 단계에서 오늘날 소비자들인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국지적 한계를 넘어 “프롤레타리아는 잃을 것이라곤 쇠사슬밖에 없다. 그들은 하나의 세계를 획득해야만 한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¹⁷⁾란 운동강령적인 수사학적 구호를 보편적인 코뮌주의란 목적의 왕국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야말로 잉여가치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장소이며, 소비자의 의지에 종속당하는 유일한 장소”¹⁸⁾임을 주목해야한다.

이제 글로벌 총자본의 지배가 양산하는 위기현안들로부터 벗어날 해방의 탈출구의 디딤돌은 지구인 모두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진보의 결실에 대한 공생(共生)의 터전을 확장하기 위한 합당한 권위(Authority)체인 연대적이며 지속가능한 연방적-세계공화국의 실현(현실적 대안으로 UN개혁과 안전보장이사회의 비토권의 대륙배분 및 민주적인 총회 권한의 확장을 둘러싼 개혁)과 더불어 결핍과 희소성으로 인한 갈등의 최소예방책인 “전지구적 기본소득(Globales Grundeinkommen)의 도입”¹⁹⁾ 등과 같이 개인의 책임과 의무 및 초국적 기구의 권능과 활동

16) K. Marx, MEW23, 165쪽.

17) K. Marx, MEW4, 493쪽.

18) 가라타니 고진/송태욱 옮김, 『트랜스크리틱이란 무엇인가』, 53쪽.

19) 임경석, 「글로벌 기본소득」, 263-268쪽.

을 병행하는 가운데 지구인 모두의 지속적인 규범적 자기반성과 혁명적 실천의지의 상보성에
서만 개선안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미래학자들에게 ‘앤데믹 이후에 과연 어떤 재앙들이 도래할 것인지 예측해 보라’²⁰⁾고
질문해보면, 서슴없이 ‘인간 대 환경과 생태’, ‘자본 대 노동’ 간의 모순적 대립문제가 지속적
으로 출현함을 손꼽을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시의적절한 진단과 예방의 출발점을 미루지 않
고 소수만의 배타적 독점이나 이득의 수용을 관망이 아닌 지구촌 인류의 공생원칙을 우선적으
로 채택하기 위한 열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인류의 공생을 위협하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도 합당한 합의도출은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기술의 응용 분야를 현실인식과 연관해 떠
올려보자. 주지하다시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 분야의
육성에 주력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술경쟁의 동상이몽의 현실은 지구촌의 탄소배출을 줄이
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의 수용이란 공통목표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치적이며 경제적
인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수소에너지와 전기에너지 분야 간에도 국익을 둘러싼 이익충돌이
극단적 치킨게임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예상케 만든다. 이 결과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
생원칙도 언제든 자본이나 국익의 편파성에 희생될 것이란 불 보듯 뻔한 위기 사태의 연장선
을 진행시킬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구촌의 공생을 위한 지구인 모두의 최소한의 협력
원칙의 권위적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강제적 원칙의 준수가 실천되어야 하는 초국적 권위의 정
당성을 창조해야 할 시기임을 자각해야 한다.

1) 정치철학은 기후나 팬데믹처럼 지구촌의 주요 위기의 현안문제에 대한 인류 공동과제의 평
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²¹⁾

2) 다만, 해결책의 합의과정은 다원주의적 인정투쟁이란 관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칸트의 평
화사상을 롤즈가 제시한 ‘정의의 두 가지 원칙들’처럼 보편적·축차적 서열의 원칙 제시란 목표

20) 출처. <https://chat.openai.com/c/bd19f1a5-de56-43b9-bfde-ce7e9ae47041>

동일한 질문을 Chat-GPT에게 묻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앤데믹(전염병 대유행) 이
후에는 다양한 사회, 경제 및 환경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측은 어려울 수 있
으며, 결과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앤데믹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예측적인 재앙
요소들입니다: 1) 사회적·정치적 불안정성: 앤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와 인구의 반응은 예측하
기 어렵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영향: 앤데믹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됩니다. 3) 경제적 어려움: 비즈니스 폐쇄, 실업, 경제 위기 등 앤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
니다. 4) 교육 시스템의 영향: 학교 폐쇄와 원격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
육 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5) 환경 문제: 앤데믹 기간 동안 일부 환경적 영향이 감소했을 수 있
지만, 경제 회복과 함께 환경 부담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감염병 리스크: 다른 전염병
과의 재유행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7) 인프라
및 보건 시스템 강화: 앤데믹을 통해 보건 시스템과 공공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를 강
화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023. 09. 28일 5시 20분)

21) 우리는 코로나-19의 사태나 환경재해처럼 비극적인 위기상황을 지구촌의 어떤 동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생명과 안전의 ‘불운(unfortune)’으로 취급하려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역으로
나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억압되고 침해당할 수 있다란 ‘역지사지’의 응용도덕적 감수성과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원인과 수혜자에 대한 진단과 해소를 위한 정당성의 합의란 관점에서 이러한 의제를
정치철학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처럼 상대주의적 현실정치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규범적 정당성의 제시란 난관의 타개책에 대한 지속적인 주목이 요구된다.

3) 아울러 현존하는 위기현안의 극복과정에서 여러 차례 노정되어 온 것처럼 공생해법의 실천과정의 출발점은 최소수혜자의 피해 예방에 ‘우선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정치적 결단과 합의가 정당한 권위로 인정되는 상위조직을 만들고 여기서 강압적 권위의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 이 권위의 정당성은 맑스가 추구한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²²⁾ 결사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점검되어야 한다.

3. 결론을 대신하며

시·공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우리 시대가 직면한 위기의 극복과 공생이란 신인류의 도전과제는 인류가 이룩해 온 역사적 번영의 성과와 결실을 보다 자유롭고 균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세계체제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정당성의 합의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특히 지구촌의 환경이나 생태 위기의 극복 과제는 더 이상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닌 인류생존의 실천과제와 직결시켜 추진해야만 한다. 이에 지구인 모두가 “보조성의 원칙(Das Prinzip der Subsidiarität)”²³⁾을 주목하고 상상공동체인 민족국가들 간에 드러난 부, 자원, 환경, 젠더, 인종, 문화, 종교 등에 기반을 둔 다차원적 벽을 단계적으로 허물고 포용과 관용의 미덕을 발휘하여 모두의 공유지인 지구를 함께 돌보고 미래의 세대들도 주목하는 ‘세대 간의 정의’란 공생적 사고전환의 확장이 요청된다. 이 출발점은 지속가능한 공생 역량을 파괴하는 이익의 독점과 가언명령이 지배하는 상대적 현실체제의 파괴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칸트의 보편적 정언명령인 평화공동체의 구성과 함께 현실적 폐해로부터 출산의 고통을 단축하기 위해 어떤 해방적 실천방안을 결합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한 맑스의 정치철학의 거듭되는 탄생의 지속과정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22) MEW: 19, 21쪽.

23) 현재 전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국가들 간의 대립과 반목이란 투쟁 상태와 관련해 향후 미래 세대를 위한 인류의 번영과 평화의 구축을 위한 우리 세대의 과제 앞에서 개별국가의 이익 혹은 지역적 이기주의의 편협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조성의 원리가 주목할 기본사상은 아래와 같다. 정치적인 상위단위는 가능한 최소국가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하며 그 상위단위의 긍정적 목표달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단계적으로 아래로부터 위로 상승하는 정치적 여론수렴의 우선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상위단위 공동체는 결코 정당한 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임경석, 「글로벌 기본소득」, 269-275쪽.

<참고문헌>

- <https://www.un.org/en/global-issues/ending-poverty>
<https://chat.openai.com/c/bd19f1a5-de56-43b9-bfde-ce7e9ae47041>
임경석(2011), 「글로벌 기본소득」, <시대와철학> 제22권 4호.
가라타니 고진/송태욱 옮김(2011), 『트랜스크리티컬이란 무엇인가』, 한길사.
박영숙·제롬 글렌 지음(2015), 『유엔미래보고서 2045』, 교보문고.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류제승 역(2020), 『전쟁론(Vom Kriege)』, 책세상.
Aristoteles(1994), 『Metaphysik』, Hamburg: Rowohlt Taschenbuch.
Kant, I.(1971). 『Kritik der reinen Vernunft』. hrsg. von Raymund Schmidt. Hamburg: Felix Meiner Verlag.
Kant, I.(1983), 『Der Streit der Fakultäten』, Hrsg. von Wilhelm Weischedel, Bd. 9. Darmstadt.
Kant, I.(1983), 『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Hrsg. von Wilhelm Weischedel, Bd. 9. Darmstadt.
Marx, K., 『Brief aus den "Deutsch-Französischen Jahrbüchern"』, in: MEW1, 337-346.
Marx, K. /Engels, F.,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in: MEW4, 459-493.
Marx, K., 『Kritik des Gothaer Programms』, in: MEW 19, S. 19-32.
Marx, K., 『Das Kapital I.』, in: MEW 23.
Platon.(1971). 『Theaitetos』. Bd. VI., übers. v. Fr. D. E. Schleiermacher, hrsg. von Günther Eigler.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Ritter, Joachim/Gründer, Karlfried(Hrsg.). (1971-2004).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 2 & 4, Basel-Stuttgart: Schwabe & Co. AG·Verlag·Basel.

千葉眞 Shin CHIBA
(國際基督教大學名譽教授)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들어가며

(1) 기존의 민주정치에 도전하는 포퓰리즘

21세기 초 세계정치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포퓰리즘이 기존 민주정치의 대안으로서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출현한 것이다. 이런 포퓰리즘의 자기 주장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기존 민주정치(대표제 민주주의와 정당제를 포함)의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와 동시에 주권자인 「인민」(people)에게 권력을 되돌려주자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¹. 하지만, 포퓰리즘의 이러한 자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메리카의 트럼프 정치를 봐도, 그리고 유럽 각국 포퓰리스트 정당의 약진을 봐도,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포퓰리즘이 민주정치에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현대 포퓰리즘의 출현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미 상당한 역사가 있다. 또한 포퓰리즘 연구는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미 사반세기 정도 축적되어 왔다. 이처럼 포퓰리즘 연구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덧붙이기란 어려우며, 논의도 이미 이루어질 만큼은 이루어진 감이 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정면으로 내걸고 논의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지만 금년도 한일정치사상학회 교류의 당초 테마를 보고, 이 시점에서 포퓰리즘과 데모크라시 문제에 관해 필자 나름의 생각과 감촉을 정리해두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테마로 삼기로 했다.

초기 포퓰리즘 연구에서는, 포퓰리즘 안에서 보통 사람들에게 의한 「인민의 정치」를 발견해서는, 이를 막다른 길에 처한 대표정치의 현실을 타파하여 대표제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킬 기폭제라고 높게 평가하는 식의 논의가 주류를 점했다. 가령 요시다 토오루吉田徹는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 문제에 접근한 바 있는데, 자극적인 저작『포퓰리즘을 생각하다—민주주의 재입문』ポピュリズムを考える—民主主義への再入門(2011년)을 통해,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고유의 것」이라 지적하면서, 당시 포퓰리즘에 걸었던 기대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포퓰리즘을 반민주주의적이라거나, 혹은 민주주의가 불충분하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¹ Cf., Margaret Canovan, "Populism for Political Theorists,"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Vol. 9. No. 3 (2004), p. 244.

것은 잘못이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가 진전되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존재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².

이 저작이 나온 지 벌써 10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다. 우리들은 그동안 미국에서 벌어진 트럼프 선풍을 상세히 관찰했고, 그 데마고기^{demagogy}와 분극화를 선동하는 정치 스타일을 목격할 수 있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말년인 2020년 11월에 얼마 전 치러진 차기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이의 신청을 했고, 지지자들에게 캐피톨 힐^{Capitol Hill}에 있는 의사당을 점거하도록 부추기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리고 2021년 1월 6일, 4명의 사망자를 낸 의사당 습격사건이 일어났다. 한편 유럽 각국에서는 2010년대에 포퓰리즘 정당이 다수 출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령, EU 이탈리아(2016년)이 결정된 국민투표에서 「영국 독립당」이 거둔 성공과 이후의 급격한 몰락은 아직도 기억에 새롭다. 그리고 네오 파시즘 정당으로 시작한 프랑스의 「국민전선」(FN)은, 1972년 창당 이래 당수 장 마리 르펜의 지도 하에서, 배외주의와 반유대주의, 그리고 치안강화를 주장하여 그 지지자를 늘렸다. 2011년 이후로는 셋째 딸 마린 르펜이 당수직을 이어받아, 당명을 「국민연합」(RN)으로 바꾸고 예전보다는 다소 국회를 중시하는 온건 노선으로 전향했다. 그 밖에, 2013년 설립되어 아직 신생정당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도, 반EU·반이민·반이슬람을 표방하면서도 최근에는 국회를 중시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 시리자」(SYRIZA)는 2004년 국회의원선거 직전에 결성되었는데, 젊은 제2대 당수 알렉시스 치프라스의 지도 하에 긴축재정 반대와 EU와의 끈질긴 교섭을 당론으로 내걸고, 2012년 5월 총선거에서 제2당으로 약진한 바 있다. 그리고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는 2011년 결성된 포퓰리스트 정당인데, 사회주의 입장에서 기존 정당의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불평등에 항의하고, 자유·평등·우애를 강조하는 식의 정책으로 약진을 거듭했다. 이처럼 포퓰리즘의 운동양상·성격·이데올로기는, 각국 저마다의 정세와 정치문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상이하고 다양한 포퓰리스트 운동을 **현대적 포퓰리즘**(역자: 강조는 원저자. 이하동일)이란 하나의 용어로 묶어 인식하고 정의하는 접근법은, 이론적 엄밀함과 지적인 명석함을 결여한 것이라는 지적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³.

(2) 현대 포퓰리즘의 기본적 특징

현대 포퓰리즘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 구체적 특징들이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렇게 많은 포퓰리즘 연구에서 공통

² 요시다 토오루吉田徹『포퓰리즘을 생각하다—민주주의 재입문』ポピュリズムを考える—民主主義への再入門(NHK출판NHK出版, 2011년), p.14, 104.

³ E.g., Pierre Rosanvallon, *Le siècle du populisme: Histoire, théorie, critique* (Paris : Éditions du Seuil, 2020), pp. 1-2.

분모로 지적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①기존 지배체제(establishment), 기성정당, 정치가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과 비판, ②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표제(국회)와 정당이란 매개 없이 직접 「인민」에게 호소한다는 정치 스타일, ③카리스마적 인물의 지도 하에 일반 대중과 사회에게 정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정치수법, ④미디어나 SNS 등을 통해 넓게 그리고 즉각적·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선전하는 정치적 접근법, ⑤이데올로기 색채는 비교적 옅은 경우가 많으며, 가변적이고 절조 없는 경향이 있다는 점, ⑥특히 배외주의적(nativist) 형태로 잘 나타나는 특징으로, 그 정치주장에 데마고기(허위정보나 비방증상에 의한 선동) 경향이 있다는 점인데, 이는 그 자체로 「포스트 진실」이란 시대 풍조를 반영하는 정치수법이기도 하다. ⑦이것도 특히 배외주의적 형태로 잘 드러나는 특징인데, 1980년대의 「아이덴티티 폴리티क्स」(마이클 케니)⁴와도 유사하게, 자기 집단 vs. 적 집단이란 형태로 분단화/분극화/分極化하는 정치 스타일이 그것이다. 이상이 앞에서 언급한 포퓰리즘의 공통적 특징들이다. 여기서 ⑥과 ⑦의 정치수법은, 토의·숙의 같은 리버럴리즘의 전통과는 다른 비리버럴리즘(illiberalism)적 경향이라 할 수 있으며, 법의 지배, 권력분립, 억제와 균형 같은 입헌정치의 원칙·정신과 종종 충돌한다.

뭉뚱그려 말하기는 했지만, 이상과 같은 특징과 경향이 현대 포퓰리즘에 흔히 보이는 공통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점들은 과거의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역사적 포퓰리즘, 특히 단명으로 끝난 1890년대 미국의 혁신주의적 포퓰리즘 운동과는, 그 수단은 물론, 내용과 성격 면에서도 커다란 간극을 보여준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다원적인 사회를 지향한다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그것도 대중사회 상황 하에 있는)에서는 불가피하게 출현할 수밖에 없는 정치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안-베르너 뮐러가, 포퓰리즘을 민주주의—특히 대표정치—to에 따라붙는 「영속적인 그림자」(permanent shadow)로 표현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⁵. 특히 요즘 같은 「포스트 진실의 시대」에, 포퓰리즘은 민주정치가 불가피하고도 지속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위협이며 위기이다. 그렇지만 포퓰리즘은, 민주정치를 짊어진 보통 사람들인 「인민」에게 호소함과 동시에, 그 「인민」을 정치주체로 인식한다. 이러한 한에서 포퓰리즘은, 종래의 참여민주주의를 활기차게 하여 소생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은, 한편으로는 데모크라시를 활성화

⁴ E.g., Michael Kenny, *The Politics of Identity: Liberal Political Theory and the Dilemmas of Difference* (Cambridge: Polity Press, 2004). 후지와라 타카시(藤原孝・야마다 류사쿠(山田竜作 외 공역 『아이덴티티의 정치학』 アイデンティティの政治学 (일본경제평론사日本經濟評論社, 2005년).

⁵ Jan-Werner Müller, *What Is Populis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6), p. 101. 이타바시 타쿠미(板橋拓己 역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ポピュリズムとは何か(이와나미 서점岩波書店, 2017년), p.123.

화시킬 희망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현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포폴리즘이란 수원水源을 현대의 참여민주주의 회로에 흐르게 하여, 데모크라시를 활성화시킬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I. 1890년대 미국의 포폴리즘

역사상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폴리즘으로서, 흔히 다음 세 가지 사례를 꼽는 경우가 많다. 그 첫번째 사례는, 러시아에서 18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일어났고, 소농과 미르(농촌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인텔리겐차가 주도했던 나로드니키 주의다. 이 운동은, 미르를 거점으로 삼아 차리즘tsarizm 지배를 타도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어났지만, 보수적인 러시아 농민을 움직이지 못해서 좌절로 끝났다. 그리고 두번째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등장한 후안 페론(Juan Domingo Perón) 정권의 포폴리즘이다. 이 페로니즘은, 노동자 계급의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개선에 크게 기여했으며, 노동문제에 정통한 관리들의 후원과 부인 에바 페론(에비타)의 국민적 인기에 힘입어, 기본적으로 노동자층의 권리를 옹호하고 여성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구했다. 하지만 페로니즘은, 이후 페론의 카리스마성이 마이너스로 작용하여 정책의 권위주의적 색채만이 두드러진 결과, 1970년대에 들어와 몰락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신의 에르네스토 라클라우Ernesto Laclau가 그 청소년 시절에, 자신의 최초의 정치적 경험이라 할 페로니즘에게서 압도적 영향을 받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⁶.

그러나 이 글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 싶은 것은, 세번째 사례인 1890년대 미국의 포폴리즘이다. 이 포폴리즘 운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제퍼슨적 공화주의(Jeffersonian republicanism)—구(區, ward)에서 군(郡, county), 그리고 주(州, state)로 단계적으로 쌓아 올리는 공화주의—나폴뿌리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띤 잭슨적 데모크라시(Jacksonian democracy)와 연동하는 측면이 있었다⁷. 그리고 이 운동은 현대 혁신적 포폴리즘의 역사적 선구—원조 혹은 뿌리—로도 주목을 받는다. 이러한 개혁지향 포폴리즘은 미국 중서부·남부·서부의 여러 주에서 발생했고, 미국 최초의 제3당인 「인민당」(People's Party) 결성으로도 이어졌다. 이 혁신적 포폴리스트 운동은, 이후 20세기 초 혁신주의의 시대로 계승되었고, 나아가 우드로 윌슨 대통령(임기: 1913-1921)에 의한 일련의 개혁들, 그리고 프랭클린·D·루즈벨트(FDR) 대통령이 1929

⁶ E.g., Simon Critchley and Oliver Marchart, "Introduction," in *Laclau: A Critical Reader*, eds. Simon Critchley and Oliver Marchar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4), pp. 1-2.

⁷ Cf., Ernesto Laclau, *On Populist Reason*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5), pp. 203-204. 사와사토 타케시澤里岳史·카와무라 이치로河村一郎 공역(야마모토 케이山本圭 해설) 『포폴리즘의 이성』ポピュリズムの理性 (아카시 서점明石書店, 2018년), pp.270-271.

년 발생한 「대공황」으로 침몰하던 미국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주도한 뉴딜정책으로 결실을 보게 되는 측면이 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발생한 포퓰리즘의 주역은 「인민」(people)이었다. 이들은 평범한 민중들로, 대부분 농업 종사자에 공장 노동자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통화通貨 민주화, 토지 재분배, 철도·전신전화·우편시스템의 국유화, 은화폐의 무제한 주조 등을 요구했다⁸. 1970년대 무렵까지 미국에서 포퓰리즘이란 말은, 일반국민과 일부 정치학자 사이에서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또한 그렇게 인식된 측면이 있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19세기 말 포퓰리스트 운동의 플러스적인 유산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민당」은 1892년 네브라스카주 오마하Omaha에서 창당되었는데, 이는 제3의 정당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었다. 창당 시에 채택된 「오마하 강령」(1892년 7월 4일)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전략) 부패는 투표함과 주의회, 연방의회를 뒤덮었고, 이제 판사의 법복에까지 스며들고 있다. 인민은 의기소침해 있다. (중략) 대부분의 신문은 매수되었거나 입막음 당한 상태에 있다. 여론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기업은 피폐했고 집은 저당 잡혀 있으며, 노동자는 빈궁에 신음하고 토지는 자본가 손에 집중되어 있다. (중략)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의 거대한 부를 쌓을 목적으로, 몇 백만의 사람들이 노력한 성과를 대담하게 도둑질하고 있다. (중략) 우리들은, 이 나라에서 압제·부정·빈궁을 최종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정부의 권력, 바꾸어 말하자면 인민의 권력이, 현명한 인민의 양식과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허용하는 한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⁹.

앞에서 언급했던 경제·사회·정치상의 여러 난제들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윌리엄 맥킨리와 「인민당」이 추천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대결한 1896년 대통령 선거 시기에 특히 쟁점이 되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선거에서 맥킨리가 근소하게나마 승리를 거두면서, 정치상황은 일변했다. 동부와 북부에 기반을 둔 상업계층, 비즈니스계, 금융=은행업계가 선도

⁸ E.g., *ibid.*, pp. 201-202. 일본어판, pp.258-

269. Cas Mudde and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Popu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 22-24. 나가이 다이스케永井大輔·타카야마 유지高山裕二 공역 『포퓰리즘—데모크라시의 적이자 친구』ポピュリズム—デモクラシーの敵と友 (하쿠스이샤白水社, 2018년), pp. 39-41. 미즈시마 지로永島治郎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민주주의의 적인가, 개혁의 희망인가』ポピュリズムとは何か—民主主義の敵か、改革の希望か(쥬코 신서中公新書, 2016년), pp. 9-11, 30-34.

⁹ 역사학연구회歴史学研究会 편 『세계사 자료7 남북 아메리카—선주민의 세계부터 19세기까지』世界史資料7 南北アメリカ—先住民の世界から一九世紀まで(이와나미 서점岩波書店, 2008년), p. 266.

하여 「승리한 새 정치」를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로 「인민」의 정치로서의 민주주의에 걸었던 기대감은 사라지고, 공적인 관심보다 사적인 생활에의 침잠과 폐색, 정치에 대한 체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인민당」은 점차 영향력을 잃어갔고, 국민규모의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1908년 「민주당」에 흡수되어 소멸했다. 이처럼 포퓰리스트 운동은 단명으로 끝났다. 안-베르너 뮐러는, 19세기 말 미국에서의 포퓰리즘이 단명에 그친 이유로, 역사적으로 불가피했다고 여겨진 근대화에 대한 반동이란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¹⁰. 확실히 그런 측면은 있었다. 그렇지만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 운동이 내포한 인민주의에는 혁신적(progressive) 데모크라시라는 요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20세기 「혁신주의의 시대」(the era of Progressivism), 그리고 대공황에 종지부를 찍은 FDR의 복지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말 미국 포퓰리즘에 관한 로렌스 굿윈의 고찰과 분석(*The Populist Moment*, 1978)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주제를 다룬 고전이라 불리기에 손색없는 역작이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사회에는 크게 보아 세 개의 계층이 존재했다. 그 첫째는, 남부·중서부·서부를 중심으로 널리 거주하고 있었으며, 인구도 가장 많았던 농민층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도시노동자층, 마지막 셋째가 동부·북부에 거점을 둔 상업=비즈니스 조직과 금융=은행업계였다. 이들 세 집단 혹은 조직은, 서로 대립·긴장 관계를 내포하면서도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890년대에 발발한 「농민층의 반란」은, 빈궁과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던 농민층을 중심으로, 여기에 도시 노동자 계층도 가세하여 일어난, 미국 역사상 최대·최강의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 반란에서 보이는 대립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려 했던 보통의 민초인 「인민」과, 미국 산업사회를 근대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지배적 경제세력이 충돌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대다수의 힘없고 보잘것 없는 인민」과, 당시의 철도업계, 거대금융=은행업계, 강력한 소유자 계급이 충돌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 포퓰리스트 운동이 힘을 얻게 된 것은, 기성 지배체제가 「부패」로 가득 차 있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대 정당 중심의 권력 중추와 상업사회를 좌우하던 여러 거대 조직들 사이에는 후견주의(clientelism)적 관계가 강화되어 있었고, 이름만 남은 「민주정치」는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인민」의 일상적 삶에서 너무 멀어진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인민」들은, 자신의 「주권」을 점점 더 빼앗기던 당시 상황에 커다란 소외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역경 속에서, 정치주체로서의 「인민」 개념은, 19세기 말 당시에 이미 미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시기 많은 이들이 「인민의 운동」 그 자체를, 진보주의 개혁의 원동력, 나아가서는 혁신적 민주정치의 추진력

¹⁰ Müller, op. cit., pp. 18-19. 일본어판, pp. 25-26.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¹¹.

그리고 일상의 일과 삶에서도, 사람들은 공장 등 열악한 노동환경, 10시간에서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피폐해 있었다. 당시는, 일가 모두가 생활비 벌이에 나서야 하는 가정이 많았고, 여성과 아동들도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했다. 「아동노동규제법」을 제정하는 움직임이 이 시대(1890년대)에 시작되었고, 대우와 노동조건 면에서 조금씩 개선이 이루어져, 1912년에야 아동노동 금지와 8시간 노동 등에 관한 입법이 충분히 실현되었다. 이처럼 이제까지 언급한 미국 포퓰리즘 운동의 목표는, 농민과 노동자층의 일상적 노동과 삶, 그리고 사회 전반의 경제·사회적 기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또한 1890년 제정된 고율보호관세법(맥킨리 관세)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당시 많은 농민과 노동자가 떠안게 된 거액의 부채의 면제를 요청하는 것이었으며, 나아가서는 철도 등 공공기관의 국유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굿윈은 19세기 말 미국 포퓰리즘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포퓰리즘을 승리의 모멘트라 볼 수는 없겠지만, 민주주의적 약속의 모멘트라고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은 200만 명의 행동으로 평등주의적 희망을 표명했고, (중략) 그것은 부서지기 쉬웠지만, 그럼에도 자율적 데모크라시의 생활 가능성을 열었다. 이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 포퓰리즘의 내실은 「인민당」의 정치강령으로 실체화된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포퓰리즘의 본질은, (중략) 인민이 자유의 관념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는 주장이다. 미국의 포퓰리즘은, 그 근본에서 볼 때, 데모크라시가 작동하는 가운데 정치 생활이란 것이 본디 어떤 것일 수 있는지를 증명하려는 시도였다. 「농민동맹의 우애」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에 응답하고자 노력하는 시도였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스트들이 20세기를 위해 남긴 유산이다」¹².

II. 포퓰리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1) 상탈 무폐의 「좌파 포퓰리즘」론

래디컬 데모크라시와 포퓰리즘의 친화성 문제는, 래디컬 데모크라시를 주창한 라클라우나

¹¹ Lawrence Goodwyn, *The Populist Moment: A Short History of the Agrarian Revolt in Ame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4, 172. Cf., Rosanvallon, op. cit., pp. 125-128.

¹² Goodwyn, op. cit., pp. 295-296. 19세기 말 미국 포퓰리즘에 대한 재평가를 다룬 또 하나의 중요한 저작으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Michael Kazin, *The Populist Persuasion: An American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1995), Introduction, especially pp. 5-6 and Chapter 2, pp. 29-46.

무페 이외에 다른 포퓰리즘 연구자들도 일부 지적하고 있다. 이 때 포퓰리즘이란 당연히 혁신적 포퓰리즘, 즉 이들이 이야기하는 「좌파 포퓰리즘」이며, 반면에 「우파 포퓰리즘」은 통상 그와 정반대인 반反민주주의라 인식된다. 라클라우는 『포퓰리즘의 이성』(*On Populist Reason*, 2005) 서문에서, 이렇게 인식되는 「우파 포퓰리즘」과 구별되는 「포퓰리즘」(혁신적 포퓰리즘)을 기각한다면, 결국 「정치 그 자체를 기각하는 셈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포퓰리즘」은 항상 「합리적 공동체」라는 잘 만들어진 틀을 의문시하는 「위험한 과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³.

포퓰리즘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라클라우의 저서를 포함하는 다른 여러 저작(*Politics and Ideology in Marxist Theory: Capitalism, Fascism, Populism*, 1977 등)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논의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 중 상탈 무페가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For a Left Populism*, 2018)에서 진행한 논의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 책의 모티프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위기 vs. 「포퓰리스트 모멘트」이며, 후자는 앞에서 언급한 19세기 말 포퓰리스트 운동을 다룬 굿윈의 명저 제목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무페의 출발점은 라클라우와의 공저로 유명해진 『민주주의의 혁명』(*Hegemony and the Socialist Strategy*, 1985, second edition 2001)이며, 하나 더 들자면, 앞에서 언급한 라클라우의 저작 『포퓰리즘의 이성』이다.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에서 무페는, 「포스트 데모크라시」 시대에 맞서기 위해 어떤 종류의 포퓰리즘이 필요한지 이론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무페는, 민주주의의 근원화根源化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좌파 포퓰리즘」을 래디컬 데모크라시를 가동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페의 「좌파 포퓰리즘」론은, 이론적·실천적인 과제로서, 「민주주의적 등가성」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근원화라는 래디컬 데모크라시의 과제를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상황은 이러한 이론적 과제를 실현하기 힘든 현실에 둘러싸여 있다. 오늘날 민주정치의 현실은, 탈정치화, 인민의 정치적 냉담apathy과 무관심,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의 석권 등으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물론 무페의 논의는 귀중한 제언을 많이 담고 있다. 가령 래디컬 데모크라시와 에콜로지ecology를 절합articulation하자는 논의는 특히나 중요하다¹⁴.

라클라우와 무페는, 앞서 언급한 자신들의 저작 『민주주의의 혁명』에서 한 가지 도전에 나서는데, 그것은 당시 좌파정치와 전통적 좌파정당이 저지르고 있던 시대착오와 사회적 유

¹³ Laclau, *On Populist Reason*, p. x. 일본어판, pp. 12-13.

¹⁴ Chantal Mouffe, *For a Left Populism* (London, Verso, 2018), pp. 52, 61, 64. 상탈 무페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左派ポピュリズムのために (야마모토 케이山本圭・시오타 준塩田潤 공역, 아카시 서점明石書店, 2019년), p. 75, pp. 84-85, p. 88.

의성有意性 결여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마르크스주의적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 역사와 사회, 계급사관과 공산주의에 관련된 온갖 「결정론」과 「신화」에 대한 비판이 중요한 문제제기로 꼽힌다¹⁵. 그리고 이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민주주의의 근원화로서의 사회주의 프로젝트, 노동조합 운동 등 종래의 사회운동과 현대의 새롭고 다양한 사회운동(에콜로지 운동, 페미니즘 운동, 탈원전 운동, 탈탄소사회 요구 운동 등을 포함) 사이에 「등가성의 연쇄」를 구축하자는 것이고, 나아가 「포퓰리스트 모멘트」를 탐구하자는 것이다¹⁶.

이와 관련해서, 무페는 「제3의 길」 노선(앤서니 기든스, 토니 블레어, 스튜어트 홀)을 거세게 비판한다. 그 이유는, 「제3의 길」이란 결국 새롭게 대두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에 다가선다는 선택이었고, 그 결과 「포스트 데모크라시」 상황(콜린 크라우치Colin Crouch) 그리고 「포스트 정치」 상황에 가담하게 되어 버렸다고 무페가 인식했기 때문이다¹⁷. 이러한 상황에 맞서 무페는, 라클라우와 함께 정치의 「투기」(鬪技, agon)적 모멘트와 「적대성」(antagonism)을 회복하고자, 「래디컬하고 복수複數주의적인 데모크라시」의 헤게모니 구축을 모색해 왔다. 이런 점 때문에 「어떤 종류의 포퓰리즘인가」라는 문제를 긴급한 과제로서 받

¹⁵ Ibid., pp. 1-3. 일본어판, pp. 12-15.

¹⁶ Ibid., pp. 2-3, 39-57. 일본어판 pp. 14-15, pp. 60-80. Cf., Laclau and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second edition, pp. vii-xix, 91-194. 니시나가 료西永亮・치바 신千葉眞 공역 『민주주의의 혁명』 民主主義の革命 (치쿠마 학예문고ちくま学芸文庫, 2012년), pp. 9-35, pp. 215-418. 그리고 윌리엄 코놀리는, 「등가성의 연쇄」 구축이 자기자신의 「차이를 횡단하는 집합적 결합」과 「가족적 유사類似」(비트겐슈타인)를 보여주고 있다고 적고 있다. Cf., William E. Connolly, “The Ethos of Democratization,” in *Laclau: A Critical Reader*, eds. Critchley and Marchart, pp. 167-168.

¹⁷ Mouffe, *For a Left Populism*, pp. 4-19. 일본어판, pp. 15-32. 그렇기는 해도 「포스트 정치」에 대한 무페의 비판은, 무페가 『정치적인 것에 관하여』 政治的なものについて(2005년)을 출간한 시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무페가 의미하는 「포스트 정치」란, 「대항자」—반드시 「적」일 필요는 없다—와의 「투기」(agon) 없는 정치, 적대성이 결여된 정치를 말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치를 「아군과 적의 구별」로 이해하는 칼 슈미트적인—이보다 약간 색채는 연하지만—무페의 사고방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무페는 특히 기든스와 블레어의 「제3의 길」 제창을 「포스트 정치」의 일례로 보아 비판한다. Chantal Mouffe, *On the Political*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pp. 4-7, 56-63, 107-109. 사카이 타카시酒井隆史 감수・시노하라 마사타케篠原雅武 역 『정치적인 것에 관하여』 政治的なものについて(아카시 서점明石書店, 2008년), pp. 15-19, 86-91, 157-159.

아들였던 것이다¹⁸.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좌파 포퓰리즘」이다. 젊은 시절부터 마르크스주의자, 그람시적 마르크스주의자,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로 자신을 형성해 온 이들로서는, 그리고 「적대성」을 정치적인 것의 중추에 두는 이들로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노르베르토 보비오Norberto Bobbio에게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고, 자신들의 그람시적 마르크스주의, 래디컬 데모크라시의 과제와 담론을 자유민주주의와 「절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무페의 경우, 래디컬 데모크라시 프로젝트가, 앞서 말했듯이, 에콜로지적인 것과 사회문제를 「절합」하는 것도 요청하고 있음을 강조한다¹⁹. 무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에콜로지 문제를 검토 과제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근원화한다는 프로젝트를 상상할 수 없다」²⁰.

무페의 지적에 따르자면,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미국의 버니 샌더스와 그 지지자들의 운동은, 「포퓰리스트 모멘트」의 특징적 요소를 얼마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무페는 이런 「포퓰리스트 모멘트」를, 앞서 말한 1891년 미국에서 설립된 「인민당」과 이를 설립한 보통 인민들에 의한 데모크라시 강화를 지향하던 운동의 현대적 재현이라 받아들이는 듯하다²¹. 무페가 지향하는 것은, 현대세계를 석권중인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의 헤게모니에 대해서, 이러한 「포퓰리스트 모멘트」를 활성화하여 데모크라시를 심화시키는 것이고, 또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를 향해 새로운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것이라 이해해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2) 「배외적 포퓰리즘」(nativist populism) vs. 「혁신적 포퓰리즘」(progressive populism)이라는 대립도식

그런데 필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라클라우와 무페가 그람시적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라는 본인들의 입장 때문에 「좌파 포퓰리즘」에 전념하게 된 경위와 이유에 관해서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방금 언급한 논의의 전제가 되는 「좌파 포퓰리즘」이란 명칭에 대해서는, 막연하기는 하지만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본 논문이 중시하는 19세기 말 미국 포퓰리즘의 경우, 이를 좌익 내지 좌파적 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말한 제퍼슨적 공화주의, 잭슨적 민주주의 계보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 역사적으로 적절하다

¹⁸ Mouffe, *For a Left Populism*, pp. 5-7. 일본어판, pp. 17-19.

¹⁹ Ibid., pp. 52-57, 61-64. 일본어판, pp. 75-80, 84-88.

²⁰ Ibid., pp. 61. 일본어판, p. 84.

²¹ Ibid., pp. 66-68, 79-93. 일본어판, pp. 90-93, 106-113.

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18세기 후기 및 19세기 전반 미국정치의 계보, 나아가서는 19세기 말의 포퓰리즘까지도, 오늘날의 용어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참여민주주의」의 범주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래디컬 데모크라시 중에는, 셸든 월린(Sheldon Wolin)의 경우처럼 사회민주주의에 공감하면서도, 미국 고유의 풀뿌리 참여민주주의 전통을 따르는 것도 있다. 따라서 「혁신적 포퓰리즘」(progressive populism) 쪽이, 「좌파 포퓰리즘」보다 넓은 사정거리와 귀속영역을 가지며, 후자도 그 안에 포함하고, 정치문화가 상이한 다양한 지역(region)과 나라의 현실도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다 적절한 호칭이라고 생각한다²². 다만 라클라우와 무페는, 같은 래디컬 데모크라시란 용어를 쓴다 해도 앞서 말한 것처럼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좌익 vs. 우익, 좌파 vs. 우파라는 대립도식을 버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들에게 이런 대립과 구별은, 해당 사회가 품고 있는 프론티어(경계)로도 사회적 균열로도 가시화될 수 있는 기본적 시좌視座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포퓰리즘에 관한 논의에서 또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내용이 어떠한 지, 정당인지 아니면 개별 정치인과 그 지지집단인지, 향의운동인지 아니면 반대운동인지, 이러한 차이들을 감안하지 않고, 미디어나 SNS 등의 전달수단을 정치적 주장에 이용하거나, 연설이나 정치적 소신을 표명할 때 어떤 스타일을 보이거나, 아니면 큰 집회의 분위기를 띄우거나 향의활동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쓰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떤 일정한 표준에 합치하면, 이 모두가 포퓰리즘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럴 경우,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운동 방법이나 스타일을 공통적으로 지니곤 한다. ①대표제에 대한 회의감이 전제가 되어 있으며, 기존 정당이나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에게 호소하는 수법, ②보통 시민, 인민의 입장에서 기성 지배권력이나 정치 엘리트를 비판하는 정치운동, ③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존재, ④자신들(올바른 진영) vs. 적대자(그렇지 못한 진영)라는 도덕화 경향, ⑤감정이나 격정에 호소하는 점 등이 이상의 공통점들이다. 물론, 그 정치적 목표나 이데올로기, 정치상의 가치관, 정치적 수단으로 폭력이나 폭언을 허용하는가 여부 등을 놓고, 이런 운동들은 종종 아주 대조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조는 자주 경시된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선풍, 버니 샌더스, 프라우드 보이즈

²² 필자는, 이처럼 「좌익(좌파)」 vs. 「우익(우파)」라는 도식은 그렇게 간단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좌파 포퓰리즘」이란 호칭에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도, 프랑스의 정치이론가 피에르 로장발롱 역시 「좌파 포퓰리즘」이란 용어에 마찬가지로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을 발견했다. Cf., Rosanvallon, op. cit., pp. 1-2. 그리고 이 글에는 「좌파 포퓰리즘」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이론가로, 라클라우와 무페 이외에 웬디 브라운, 낸시 프레이저의 이름도 거명되고 있었다. 필자는 이들의 저서를 오랫동안 읽어 왔음에도 그다지 의식하지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확실히 로장발롱의 지적대로이다.

Proud Boys, 월스트리트 점령운동, Q어년QAnon, BLM 운동 등이 「포퓰리즘」이란 명칭 하에 동일한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버린다²³. 유럽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유로, 프랑스 「국민전선」(FN: Front National) 당수를 역임(1972-2011)한 장 마리 르펜, 오스트리아의 외르크 하이더Jörg Haider, 헝가리의 오르반Orbán Viktor,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스페인의 「포데모스」, 영국 「노동당」의 코빈Jeremy Corbyn 등이 모두 「포퓰리즘」으로 한데 묶여 버리게 된다. 이는 지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며 명석함도 결여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우파 포퓰리즘」과 「좌파 포퓰리즘」을 구별한다고 해서 해소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이외에도 포퓰리즘과 데모크라시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일부 포퓰리즘—특히 배외적 포퓰리즘(가령 장 마리 르펜 당수 시대의 「국민전선」, 그리고 네오 나치를 자칭하며 1980년대부터 2008년 급작스럽게 사망하기 전까지 이민 배척을 기본 정책으로 삼았던 오스트리아 하이더의 배외주의적 정치 등)—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④자신들(올바른 진영) vs. 적대자(그렇지 못한 진영)이란 도덕화 경향이, 국내의 분단화나 분극화를 선동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문제이다. 특히 배외적 포퓰리즘의 경우, 「아이덴티티 폴리틱스」와 「데마고기」가 얹혀 있는데, 그 결과 이런 허위정보나 유언비어 때문에 자신들과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는 집단, 가령 다른 인종, 외국인, 이민, 난민, 이슬람 교도 등이 적대시되고, 직접적 폭언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래서는 대화나 교섭, 타협의 여지가 사라지며, 정치적 해결 가능성도 닫혀 버린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런 배외적 포퓰리즘이나 비자유주의적(illiberal) 포

²³ 많은 논자들이, 월스트리트 점령운동, BLM운동,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의 운동은 포퓰리즘이란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말한다. 확실히 이들 운동은 보통 사람들—인민(people)로 불려도 무방하다—이 주도하는 운동이며, 그 스타일도 포퓰리스트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이란 이름으로 이들 운동 모두를 하나로 묶어 부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 운동은 오히려 앞서 말한 미국의 혁신적 포퓰리즘의 적통이라 이해하는 편이 보다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이들 운동을 현대적 포퓰리즘의 사례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일종의 오독이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들을 혁신적 민주주의의 풀뿌리 운동이 표출된 것이며, 참여민주주의의 현재적 발로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한편, 월스트리트 점령운동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고노이 이쿠오五野井郁夫『「데모」란 무엇인가—변모하는 직접민주주의』「デモ」とは何か——変貌する直接民主主義 (NHK북스NHKブックス, 2012년). 버니 샌더스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이 도움이 된다. Bernie Sanders, *Our Revolution* (New York: Thomas Dunne Books, 2016). 야마자키 노조무山崎望는, 「BLM」운동에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전반 미국에서 일어난 공민권 운동의 후계라는 일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의 지적에 찬동한다. 야마자키 노조무「자유민주주의와 BLM/우파운동」自由民主主義とBLM/右派運動 (야마자키 노조무 편 『민주주의에 미래는 있는가?』民主主義に未来はあるのか?, 호세이 대학출판국法政大学出版局, 2022년, p.269. 주5).

폴리즘의 경우, 민주정치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위험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데 모크라시의 규범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배외적 포폴리즘」(nativist populism) vs. 「혁신적 포폴리즘」(progressive (or innovative) populism)의 구별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배외적 포폴리즘」은 처음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현실에서 포폴리즘은, 모든 정치 사상事象이 그러하듯 **날것의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보존되지 않으며 부패하기도 쉽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반전과 전개도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배외적 포폴리즘」이든 「혁신적 포폴리즘」이든 간에, 그것이 지속성을 갖고자 한다면 의회정치와 타협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

(3) 포폴리스트 정당과 의회정치의 안 좋은 상성

이상의 논의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보이듯, 극단적인 배외주의 입장에서 출발한 포폴리스트 정당이, 시간이 흐르고 당수도 바뀌면서, 점차 그 급진주의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가령, 방금 언급한 프랑스 「국민전선」(FN)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는데, 당수가 장 마리 르펜에서 그 삼녀인 마린 르펜으로 바뀌고, 2018년에는 당명도 「국민연합」(RN: Rassemblement National)으로 바뀌었다. 마린은, 그 부친 시절의 반유태주의를 다소 완화하고 임신중절을 용인했으며, 반글로벌리즘과 반이슬람주의로 노선을 틀어 국민연합 약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여, 이 중 후자의 결선투표에서는 무려 1000만표(득표율은 33.90%로 제2위)를 획득하여, 세계를 전율하게 한 바 있다. 이렇게 약진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국민연합이 대표제나 의회제에 본래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으로서 생존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회정치를 중시하고 유권자에게 다가가 여러가지로 수정·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배외주의 이데올로기를 상당히 완화시킨 것이 컸다고 보인다.

1980년대 후반 이후가 되면, 방금 언급한 프랑스의 「국민전선」 이외에도 이탈리아의 「국민동맹」과 「북부동맹」, 벨기에의 「플람스 연합」 Vlaams Blok 등, 이른바 신흥 「극우정당」이 유럽 일부 국가에서 출현한다. 외르크 하이드의 「오스트리아 자유당」(FPÖ/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은, 1999년 오스트리아 제2당이 될 정도로 약진하여 가장 성공한 포폴리스트 정당이라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당내에서 하이드가 보여준 독재적 태도, 거친 민족지상주의, 외국인 배척, 인종주의 등으로, 자유당은 늘 당내 분열에 시달렸고 연립을 구성할 다른 정당과도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이 점이 후퇴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 자유당은 해산에 이은 소멸로 내몰린다. 이러한 경위와 경험을 통해서, 유럽 각국의 배외주의 포폴리스트 정당들은, 자신이 원내 정당으로 남기 위해서는 종래의 과격한 주장을 완화하고, 다른 여러 정당들과 타협·조화를 꾀하기 위해 온건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2010년대 독일에서는 새로운 포폴리스트 정당으로서, 종래 과격했던 포폴리스트 정당들보

다 다소 온건 성향의 포퓰리스트 정당이 출현했는데, 2013년 2월에 설립된 「독일을 위한 대안」(AfD/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당은 탈脫유로와 독일 마르크화 부활을 주장하며, 경제·채무위기를 겪던 그리스에 독일이 거액의 지원을 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는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안」은 옛 동독 지역에 속한 여러 주에서 의석을 늘렸으며, 2015년 당수 선거에서 당의 설립자인 베르트 루케Bernd Lucke가 보다 강경 우파노선인 프라우케 페트리Frauke Petry에게 패한 결과, 이민과 난민 유입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자세로 임한다는 정책을 채용했다. 그 결과, 2017년 9월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크게 약진했고, 94개의 의석을 얻어 제1야당으로 부상했다. 이후 「대안」은 자신이 「극우정당」이라는 지적,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이 이민배척·난민배제·인종차별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오히려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민과 난민수용에 대한 반대·유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고도 끈질기게 설명을 시도했다²⁴. 이 정당의 국회의원과 지지집단에는 고학력자들도 많은데, 이 점에서 볼 때 「대안」은, 유럽 각국의 배외주의 포퓰리즘이 남긴 마이너스 유산과 과거 의회정치의 교훈에서 많은 것을 배운 정당이라 볼 수 있겠다. 과거 전체주의 테러의 참화를 경험했고, 전후에는 자유주의·입헌주의·민주주의 이념이 국민의식 속에 뿌리내린 독일에서, 「대안」은 배외적 포퓰리즘으로는 거의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자각했을 것이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유럽에서 배외적 포퓰리즘은 어쩔 수 없이 의회정치와의 타협을 통해 완화된 결과, 내셔널리즘 내지는 보수적 포퓰리즘이란 다소 온건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혁신적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주목받은 그리스의 「시리자」(2004년 설립)와 스페인의 「포데모스」 역시, 등장 당시와 현재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설립 당시 순전한 혁신주의 입장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내 의사결정 과정을 점차 톱다운 방식으로 바꾸었고, 정당정치·의회정치와 대응·타협하면서 점차 혁신적 색채를 완화시킨 바 있다. 먼저 「시리자」에 관해 살펴보겠다. 이 정당은 2009년 젊은 당수 알렉시스 치프라스의 등장과 함께, 내정 면에서 복지·빈곤구제·환경보호를 주장하고, 외교 면에서는 반反유럽연합·유로를 주장하며 약진했다. 그 결과 2015년 1월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되었으며, 소수파인 신흥 내셔널리즘 포퓰리스트 정당 「독립 그리스인」과 연립정권을 구성해서 반反긴축을 추진하려

²⁴ 이타바시 타쿠미는, AfD가 「메르켈의 장기집권이 낳은 「괴물」」이라 말한다. 메르켈 집권 하에서, 보수당인 「기독교 민주동맹」(CDU)은 이른바 「사회민주주의화」되었는데, 유권자들이 이에 반발한 것이 하나의 이유라는 것이다. 그리고 메르켈의 관용적 난민정책으로 「대량의 난민이 유입」된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AfD가 득표수를 키웠다고도 지적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이타바시 타쿠미板橋拓己 「현대 독일의 우익 포퓰리즘」現代ドイツの右翼ポピュリズム (야마자키 노조무山崎望 편 『민주주의에 미래는 있는가?』民主主義に未来はあるのか?, pp. 180-182.

했다. 그러나 이 연립으로 당내는 분열되었고, EU와의 교섭도 난항 끝에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2019년 7월과 2023년 6월 총선거에서 「시리자」는 연이어 상당한 의석을 잃었고, 정치적 영향력도 크게 줄었다. 결국 치프라스는 당수직 사임을 표명했다. 이런 역사적 경위를 보면, 혁신주의를 지향하던 정당이 현실정치의 거센 풍랑에 휩쓸리는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라클라우식 포퓰리즘론의 영향을 받은 당수 파블로 이글레시아스Pablo Iglesias 같은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2011년 무렵부터 활동을 시작한 포퓰리스트 정당이다. 이들은 미디어나 SNS 활용,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공개토론 등 새로운 수법을 사용하여, 반反기득권, 공적채무 반환거부, 반反긴축재정을 골자로 한 운동을 전개했다. 2014년 5월 유럽의회 의원선거에서, 「포데모스」는 득표율 8%에 54의석 중 5개의 의석을 획득하여 스페인 제4당이 되었고, 신흥정당으로 일약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2015년 12월 총선거에서는 득표율 기준 제3당으로 올라섰다. 이들은 당면 정책목표로서 공공교육 개선, 부패방지 대책, 공적의료 개선 등을 내걸었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에 대항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후 2016년 6월 총선거 재선에서 「통일좌익」과 연합을 꾸린 결과, 당 안팎에서 반대와 비판이 나와 이전 총선보다 100만표를 잃었다. 이는 포퓰리스트 전략이 실패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나카지마 아키코中島晶子는, 「시리자」와 「포데모스」의 초기 약진과 이후의 침체를 분석하면서, 「인민」의 아이덴티티와 의지가 동일하다는 포퓰리스트 정치의 전제와, 정당정치나 의회정치에서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다원성과 차이라는 현실 사이의 긴장관계가, 포퓰리즘에는 어떤 형태로든 따라붙기 마련이라고 논했다. 그리고 이점이 포퓰리스트 정당이 곤란과 침체를 겪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지적한다²⁵.

III. 맺음말을 대신하며—데모크라시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1) 포퓰리즘과 참여민주주의

한편 C. 뮤데Mudde와 C. R. 칼트바세Kaltwasser는 유명한 자신들의 공저 속에서, 포퓰리즘은 데모크라시에 있어 희망인 동시에 위협이라고 지적한다²⁶. 이 점은 이미 본 보고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전제로 삼기도 했던 논점이다. 포퓰리즘이 래디컬 데모크라시의 과제와 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은, 「인민」(people)을 민주주의의 정치주체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²⁵ 나카지마 아키코中島晶子 「좌익 포퓰리즘이라는 환상—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과 스페인의 포데모스」 左翼ポピュリズムという幻影—ギリシアの急進左派連合とスペインのポデモス (『연보 정치학』 年報政治学 67 권(2), 2016년), pp.159-160.

²⁶ Mudde and Kaltwasser, op. cit., pp. 79-86. 일본어판, pp. 122-128.

그리고 이제껏 「소리 없는 인민」(voiceless people), 「침묵하는 다수자」(silent majority)로 불렸던 사람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정치 참가를 촉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정치에서 배제되어 주변으로 밀려난 집단이나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정치적 발언과 관여를 촉구한다는 점은, 포퓰리즘의 지극히 중요한 기능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참여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점이며, 민주주의 심화,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촉구한다는 래디컬 데모크라시의 요구와 일치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포퓰리즘은 대표제와 정치 엘리트를 가차없이 비판하는 반면, 포퓰리스트 지도자와 그 운동을 칭찬하고 국민투표(레퍼런덤)를 유달리 중시한다.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는 포퓰리즘의 이러한 경향에 심히 비판적인데, 포퓰리즘이 흔히 부채질하는 폭언과 폭주로 인해 억제와 균형, 법의 지배, 정치권력을 둘러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조차 파괴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포퓰리즘은 온갖 다양성과 차이를 거부하며, 권위주의, 이민배척, 규범 파괴를 불러오는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²⁷.

이 보고의 결론으로서, 여기에서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중요성에 관해 확인해 두고자 한다. 포퓰리즘을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민주주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참여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에 관해서는 상당한 연구의 축적이 있다. 오늘날의 참여민주주의는, C. B. 맥퍼슨(Macpherson), 시노하라 하지메(篠原一), 캐롤 패이트먼(Carol Pateman), 벤자민 바버(Benjamin Barber) 등의 이론적 성과에 크게 의거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한나 아렌트, 위르겐 하버마스, 셸던 월린(Sheldon Wolin) 등의 활동, 그리고 공공성, 커뮤니케이션 행위, 정치적인 것, 참가와 연대를 중시하는 정치이론들과도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참여민주주의를 기본방침으로 내세우는 정당의 출현이 급무라는 맥퍼슨의 제언은 오늘날에도 중요하다²⁸. 오늘날의 중요한 이론적 과제 중 하나는, 참여민주주의 논의 안으로 포퓰리즘의 담론과 실천을 그것과 잘 들어맞게끔 끼워 넣는 작업일 것이다.

²⁷ Larry Diamond 『침식되는 민주주의』 侵食される民主主義 상권(이치하라 마이코市原麻衣子 감수, 케이소 서방勁草書房, 2022년), pp. 79-84, 97-102.

²⁸ 야마모토 케이(山本圭)는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중요성을 충분히 평가하는 한편으로, 그것이 지닌 완성주의(perfectionism) 지향을 문제시하고 있다. 즉, 참여에 무관심한 사람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쉽다는 문제이다. 야마모토 케이 『수상한 사람들의 데모크라시—라클라우의 정치사상』 不審者のデモクラシー——ラクラウの政治思想 (이와나미 서점岩波書店, 2016년), pp. 190-194. 야마모토 케이 『현대민주주의—지도자론에서 숙의, 포퓰리즘까지』 現代民主主義—指導者論から熟議、ポピュリズムまで (추코 신서中公新書, 2021년), pp. 99-134.

이렇게 참여민주주의를 활용하여 포퓰리즘에 적절한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째는, 비록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현행 위임형 대표제를 보다 확실한 신탁형 대표제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투표, 즉 선거로 뽑은 대표자에게 다음 선거까지 국정을 위임하는 방법을 채택해 왔다. 이것이 위임형 대표제이며, 달리 흡스식 수권형授權型 내지는 권위부여형 대표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민주주의적 정통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대표제는, 정권 담당자가 그 위임된 기간 동안 자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렇게 될 경우, 정치불신과 「관객 민주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나 피트킨Hanna Pitkin은 일찍이 『대표의 개념』(*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1967)을 저술하여, 이 위임형 대표제론을 비판함과 동시에 책임 인수형引受型 대표제를 제창한 바 있다. 이는 인민의 「신탁적 권력」에 의거한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논한 로크와도 통하는 것이며, 오늘날의 「accountability」 논의와도 근저에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은, 이미 서술한 것처럼 분단화 선동 같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정체된 대표제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참여민주주의와 통하는 면도 지니고 있다²⁹.

두번째로 언급할 방법은, 이것도 원래는 참여민주주의론에서 나온 개념인데, 숙의熟議 민주주의 내지는 심의審議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혹은 토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를 보다 중시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상과 같은 개념에 소규모 공론장mini-publics론이나 타운미팅town meeting론도 덧붙여져, 이를 둘러싼 논의는 한층 더 확충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하버마스 등이 논하는 민주주의 「복선複線 모델」, 즉 공공영역 [특히 소규모 공론장] 과 의회 양쪽에서의 「2회로형回路型」 숙의 민주주의이다. 하버마스 등이 이런 제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대표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밑으로부터의 참가와 민의의 인풋input이 필수적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었다. 이는 의회 등 제도화되고 포괄한 심의 프로세스와, 시민사회에서의 자발적이고 인포멀한 숙의 프로세스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의회내부(원내)와 의회외부(원외)에서의 민의 형성을 위한 적극적 순환을 촉구하기 위한 제언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표제와 인민의 정치참가와 협동은, 데모크라시의 제도적 차원과 비제도적 차원을 어떻게 「절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대중소비사회가 탈정치화와 고립화 경향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세계로부터 「나의 문제」, 「나의 정치」를, 어떻게 하면 배타적 내셔널리즘이나 배외주의 포퓰리즘이 아니라, 데모크라시의 회로에 접속시킬 수 있을지 하는 문제이다³⁰. 포퓰리즘의 즉각적이고도

²⁹ 치바 신千葉眞 『자본주의・데모크라시・에콜로지』 資本主義・デモクラシー・エコロジー (치쿠마 선서 筑摩選書, 2022년), pp. 111-112.

³⁰ 위의 책, pp. 211-

극약적인 효능과 비교할 때, 숙의 민주주의라는 방책은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없고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도 걸린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실하게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냉소주의(cynicism)의 시대와 데모크라시

1989년 중·동유럽 각국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별다른 폭력 없이 이루어졌고, 그 유포리아 Euphoria는 한 때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이로부터 30년 남짓 지난 현재, 보이는 것은 정치에 대한 환멸과 실망뿐이며, 그 결과 **냉소주의라는 요괴**가 전 세계를 배회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국토와 인프라, 시가지와 마을에서는 끝없는 파괴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전의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금년 10월 7일에는 팔레스티나의 테러 집단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군이 즉각 거센 반격을 시작하여, 현재 가자 북부를 중심으로 제노사이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제5차 중동전쟁 발발을 우려할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한편 각국의 국내정치로 시선을 돌려보면, 구미 각국과 일본 등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대표제나 정당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으며, 그 결과 민주정치의 안정성이 훼손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의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최근 20년 정도, 다들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일본 역시 어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특징은 「최소참가사회」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³¹.

매튜 플린더스는, 모국인 영국의 정치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지역의 정치를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현재 정치에 대한 「환멸」은 「정치를 증오하는」 태도로 증폭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파생된 「냉소주의」는 정치에 필요한 건전한 「회의주의」(skepticism)와는 아주 다르다고 말이다³². 플린더스의 주장에서 경청할 가치가 있는 부분은, 한편에서 시민들

212. Cf., Nadia Urbinati, *Representative Democracy: Principles and Genealogy*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223-228. 시노하라 하지메篠原一 『시민의 정치학—토의 데모크라시란 무엇인가』 市民の政治学——討議デモクラシーとは何か (이와나미 신서岩波新書, 2004년). 타무라 테츠키田村哲樹 『숙의의 이유—민주주의의 정치이론』 熟議の理由——民主主義の政治理論 (케이소 서방勁草書房, 2008년). 타무라 테츠키 『숙의 민주주의의 곤란』 熟議民主主義の困難 (나카니시야 출판ナカニシヤ出版, 2017년). 우노 시게키宇野重樹 『<나> 시대의 데모크라시』 <私>時代のデモクラシー (이와나미 신서, 2010년).

³¹ 카바시마 이쿠오蒲島郁夫, 사카이야 시로境家史郎 『정치참가론』 政治参加論 (도쿄대학 출판회東京大学出版会, 2020년), p. 208.

³² Matthew Flinders, *Defending Politics: why democracy matters in the twentieth-first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1-11. 타케다 히로코武田宏子 번역 『그래도 정치를 옹호한다—데모크라시가

이 민주정치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품는 것은 잘못이고, 통치가 복잡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버나드 크릭Bernard Crick이 오래전에 저서 『정치를 옹호함』(*In Defence of Politics*, 1962)에서 주장한 것처럼, 과도한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대담하게 정치를 옹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한 점이다³³. 크릭은 이에 관해 실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과도한 기대를 걸도록 유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비현실적 이상에 대한 환멸은 자유로운 정치에 항상 따라붙는 위험이다」³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연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민주정치의 성과를 파괴하려 하는 사람들로부터 정치를 옹호하는 것이며, 정치를 냉정하고 현실주의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정치는 원래 악이라는 설」을 거부하고, 정치에 대한 과도한 비관주의와 냉소주의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³⁵. 이러한 지적은, 정치적 냉소주의가 사람들의 마음—각국의 일반인들과 연구자, 정치가를 포함한다—속에서 날뛰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유익하다고 보인다. 사람들은 민주정치에 대해서, 사정이야 어찌 됐든 통상적인 정치가 해줄 수 있는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정치라는 것은 좀처럼 컨트롤하기 어려우며,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한 치 앞은 칠흑 같은 어둠처럼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인민들은 유독 민주주의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기대의 갭gap」—이상과 현실의 갭이라 바꿔 말해도 무방하다—이 항상 존재하며, 이것이 우리들을 둘러싼 정치의 **꾸미지 않은 현실**이다. 포폴리즘 하에서 쉽게 양성되는 무질서는 이런 현실 중 하나인데, 이는 본래 「인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여야 할 민주정치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이다. 이렇게 보면, 플린더스도 언급한 바 있는 라인홀드 니부어 Reinhold Niebuhr의 초기작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1932)는, 라인홀드가 지닌 Christian realism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말 그대로 이상과 같은 「기대의 갭」이 초래하는 함정을 정면에서 다룬 저작이라 볼 수도 있다. 니부어는 이 책에서, 개인의 도덕성이나 이성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미국사회의 이상주의, 자유주의, 낙관주의 문화와 지적 조류 때문에, 미국사회는 민주정치에 필요 이상의 기대를 거는 한편으로, 권력현상의 복잡함과 이론적 애매함, 그리고 각종 사회집단의 이기적 충동과 자기이익 추구라는 정치적 현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논한다. 니부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집단 속에서는,

중요한 이유』それでも政治を擁護する——デモクラシーが重要な理由 (호세이 대학출판국法政大学出版局), pp. 9-23.

³³ Ibid., pp. 62-63. 일본어판, pp. 101-102.

³⁴ Bernard Crick, *In Defence of Politics*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62), p. 65. (나중에 나온 페이지백 [Penguin Books]에서는 p. 70.)

³⁵ Flinders, op. cit., p. 3. 일본어판, pp. 11-12.

충동을 지도하고 억제해야 할 이성이 그다지 작동하지 않으며, (중략) 다른 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할 능력도 부족해진다. 그 결과 억제되지 않는 에고이즘이 인간사회에 나타나게 된다」³⁶.

포퓰리즘의 대두로 인해 우리는 데모크라시란 도대체 무엇인가, 데모크라시를 재생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질문은 언제나 중요했지만, 오늘날 다시금 그 의미를 숙고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된 것이다. 「데모크라시에서 진정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무엇일까? 물론 그 대답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포퓰리즘의 대두라는 이 글의 주제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해도,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이 대답들은 반드시 참신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오래된 대답을 현대화(up-to-date)하려는 시도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

「데모크라시에서 진정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첫번째 대답은, 자유·평등·우애(우애의 현재적 함의에는 연대, 공생, 예절이 포함된다), 그리고 행복추구의 정치다. 그리고 이는, 비록 「포스트 토대주의」 post-foundationalism적 관점이기는 하지만, 자유·평등·우애·행복추구를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며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정치사상사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연권」(자연적 올바름/natural right)이라 불렀던 것—으로 파악하는 공공적 삶의 방식(public way of life)이며 통치형태(form of government)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번째 대답은 「공통선」(common goods)의 추구다. 이와 같은 오늘날의 「기본적 인권」과 「공통선」 속에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필요(물과 식량 등)를 보장하는 「기초적 생존권」, 맹위를 떨치는 지구온난화로부터 지구의 생태계와 사람들의 거주환경을 보호하는 「환경적 생존권」, 세계인들에게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도 포함될 것이다³⁷.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데모크라시는, 자치체, 국가내부, 지역(가령 동아시아 등의 근린 국가들), 그리고 국제 레벨에서의 차이(differences)를 횡단하는 공통성(commonality)의 확보를 추구한다. 분단화와 분극화는 민주정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통치가 빠지기 쉬운 폐해이겠지만, 이런 폐해를 어떻게든 회피하고, vital한 「기본적 인권」 보장과 「공통선」 실현을 통해서 평화와 안전을 구축하고자 탐색하는 시도 역시 데모크라시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말

본 보고에서는 현대일본의 포퓰리즘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남북 아메리카

³⁶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2), pp. xi-xii.

³⁷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출처를 참조. 『연방주의와 코스모폴리타니즘—사상·운동·제도구상』 連邦主義とコスモポリタニズム——思想・運動・制度構想 (후코샤風行社, 2014년), p. 75.

대륙이나 유럽의 나라들과 비교할 때, 포퓰리즘 현상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인상이 존재한다. 예외적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수상을 지낸 코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의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을 거론한 중요 연구가 몇 개 있을 뿐이다. 그러나 코이즈미 정권의 경우, 정치가 코이즈미의 정치수법과 주장이 포퓰리스트적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지지하는 사회집단이나 운동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한 현재 일본에서는, 오사카부 지사大阪府知事와 오사카 시장을 역임한 하시모토 토오루橋下徹와 그가 주도한 정당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の 설립도 포퓰리즘 현상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하시모토는 2015년에 정치가를 은퇴했으며, 2022년 3월말에는 유신회 「고문」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현재 「일본유신회」는 야당 제2당 지위에 있으며, 포퓰리스트 정당의 특징도 얼마간 갖고 있다. 이를 포퓰리즘이란 관점에서 파악하는 연구가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 본다.

최형익 (韓信大学校)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지(大地)의 노모스’의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지(大地)의 노모스’의 위기

최형익/한신대학교(韓信大學校) 글로벌인재학부

1. 서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개전한지 일 년이 훌쩍 지나서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에서 벌어진 최초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9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전승기념일 연설은 흥미로운 내용을 포함한다. 푸틴은 짧은 전승절 연설을 통해 ‘문명’과 ‘전쟁’, 그리고 ‘신성한 조국의 영토’를 강조했다.¹⁾ 이 세 가지 용어는 칼 슈미트가 언급한 19세기 유럽 중심의 국제법, 곧 서구 열강이 창안한 대지의 노모스의 주요 내용을 함축한다. 이에 반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승기념일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서유럽의 전승기념일인 5월 8일을 유럽의 날로 선포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질서를 향한 상이한 대지의 노모스가 충돌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정치사상적 관점에서 이 전쟁이 표상하는 관심 가운데 하나는 전후 80년 가까운 시기 동안 세계전쟁 없이 평화를 지속해온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법을 계수함과 동시에 변화된 국제정치 현실을 반영한 21세기 평화를 향한 새로운 국제법 창설의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세계사적 위기 속에서 인류 최후의 날인 아마겟돈의 서막이 될 지 여부이다. 이 글은 전면전으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냉전과 탈냉전을 통해 형성된 20세기 국제법적 위기 상황을 칼 슈미트의 국제법 정치이론인 대지의 노모스 개념을 통해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2차 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20세기의 대지의 노모스인 자유주의적 국제법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임을 설명함으로써 전쟁의 평화적 종결이 공간질서로서의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 창설과 긴밀히 연관된 것임을 시론(試論)적 수준에서 논증한다.

2. 대지의 노모스의 탄생과 유럽공법의 국제법

지난 5월 전승절 기념일에 발표된 푸틴과 젤렌스키의 상반된 언급이 우크라이

1)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5532088>

나 전쟁을 규정하는 상징성을 잘 보여준다. 양국은 서로 다른 국제법적 공준, 곧 대지의 노모스에 기초하여 발언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압도적 승리로 조기에 종결될 것이라던 전쟁 초기의 전망과 달리 어느 일방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 채 장기화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외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방의 주권국이 타방의 주권국을 군사적으로 침공한 침략전쟁임에도 유엔 안보리는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이에 공동대처하는 국제연합 헌장 제1조에 근거한 집단안전보장을 발동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특수군사작전’이라는 미명 하에 국제연합 헌장 제51조에 근거하여 자위권 행사를 주장했다.²⁾ 이는 종전 이후 국제사회를 규율해온 공준(公準)이라 할 수 있었던 미국 주도의 전후 ‘대지의 노모스’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대지의 노모스』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1년 남짓의 수형생활 끝에 출간한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칼 슈미트 최후의 저작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특히, 전쟁과 평화의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에서 칼 슈미트는 ‘대지의 노모스’에다가 유럽 공법의 국제법에서 전개돼온 ‘정당한 전쟁’ 개념, 소위 정전론(正戰論)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다. 한마디로,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의 내용을 함축하는 국제법의 출현은 전쟁의 개념과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혈과 파괴라는 전쟁의 양상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전쟁을 해석하는 방식은 동 시대의 국제법적 전개양상, 곧 대지의 노모스 개념에 따라 새롭게 정치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지의 노모스’란 무엇인가? 이는 구체적 질서 창설 행위, 특히 국제정치적 수준에서의 질서 창설 행위를 의미한다. 사상사적 의미에서 칼 슈미트는 국제법에 대한 실증주의적 접근³⁾을 비판하면서, 국제법에 내재한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국제관계의 본질, 곧 세계사적 전환기에 도래하는 각각의 대지의 노모스를 해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슈미트는 유럽 열강이 16세기 이후부터 20세기까지의 시기에 걸쳐 전개한 지구 전체에 걸친 육지취득이라는 말의 국제법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이제까지의 유럽 국제법의 역사상의 기초

2) ‘No other option’: Excerpts of Putin’s speech declaring war | Russia-Ukraine war News | Al Jazeera(2022.2.24).

3) 국제법에 대한 실증주의적 접근이란 특정한 국제법이 성립하게 된 사상적 근원, 곧 법철학 내지 정치사상적 고찰을 포기하고 기존에 성립한 국제조약 또는 협약에서 국제법적 해석의 근거로 작용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원천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국제법의 주류적 접근법으로서의 실증주의적 방법은 존재하는 법의 규칙들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의 관습과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들에 나타나는 현존하고 승인된 국제법 규칙들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영석, 2023:15).

적인 사건 즉 신세계에 있어서의 육지취득을 법사학적, 법철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Schmitt, 1995[1950]:70)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슈미트는 노모스를 하나의 근원적 행위로 정의한다. 근원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노모스는 바로 “법률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법의 힘이 지니는 완전한 직접성”으로서 “창설적이며 역사적인 사건, 단순한 법률의 합법성을 처음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만드는 정당성의 행위”(1995[1950]:56), 곧 ‘정치적인 것’ 그 자체이다. 대지의 노모스, 곧 “모든 법의 커다란 원초적 행위(Ur-Akt)는 대지에 구속된 장소 확정 속에 존재”(1995[1950]:16)한다. 여기서 노모스의 의미가 따라나오는데, 모든 규준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측량, 최초의 공간분할과 분배로서의 최초의 육지취득, 원초적 분할과 원초적 분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바로 노모스이다.⁴⁾

“노모스라는 말은 그 근원적이며 공간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때, 기초를 형성하며 장소확정과 질서를 그 속에 통일시키는 과정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가장 적합한 용어이다”(1995[1950]:47).⁵⁾

노모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속에 이러한 부분에 나오는 노모스는 명확하게 근원적인 토지분배”(1995[1950]:49)로 나타나 있다. 노모스의 근원적 의미, 육지취득으로부터의 그것의 유래는 지금도 여전히 인식할 수 있으며, 여기서 구체적 질서와 장소확정의 내부적 척도, 곧 노모스의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장소확정과 질서 사이의 관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컨대, “모든 경우에

4) 문명과 야만, 소위 ‘문야(文野)구분’을 통해 칼 슈미트의 국제법 사상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리디아 류(Liu, 2022:83-84)는 노모스를 슈미트가 말한 측정과 통치 사이의 내재적 연관을 부각하기 위해 신조어인 규칙(規治)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규칙이 노모스의 ‘나누다/측정하다[規]’와 ‘통치[治]’라는 이중적인 함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노모스를 규칙으로 번역해서 부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노모스는 앞의 대지라는 말과 조응해서 함께 쓰여야 국제법적 맥락이 드러나고 이 용어를 통해 슈미트가 의도한 것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공법의 국제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모스만 따로 규칙으로 번역하는 것은 그 용어에 내포된 역사특수적인 의미를 탈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노모스를 원문 그대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여겨진다.

5) 슈미트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법학적인 사고 작업은 지리학과는 여전히 다른 어떤 것”이며, “법학자들은 사물과 토지에 대한 지식을, 부동산과 영토권에 관한 지식을 지리학자들로부터 습득한 것은 아니”(1995[1950]:6)라는 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노모스라는 용어의 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노모스는 ‘분할하는 것’과 ‘목양(牧養)하는 것’을 의미하는 네메인(nemein)으로부터 왔다. 따라서 노모스는, 그 속에서 한 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질서가 공간적으로 가시화되는 그러한 직접적인 형상(形像), 목초지에 대한 최초의 측량과 분할, 즉 육지의 취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지취득 속에 존재하고 있는 구체적 질서이다. 칸트의 말로는 ‘토지 위에서 내 것과 네 것을 분배하는 법률’이며, 적절한 표현인 또 다른 영어 단어로는 ‘근본적인 권리원천(radical title)’이다. 노모스는 대지의 토지를 특정 질서 속에서 분할하며 자리잡게 하는 척도이며, 그와 더불어 주어지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형상이다”(1995[1950]:52).

있어, 육지의 취득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그 이후의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권리의 원천”(1995[1950]:19)으로 작용한다. 노모스 개념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럽 공법 중심의 국제법의 성립과 그것의 토대인 ‘대지의 노모스’의 관계에 대해 슈미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지리상의 발견 이전의 모든 질서는 그러한 질서가 바다의 지배와 해양제국을 내포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육지적인 것이었다. 세계는 처음에는 육지적이었는데, 대지가 유럽 민족들의 전 세계적 의식에 의해 처음으로 파악되고 측량되게 된 지리상의 발견의 시대에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대지의 최초의 노모스도 등장했다. 대지의 최초의 노모스는 대륙의 공간질서와 자유해의 공간질서의 관계에 근거하며, 400년 동안 유럽 중심적인 국제법, 즉 유럽 공법을 떠받쳐왔다.”(1995[1950]:23).

유럽 중심의 세계질서를 떠받쳐온 국제법적 상황과 국제정치의 본질 역시 대지의 노모스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슈미트는 국제정치적 상황을 단순한 자연상태 또는 무정부주의로 규정하는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개진한다. 왜냐하면 유럽 공법에 기반한 국제법은 특정한 공간질서를 바탕으로 한 대지의 노모스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국가 상호간의 유럽 중심적인 새로운 질서를 담지(擔持)하는 실체로서의 주권국가의 등장이다. 이들 국가 간의 정치적 상호지배와 국제정치적 배열이 유럽이라는 공통의 대지 위에서 주권자들 사이에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공간질서를 탄생시켰다.

“유럽 대륙의 권력복합체들이 공동생활에 대하여 이러한 국가상호간적인 시대에 발달한, 구체적이며 실제적, 정치적인 형식들, 제도들, 관념들은 고유하며 그것 없이는 어떠한 국제법도 존재할 수 없는 대단히 실효적인 구속이 존재한다. 그것은 평등하게 주권적인 인격들이 지닌, 이른바 자유로운 상태로 존재하는 의지의 극히 모호한 자기구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든 주권자들을 포괄하는 유럽 중심적인 공간질서의 구속력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그 노모스의 핵심은 확고한 경계를 가진 국

가영역으로 유럽의 토지를 분할하는 데 있다. 곧 하나의 중요한 구별이 그와 결부된다. 그러한 구별이란, 승인된 유럽 국가들과 그 국가영역의 이러한 토지는 특별하고 국제법적인 토지지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토지는 ‘무주지(無主地, free land), 곧 유럽의 육지취득을 위하여 개방된 비유럽 군주들과 인민들의 토지와 구별된다. 그 밖에도 새로운, 이제까지의 국제법에 대하여는 이러한 형식으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대양의 자유의 결과 제3의 영역이 생겨난다. 그것이 바로 유럽 국가들의 세력균형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 공간구조이다. 그러한 공간구조는 특별한 종류의 자유를 지닌 거대한 개방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있는 유럽주권자들의 내부법을 가능하도록 한다”(1995[1950]:163).

유럽 중심의 국제법의 국제정치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인 전쟁의 성격 역시 크게 변화했다. 이른바, 정당한 적과 정당한 전쟁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종교전쟁과 내전 양자와 대립하여 새로운 유럽 국제법의 순수한 국가전쟁이 등장함으로, 당파들의 대립은 중화되게 되었고 또한 그들 통해 극복되게 되었다. 이제 전쟁은 ‘형식에 있어서의 전쟁’으로 전환했다. 실로 오로지 전쟁이 영역적으로 명확하게 경계 지어진 유럽 국가들 자체의 전쟁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공적인 인간으로 관념된, 곧 공통된 유럽의 토지 위에서 유럽 ‘가족’을 형성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간에 정당한 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공간적 통일체들 사이의 대결로 되었다(1995[1950]:153).

슈미트는 유럽이라는 구체적 공간질서에 기반한 국제법의 등장을 중대한 역사적 진전으로 간주한다.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유럽중심의 국제법은 정당한 적과 정당한 전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전쟁을 제한했고 세력균형을 통해 무제한의 파괴전쟁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본질상 파괴전이며 그 속에서는 적은 상호간에 범죄자와 해적으로서 차별화되는 종교전쟁, 당파전쟁의 야만성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합리화와 인도화를 의미한다. 평등한 권리에 대한 평등하게 국가적인 성격이 전쟁을 수행하는 양 당사자에게 당연히 귀속한다. 양 당사자는 서로를 국가로서 승인한다. 그럼으로써 적을 범죄자로부터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적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공식화할 수 있게 된다. 적은 ‘파괴되어야만’ 하는 어떤 것이기를 멈춘다. 반도(叛徒)와 적은 다르다. 그럼으로써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하여 유럽의 국제법에 있어서 국가개념의 도움으로 전쟁의 제한에 성공한 것이

다”(1995[1950]:154)

정당한 적이라는 관념은 법학적으로는 결코 더 이상 책임 문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당원인의 내용적 도덕적 문제를 의미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규범주의적 의미에서의 정당원인의 법학적 문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당한 전쟁, 곧 정전(正戰)만이 국제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제 “전쟁의 정당성은 더 이상 신학적, 도덕적 또는 법학적 규범의 특정 내용과의 일치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하며 동일한 차원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반역자나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정당한 적으로서 간주되는 정치적 구성체의 제도적이며 구조적인 특질 속에 존재”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전쟁의 권리는, 전쟁권의 담지자의 특질 속에만 전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특질은 상호간에 전쟁을 수행하는 동등한 권리를 지닌 주권자가 존재한다는 점 속에 존재하는 것”(1995[1950]:155)이다.

17세기부터 20세기의 국가상호간적 국제법에 있어서의 국제법적 질서를 무정부상태로 특징짓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전쟁의 형식을 지닌 모든 무력행사를 아무 구별 없이 무정부상태로 특징짓고 그렇게 특징짓는 것을 전쟁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에 대한 최종적 언어로 생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전쟁의 폐지가 아니라 전쟁의 제한이 유럽공법에 기초한 국제법의 고유한 성과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유럽국제법의 본질은 “전쟁의 제한”에 주어져 있었다.

“유럽에서 전쟁의 본질은 제한된 공간 내에서 증인들 앞에서 연출되는 질서지어진 힘의 측정이었다. 그러한 전쟁은 무질서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한 전쟁 속에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질서의 최고형식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전쟁은 점점 심해지는 보복의 악순환에 대한, 그 무의미한 목표가 상호간의 파괴에 존재하는 니힐리즘적인 증오의 행위와 복수 행위에 대한 유일한 보장책이다. 파괴전의 제거 또는 회피는 힘의 측정을 위한 하나의 형식이 발견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는 다시 상대가 동일한 차원의 적으로서, 즉 정당한 적으로서 승인됨으로써만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한에 의한 보호의 기초가 주어지는 것이다”(1995[1950]:218).

세력균형 개념 역시 유럽적 공간질서에 내재하는 것으로서 전쟁을 제한하고 유럽의 평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동의 공간과 포괄적인 공동의 공간질서가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제3자가 될 수 없다. 포괄적인 공간질서가 하나의 균형으로 관념되는 경우, 그러한 공간질서가

구속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곧바로 인식된다. 세력균형이라는 관념은 유럽 국가들의 포괄적인 공간질서를 표현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직접적인 조약 당사국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국들은 균형의 변경 또는 균형에 대한 위협을 통해 서로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19세기말에 이르기까지 유럽 열강들의 균형은 당연히 유럽국제법의 기초로서 그리고 유럽국제법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통용되었다.

“유럽 토지상의 승인된 공동의 공간질서는 유럽의 균형이라는 관념 속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유럽을 전쟁을 개시하는 자는 모든 유럽 열강들이 결과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균형이라고 하는 이념이 특별한 방식으로 공간적인 관점과 조화되었으며, 포괄적인 공간질서라는 사상이 그 속에서 명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정치적 남용에도 불구하고, 균형 관념 자체의 위대한 실제적 우월성은 그러한 점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점에, 전쟁의 제한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것의 능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1995[1950]:220-221).

칼 슈미트의 유럽공법 중심의 국제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대국(Great Power)에 대한 그의 독특한 정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강대국에 대한 규정을 통해 유럽 특수주의적 국제법이 해체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보편적 국제주의에 의거한 국제질서로 변동하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슈미트에 따르면 강대국, 특히 유럽 열강들은 그들에 의해서 지도되는 공간질서의 담지자 및 보증인으로서의 그들의 지위에 있어 모든 중요한 영역변경에 대하여 그들의 승인을 부여하는 존재였다. 특히, 새로운 강대국의 승인은 국제법상의 중요한 법제도였다.

“강대국으로서의 승인이 무엇보다도 먼저 공간질서에 관계된 것이며, 국제질서의 공간구조에 관계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강대국으로서의 승인 속에서 전쟁법과 정당한 적에 대한 승인이 그 가장 큰 의미를 부여받는다라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한 공간질서와 관련되는 하나의 이유에서도 그러하다. 강대국으로서의 승인은 육지취득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국제법 제도이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상호간적인 유럽법에서는 유럽의 회의와 유럽의 회의와 협상에 대한 참여권을 의미했다”(1995[1950]:224).

문제는 미국을 강대국으로 승인한 이후에 발생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1823년의 먼로주의에 표명되어 있는 미국의 대외정치의 원칙들은 근본적으로 유럽 강대국들이 표명한 것과 같은 모든 종류의 승인에 대한 거부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반구에 있어서의 경계선은 이미 전 세계적인 것으로서의 유럽의 특수한 공간질서에 대하여 논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내포했다”(1995[1950]:223).

실제로도 그랬다. 먼로독트린은 고립주의, 유럽정치에 대한 불개입, 비식민화 등 3대 원칙을 표명했는데, 이 시기를 전후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립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럽 중심의 국제법은 무주지에 대한 발견과 선점, 정복을 주권국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히 특수하게 유럽적인 것으로부터 일반적 보편적인 것으로의 공간결여성(缺如性), 즉 전승되어 온 특별한 유럽 국제법의 종말과 그에 의해 이뤄진 전쟁의 제한이 입각하고 있었던 모든 대지의 공간질서의 종식을 예정했다. 이를 증명하듯 윌슨은 국제평화가 먼로주의의 세계적 확산에 달려 있다고 설파했다.

“나는 모든 국가가 만장일치로 먼로 대통령의 독트린을 전세계의 독트린으로 채택해야만 한다고 제안합니다. 먼로독트린은 어떤 국가도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영역을 침범하여 국가를 넓히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하며(……)이후 모든 국가는 권력투쟁으로 이어질 동맹을 맺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Kissinger, 1994:224)

비유럽국가, 보다 정확하게 비(非)백인국가의 강대국으로 진입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일본의 강대국으로의 진입 사례가 특히 그러했다. 유럽 열강은 문명과 종교, 발견과 정복이라는 역사적 권리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등권적 가족형태의 등족(等族)질서를 형성했다. 국제질서의 형성자로서의 유럽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강력했나하는 것은 청일전쟁 이후 ‘만국공법’(Weaton, 2021[1864]:184)⁶⁾에 의거, 중국 요동반도 일대에 대한 정복권을 행사하려 한 일본의 시도를 독일, 러시아, 프랑스 세 나라가 협력해서 무력화한 삼국간섭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⁷⁾

6) 이 부분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title of almost all the nations of Europe to the territory now possessed by them, in that quarter of the world, was originally derived from conquest, which has been subsequently confirmed by long possession and international compacts, to which all the European States have successively become parties”(Weaton, 1936[1836]:201)

7) 삼국간섭 당시 일본이 처한 외교현실과 국제정치적 위상을 삼국간섭의 당사자인 독일, 러시아, 프랑스

슈미트에 따르면, 각종 교과서 속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일본에 대한 승인은 1904-1905년의 러일전쟁의 시기로도, 혹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1894년으로 그 시점이 잡혀 있다. 일본이 승리를 거둔 그 두 전쟁은 강대국이라고 하는, 국제법을 담지하고 있는 좁은 서클에 대한 가입을 위한 수용의 파티로 간주된다. 일본 스스로는 의화단 사건 이후 중국에 대해 강대국들이 징벌군을 파견하는 데 관여한 1900년을 강대국의 인정받은 결정적 시점으로 본다. 동아시아 강국의 출현에 의해 아시아로부터 더 이상 유럽 중심적이 아닌 새로운 세계질서로의 이행이 시작되었다(1995[1950]:223-224).

슈미트의 강대국의 변동과 관련한 논의의 시사점은 일본의 경우 유럽 열강들 사이의 대지의 노모스 체제를 준용한 기존 강대국 공간 질서의 신규 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였던 반면 미국은 기존 유럽 중심의 국제법 체계에 균열을 내려했다는 점에서 양국의 강대국으로의 진입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유럽 중심의 대지의 노모스의 종말과 보편적 국제주의 노모스로의 이행

슈미트는 유럽공법에 기반한 국제법의 해체과정을 회한에 찬 심정으로 그려냈다. 유럽 국제법의 종말은 그에게 익숙한 한 시대의 종말이자 자신의 학적 삶의 기반으로 여겨졌던 유럽 문명의 붕괴였기 때문이다. 슈미트가 이 저작을 마지막으로 거의 의미 있는 학문적 진전을 달성하지 못한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인지 모르겠다. 그에 따르면 어떠한 위기의식도 없이 오히려 완전히 아무것도 예감하지 못한 채로 19세기 말 경의 유럽의 국제법학은 그것의 이제까지의 질서가 가지고 있었던 공간구조에 대한 의식을 상실했다.

“유럽의 국가들과 국민들로 이루어진 가계(家系)와 가족적 협력체가 그러한 방식으로 갑자기 그 집을 모든 세계에 대해 개방했다는 사실은 실제로는 단순한 양적인 확장이나 확대가 아니었으며 새로운 차원으로의 이행이었다. 우선 그것은 무공간적이며 무토지적인 일반성이라고 하는 무(無, Nichts)에로의 추락이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제까지의 유럽 공법이라고 하는 극히 구체적인 질서의 자리에 등장한 것은 또한 국제법적인 구체적 신질서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먼로주의 선언은 이미 1823년에 서반구의 영역을 유럽의 계속적인 육지침득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18-19세기의 질서를 나타냈던 유럽의 세력균형체제는

를 포함한 영국, 미국, 이탈리아의 외교적 입장을 각국의 외교훈령 및 외교 당국자 간의 공식 서한을 통해 분석한 글로서 시모노세키조약 직후 일본의 외무대신이었던 무스 무네미쓰(陸奥宗光)가 비망록 형태로 작성한 『건건록(蹇蹇錄)』이 생생하게 잘 드러난다.

간단하게 전 지구상의 세계적 세력균형으로 전환할 수 없었다”(1995[1950]:284-285).

역사의 심판정은 냉혹하다. 유럽 국제법의 기반으로서의 대지의 노모스가 특정한 공간질서에 입각한 정전(正戰) 개념에 입각한 전쟁의 제한과 세력균형에 중점을 두었다면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로서의 보편적 국제주의는 전쟁 그 자체의 종식과 세계평화 달성에 목표를 두었다. 유럽 중심의 국제법이 붕괴한 것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모두 유럽에서 시작됐으며, 인류에게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참상을 야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칼 슈미트는 협의(狹義)의 대지의 노모스, 곧 1차 대전 이전까지 300년 이상 국제질서를 규정해온 유럽 중심의 국제법에서 그것이 새로운 형태의 대지의 노모스로 전환할 수 있는 대지의 노모스에 대한 광의(廣義)적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사가 폐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개방된 채로 움직이고 있는 한, 그리고 인간과 민족이 단순히 하나의 과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가지고 있는 한, 세계사적 사건의 언제나 새로운 현상형태 속에서 새로운 하나의 노모스가 생겨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1995[1950]:64). 나아가 그는 유럽 공간 중심의 대지의 노모스가 정당한 적과 그에 따른 전쟁의 제한이라는 고유의 적실성을 상실한 채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의 출현을 촉진하는 전면전으로 치달을 조건에 대해 설명한다.

“특정 공간질서의 수호자인 강대국들 사이의 전쟁은, 그것이 무주(無主)의 공간을 둘러싸고 수행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의 공간 속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간질서를 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럴 경우, 그러한 전쟁은,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공간질서의 구성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총체적인 것으로 된다”(1995[1950]:217).

이제 정당한 적 개념에 입각한 정당한 전쟁은 사라졌다. 그에 따라 유럽 중심의 국제법도 붕괴됐다. 전쟁의 제한이 아니라 세계평화가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의 목표가 됐다. 전쟁 범죄화의 길이 열렸으며 1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각 양각색의 평화사상이 경쟁적으로 제출됐다.⁸⁾ 이런 견지에서 보았을 때 슈미트가 자신의 책 ‘서문’에다가 “지상의 왕국은 평화를 희구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으며 대지의 새로운 노모스라는 사상도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밝혀질 것”(1995[1950]:7)이라는 언명한 것 역시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8) 20세기의 다양한 평화사상에 대한 개관으로는 이리에 아키라(入江 昭, 1999) 참조.

대지의 노모스의 창안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길을 열은 나라는 서반구에 위치한 미국이었다. 윌슨의 보편적 국제주의,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을 금지한 부전조약(不戰條約), 적법한 방식으로 성립하지 않은 정부나 국가에 대해서는 승인을 유보하겠다는 취지의 ‘불승인주의’를 표방한 스티븐슨독트린이 전후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의 토대로 작용했다. 슈미트는 부전조약과 스티븐슨독트린이 야기한 국제법적 의미 전환을 그 특유의 예리한 이론적 더듬이로 판별했다.

“전쟁의 위법화를 촉진하려는 미국인들은(……)1928년 부전조약에서 하나의 공식적인 유죄 선고,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에 대한 유죄선고를 이룩한다. 1928년의 부전조약과 더불어 국제법의 세계관이 바뀌었다. 그것은 이 조약의 모든 개별적인 규범화와 공식화보다 중요하며 전쟁에 대한 그것의 유죄선고의 해석보다 중요하며,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수많은 명시적, 묵시적 유보들의 해석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서반구가 무대에 등장했으며 전쟁의 광범위한 의미 변화를 규정했다”(1995[1950]:344-345).

슈미트에 따르면, 유럽 중심의 국제법은 국가적 충돌을 세력균형 체제의 틀 속에서 파악했다. 하지만 스티븐슨독트린의 등장으로 이제 그러한 충돌은 유럽이 아닌 세계의 단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보편화됐다. 스티븐슨은 동아시아, 특히 만주에서의 충돌과 관련하여 “그 새로운 관점, 곧 스티븐슨주의가 없다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만주에서의 사건은 이제까지의 국제법에 따라 미국과 무관”할지 모르지만, 이제 스티븐슨독트린이라는 새로운 관점 아래에서 세계의 모든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사건들에 미치는 개입이 정당화됐다(1995[1950]:383)고 규정했다.

슈미트는 스티븐슨독트린이 서반구와 동반구, 유럽과 아시아의 구별을 무시한 채 미국이 지상의 모든 영역변경의 정당성이나 부당성에 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했다. 나아가 불승인주의가 윌슨의 국제주의 외교노선에 연원하고 있음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다. 요컨대, 윌슨주의와 스티븐슨독트린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유럽공법의 국제법에서 미국공법의 국제법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합법성과 정통성이라는 민주적 발현 형태가 국제법상의 기준으로 선언됐다. 윌슨 대통령의 실천은 민주적 합법성을 서반구의 영역에서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고양시켰다. 그에 따라 민주적 헌법이라는 합법적인 정부만이 승인된다.

‘민주적’이라는 말과 ‘합법적’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는 승인을 부여하는 정부 자체에 의해,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미국정부에 의해 정의 되고, 해석되며 재가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확실히 그러한 신정부 승인의 이론 과 실천은 개입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실천은 서반구에서는 워싱턴 정부가 다른 아메리카 국가의 헌법변경이나 정부변경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낳는다. 미국이 서반구, 즉 아메리카대륙에만 제한되어 있는 한 그러한 결과는 오직 서반구라는 광역에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적 개입주의라고 하는 전 세계적 주장을 제기하자마자 그것은 지상의 모든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용되기에 이른다”(1995[1950]:380).

4. 21세기 평화를 향한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는 가능한가?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는 직전까지 존재했던 대지의 노모스의 위기로부터 출현 한다. 그리스어 ‘분리되다’(Krinein)에서 유래된 ‘위기’(Crisis)란 개념은 본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 위기라는 용어는 사회과학적 의미로 더 많은 용례를 얻고 있다. 위기가 일방적 파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바로 새로운 대안을 향한 출발 및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칼 슈미트는 이미 1942년, 딸에게 쓴 에세이 형식의 『땅과 바다』라는 책에서 새로운 노모스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 유려한 필체로 그려냈다.

“이전의 원소들과 새로운 원소들에 대한 인간의 새로운 관계들이 새로운 노모스를 불러내고 인간 실존의 변화된 척도와 관계들이 노모스를 강제하고 있는 거야. 꽤 많은 이들은 여기서 죽음과 파괴만을 보려 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세계의 종말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믿겠지.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땅과 바다의 관계의 종말일 뿐이야. 새로운 것에 대한 인간의 불안은 종종 비어있음 앞에서의 불안만큼이나 크다고 할 수 있어. 그 새로운 것이 실상 그 비어있음의 극복인 데도 말이야. 새로운 의미가 자신의 질서를 얻기 위해 씨름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만을 보는 이유도 그 때문이지. 당연하게도 낡은 노모스는 떨어져 나가고 그와 더불어 모든 전승된 척도, 규범과 관계들의 체계 전체도 사라질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도래하는 것이 무절제이거나 노모스에 적대적인 무(無)이기만 한 것은 아니

야. 낡은 힘과 새로운 힘들이 가장 격렬한 씨름을 벌이는 곳으로부터 정당한 척도가 생겨나고 의미심장한 비율이 형성되기 마련이니까”(Schmitt, 2016[1942]:130-131).

슈미트는 대지의 노모스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국제연맹을 적시한다. 국제연맹의 실패의 원인은 국제연맹에는 어떠한 공간질서를 향한 확립적인 결단도 어떠한 공간적인 질서의 사고도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했다.

“국제연맹은 어떠한 공간질서의 이념도 포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영토적 현상에 대한 고유한 원칙을 포함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실로 국제연맹에는 사람들이 국제연맹에 의해 재가된 대지의 현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만한 것에 대한 공동의 관념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1995[1950]:299).

슈미트가 국제연맹을 비판한 지점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로서의 월슨의 국제주의를 국제연맹 시기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의 창설 및 냉전 질서의 고착이라는 20세기 전체로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확장된 시각에서 고찰한다면 적어도 전후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는 칼 슈미트가 언급한 공간 질서의 개념을 상실한 게 아니라 유럽에 국한되지 않는 전 세계적인 형태에서 새롭게 창출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이데올로기에 의거한 새로운 공간질서를 만들어 낸 것이며 냉전으로 불리는 시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월슨주의는 단순한 평화주의가 아니었다. 월슨은 미국 주도로 이미 새로운 공간질서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이었다. 1915년 월슨은 일찍이 미국의 안보가 전세계 인류 ‘모두’의 안전과 분리될 수 없다는 외교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국제주의의 원형으로 부를 만한 것으로 이후 미국이 지구 ‘어디서든’ 호전적 침략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자국의 의무로 삼았다는 결의를 함축했다.

“정의와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스스로의 삶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교란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호전적인 행위를 결코 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상의 어느 곳에서 벌어지든 호전적인 행위에 대해 분노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국가 발전 선상의 경로를 추구하는 데서 안보가 확보되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다른

국가들 역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확보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 및 국가의 자주적인 발전에 관한 정열을 우리의 상황이나 활동에만 국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그러한 이상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독립과 정의를 향한 어려운 길을 걷고자 합니다.”(Kissinger, 1994:47).

전세계에서 선량한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을 구상한 월슨의 견해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될 냉전과 봉쇄정책의 전조(Kissinger, 1994:47)였다는 키신저의 주장은 타견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주창한 전후 국제질서는 월슨이 제시한 이념과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근거하여 봉쇄라는 독특한 공간질서 관념을 창출했다. 대표적으로 트루먼 독트린과 냉전의 대명사인 조지 케난의 봉쇄정책 역시 동서를 이데올로기로 가로지르는 특정한 공간관념,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를 기축으로 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1950년의 애치슨라인 선언(Acheson, 1950) 역시 새로운 공간질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봉쇄 개념을 고안한 조지 케난은 “소련행동의 원천”이란 글에서 소련이 군사적 위협을 제기한다거나 전쟁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케난은 소련의 도전을 주로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미국 외교 전략의 핵심 요소는 소련의 팽창 경향을 “장기적이며 끈기 있으면서도 확고하고 빈틈없이 봉쇄하는 것”(Kennan, 2012[1951]:125)으로 언급함과 동시에 “소련정책의 움직임과 기동에 대하여 부단히 움직이는 일련의 지리적, 정치적 영역에서 방심하지 말고 자유자재로 이에 대응하는 힘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Kennan, 2012[1951]:126)하다고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케난의 봉쇄 개념에 입각하여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3월에 행한 의회연설에서 “무장한 소수 또는 외부 압력에 의해 야기되는 정복기도에 맞서 싸우는 자유 인민들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Ambrose, 1996:108)라고 트루먼 독트린의 핵심을 간략히 요약했다.

우리는 냉전을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개의 초강대국을 축으로 동서간 이념대립이라는 특정한 공간질서를 바탕으로 형성된 20세기의 대지의 노모스로 규정할 수 있다. 봉쇄의 주공간이 서유럽이었던 관계로 미국과 소련은 동유럽을 일종의 완충지대로 희생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대규모의 분쟁 내지 세계전쟁은 예방될 수 있었다. 독일분단, 한반도분단, 중국 분단, 일본의 기지국가화(基地國家化)는 미국의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이 야기한 새로운 공간질서의 산물이었다. 냉전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소련의 개혁, 개방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신 데탕트 형태로 냉전 구도가 완화될 수 있었다면 보다

안정된 국제질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게 필자의 견해이다.

탈(脫)냉전 이후의 세계가 오히려 더 불안해진 이유는 바로 칼 슈미트가 언급한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의 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냉전 해체 이후 새로운 공간개념의 필요성이 대두했음에도 국제사회가 이에 합의하지 못하고 지연된 결과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나 나올 법한 기이한 형태의 전쟁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시한 현재의 국제정치상황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조성된 국제연맹 체제의 혼돈으로부터 야기된 전간기(戰間期) 상황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전쟁으로까지는 비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불승인하는 조건으로 현재의 전선에서 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한반도식 해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 정치와 경제의 새로운 관계에 의해 시사된 공간 문제들에 대하여 숙고하는 작업, 탈냉전기 이후 조성된 새로운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공간질서, 곧 대지의 노모스를 창출하지 못하는 한 더 커다란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며 폭발의 임계점을 향해가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문제로 촉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참고문헌]

김영석. 2023. 『국제법』 제3판. 박영사.

무스 무네미쓰(陸奥宗光). 2021[1929]. 『건건록(蹇蹇錄)』. 논형.

이리에 아키라(入江 昭). 1999.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을유문화사.

Acheson, D. 1950. "Crisis in Asia: An Examination of United States Policy."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22.551(23 January).

Ambrose, S. 1996. 『국제질서와 세계주의』. 을유문화사.

Kennan, G. 2012[1951]. *American Diplomacy 1900-19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issinger, H. 1994.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Liu, L. 2022. "국제법의 사상계보." 『세계질서와 문명등급』. 교유서가.

Schmitt, C. 1995[1950]. 『대지의 노모스: 유럽 공법의 국제법』. 민음사.

_____. 2006[1950]. *The Nomos of the Earth i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Jus Publicum Europaeum*. Translated and Annotated

by G. L. Ulmen. New York: Telos Press Publishing.

_____. 2016[1942]. 『땅과 바다: 칼 슈미트의 세계사적 고찰』. 꾸리에.

Weaton, H. 1936[1836].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Oxford: Clarendon Press.

_____. 2021[1864]. 『만국공법(萬國公法)』. 윌리엄 마틴(William Martin) 한역(漢譯). 인간사랑.

Session 4

류애림
(九州大学)

“데모크라시의 별명, 공화정에서
민주주의까지: 근대 일본의 『미국의
데모크라시』 수용”

데모크라시의 별명, 공화정에서 민주주의까지
근대 일본의 『미국의 데모크라시』 수용¹

규슈대학 류애림

토크빌 『미국의 데모크라시』와 근대 일본에서의 수용

프랑스인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은 1831년 친구 귀스타브 드 보몽과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방문한다. 9개월 동안 ‘미국에서 미국을 이상의 것’을 목격한 토크빌은 1835년 『미국의 데모크라시』(*Dela Démocratie en Amérique*)² 제1권을 발표한다. 프랑스에서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헨리 리브(Henry Reeve, 1813~1895)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어 영국과 미국에서 널리 읽혔으며, 5년 뒤인 1840년에는 제2권을 출간한다³. 제목으로 democracy를 앞세운 이 저작은 현재까지도 정치학의 고전으로 읽히고 있다.

토크빌이 『데모크라시』의 독자로서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은 첫째로 프랑스 사람들이었다. 혁명 이후의 프랑스, 바스티유가 습격당한 지 40년이 넘는 시점에서도 불안정한 프랑스 사회에 토크빌이 목격한 미국 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따라서 『데모크라시』 제1권에서는 프랑스와 미국의 사회를 비교하며 미국에서 democracy가 유지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한다.

영어로 번역돼 다시 대서양을 건너 이 책은 태평양을 건너 일본에서도 읽힌다. 처음으로 제1권 전체가 번역된 것은 메이지 14(1881)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일부분 번역되어 후쿠자와 유키치와 같은 메이지 사상가의 저작에도 자주 인용되었다. 그러나 democracy의 번역어가 통일되지 않은 채 시대에 따라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소개된다. 다른 번역어, 다른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 강조되는 democracy의 내용도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근대 일본에 democracy를 소개한 서양 정치서가 『데모크라시』뿐만은 아니지만, 본 발표에서는 토크빌의 저작 수용을 중심으로 그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¹ 이하 많은 부분은 줄지 『トクヴィルと明治思想史：《デモクラシー》の発見と忘却』(白水社、2021)을 바탕으로 한다.

² 이하에서는 『데모크라시』로 표기한다.

³ 프랑스어 원전이 출판된 것은 1835년 1월, 영역본이 출판된 것은 같은 해 6월이다.

공화정: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상

메이지 유신을 전후하여 분야를 불문하고 많은 서양 서적이 일본에 소개된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정치제도를 모색하는 것도 서양 제도의 수용, 번역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메이지 10년대 이른바 자유민권운동이 전성기를 맞은 시기에는 서양의 정치 관련 서적이 번역 출판되었다. 토크빌의 『데모크라시』도 그 중 하나다.

『데모크라시』의 제1권이 완역되어 일본에 소개된 것은 이미 서술하였 듯 메이지 14년의 일이다. 고이즈카 류(肥塚龍)는 리브의 영문 번역을 중역해 『자유원론』(自由原論)이라는 제목을 붙여 출간한다. 고이즈카가 『자유원론』에서 democracy의 번역어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화정사’(共和政事)나 ‘공화정체’(共和政體) 등 ‘공화’(共和)라는 단어다. 예를 들어 제1권 제2부 제5장의 제목 Government of the Democracy in America는 ‘아메리카의 공화정부’로 번역하고 있다. 또 제1권 제2부 제6장 Advantages American Society Derive from Democracy는 ‘미국 사회에서 공화정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어떤 것인가’로 번역하는 등, democracy의 번역에 ‘공화’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emocracy의 역어로 ‘민주’(民主)를 사용하는 곳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공화를 사용하고 있다. 고이즈카는 democracy의 번역뿐만 아니라 republic의 번역에도 ‘공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원론』을 읽는 메이지 일본의 독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현재 대부분의 경우 democracy의 역어로 사용되는 ‘민주주의’도 자유원론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인민주권 원리)의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권 제1부 제4장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in America를 ‘미국 민주정체의 주의’로 번역하고 있다.

고이즈카가 democracy를 번역할 때 공화를 이용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니시 아마네(西周)는 『백학연환』(百學連環, 1870)에서 두 종류의 정치 체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Monarchy 군주의 다스림(君主の治)와 Democracy 민주의 다스림(民主の治)이다. ‘민주의 다스림’이란 ‘만민이 서로 의논하여 정치를 행하는’ 정치 체제라고 설명하지만 주(主)라는 글자는 주권의 소재로 이해되기 쉽다⁴. 그러나 토크빌 정의한, 여러 조건 혹은 경우의 평등, 즉 사회 상태로서의 democracy의 경우 ‘인민주권’이 필요충분한 조건이 아니므로 고이즈카는 ‘민주’의 사용을 가급적 피하려 하였다. 고이즈카는 인민주권과 분리할 수 있는 democracy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라는 용어는 피했지만, ‘여러 조건의 평등’으로서의 democracy에 적절한 번역어를 대지 못해 Republic의 번역

⁴ 西周『百學連環』(大久保利謙編『西周全集』第4卷、宗高書房、1981) 215 쪽.

어로도 쓰이고 있는 공화를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혹은 共 (함께 공)자에 주목하여 일부 계급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인민이 함께하는 정치'의 의미를 번역어 '공화'에 담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자유원론』보다 이른 시기에 『데모크라시』가 소개된 예는 메이지 6년 『상목자유지론』(上木自由之論: 출판자유론)에서도 ‘공’에 주목한 번역어를 찾아볼 수 있다⁵. 오바타 도쿠지로(小幡篤次郎)가 『데모크라시』의 제1권 제2부 제3장 Liberty of the Press in the United States 를 초역하여 출판한 이 책에서는 aristocracy 를 귀족공의(貴族公議)로, democracy 를 민서공의(民庶共義)로 번역하고 있다⁶. 오바타 역시 일부 귀족에 의한 정치가 아닌 일반인들이 함께하는 정치로서의 democracy 를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번역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평민주의: 메이지 헌법 제정 전후, 안정의 시대로

「평민주의」는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의 저작 『장래의 일본』(将来之日本)의 성과와 함께 유명해졌다. 노년의 소호는 “나는 민주라는 말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데모크라시라는 글자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민주라는 말은 사용하지를 삼갔다. 나는 의도적으로 평민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며 평민주의 곧 democracy 임을 밝히고 있다.

『장래의 일본』은 메이지 19(1886)년 10월에 출판되었다. 메이지 14년 10월에는 ‘국회개설의 칙유(勅諭)’가 발표되었고, 메이지 22년에는 ‘의원을 소집하여 국회를 개회’하기로 약속하였다. 즉 『장래의 일본』은 국회개설을 약 2년 앞두고 출판된 것이다. 소호는 ‘완력(腕力)세계’에서 ‘평화세계’로, ‘무비(武備)주의’에서 ‘생산주의’로, ‘귀족주의’에서 ‘평민주의’로의 전환을 세계의 대세로 설명한다. 그리고 완력·무비·귀족주의를 극복하고 ‘생산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 ‘평민사회’를 이룬 뒤, ‘평민주의 운동’의 추진력을 얻어 ‘평화세계’에 이르는 것이 일본의 장래라고 한다.

『장래의 일본』에서 소호는 토크빌의 『데모크라시』를 “토크빌 씨가 말하길”로 시작해 인용하고 있다. 귀족이 없는, 평민의 사회인 미국은 ‘상업에 부지런히 힘쓰는’ 인민이 많아, 그 생산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지구상 일류의 해상 권력자’가 되었다. 토크빌

⁵ 오바타 도쿠지로는 『데모크라시』의 제목을 번역하지 않고 “프랑스 학자 ‘데토오크 뷔르’씨가 미국의 사정을 기록한 『데모크라치크인메리카』라는 제목의 책”이라고 영어 제목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⁶ 小幡篤次郎『上木自由之論』(『自由民権編』明治文化全集、日本評論新社、1955) 134쪽.

이 그리고 있는, 평민주의의 나라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의 모습을 장래의 일본의 모범으로 삼고 있다⁷. 그러나 토크빌이 묘사한 미국의 모습은 1830 년대의 것으로 1880 년대의 미국과는 사뭇 달랐다. 소호는 "토크빌 미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그의 눈을 놀라게 하는 것은 인민들 사이의 경우의 평등"이었으나 1880 년대에는 "평등의 시대 이미 지나가고 불평등의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데모크라시』는 그 가치를 잃었다고 한다⁸. 또한 1850 년 프로이센 헌법을 참고하여 제정된 메이지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미국 제도의 모범성은 희미해지기도 하여, 토크빌의 『데모크라시』는 망각된다.

토크빌은 잊혀졌지만 소호와 그가 설립한 민우사(民友社)에서 활동한 지식인들은 평민주의를 계속해서 주장한다. 소봉이 '귀족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제시한 '평민주의'는 데모크라시의 번역어, 혹은 다른 이름으로 긴 시간 동안 사용된다.

민본주의: 보통선거를 지향하던 시대

메이지 10 년대에 널리 읽혔던 토크빌이지만 메이지 22(1889)년 메이지 헌법 제정을 전후해 잊혀진다. 다시 주류 언론 등에서 토크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다. 그동안 토크빌의 이름은 망각의 샘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간혹 샘물 수면에 얼굴을 내미는 순간도 있었다.

토크빌이 망각된 시기의 가장 유명한 democracy 의 다른 이름은 '민본주의'(民本主義)다.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1916 년 발표한 ‘헌정의 본뜻을 설명하고 그 유종의 미를 거둘 길을 논한다’(1916)에서 democracy 의 번역어로 민본주의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치상 일반 민중을 중시하고, 그 사이에 귀하고 천함, 위 아래의 구별을 세우지 않고, 게다가 국체(國體)가 군주제든 공화제든 상관없이, 널리 통용되는 주의”가 ‘민본주의’다. ‘귀하고 천함, 위 아래의 구별’이 없는 것은 토크빌의 ‘여러 조건의 평등’과도 통하며 주권의 소재를 묻지 않는 것도 유사하다. 또 다수의 전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의를 전개한다.

근대의 정치는 그 정부조직의 형식적 면에서는 다수의 의향을 제일로 한다. 그러나 사회구성의 실질적 이상(理想)의 면에서는 처음부터 다수전제를 용인하는 것은 아

⁷ 徳富蘇峰『将来之日本』『徳富蘇峰集』(『明治文化全集 34』筑摩書房、1974) 79 쪽.

⁸ 「古の亜米利加と今の亜米利加」(옛 미국과 오늘날의 미국)『国民之友』메이지 22 년 4 월, 제 48 호.

니다.다수정치라고 해도 말 그대로 중우의 분별 없는 행동이 정치권을 지배한다면 국가의 건전한 발달을 기대할 수 없다.⁹

‘민본주의’ 정치는 다수 전제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소수 현자(賢者)의 지도’가 필요하며 ‘정치적 민본주의’는 ‘정신적 영웅주의’ 혹은 정신적 ‘귀족주의’와 ‘혼연히 융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보통선거를 도입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정신적 영웅인 ‘소수 현자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민본주의가 성립한다. 토크빌은 미국 재판관 등의 귀족적 정신에 대해 말하고, 그것이 미국이 democracy 를 유지할 수 있는 한 요인이라고도 주장한다. 또 “다수파의 항구적 지배에 복종해야 하지만 이들 권력(필자: 미국 입법자)은 (대중의) 제멋대로인 생각과 싸워 위험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도 서술한다¹⁰. 요시노는 토크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토크빌을 연상시키는 논의를 전개한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의 경우 이미 제도를 통해 democracy 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시노 사쿠조가 토크빌의 저작을 그의 democracy 론에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요시노와 토크빌이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요시노는 다이쇼 13(1924)년 메이지문화연구회를 결성해 메이지 시대를 대상으로 한 역사 연구에 힘쓴다. 약 반세기 전의 메이지 시대를 연구하려고 한 이유는 “다이쇼 7,8년의 오늘날은 어떠한가 하니, 데모크라시가 어떠한고, 공산주의가 어떠한가, 등 기본적인 정치사상의 혼란이 마치 메이지 10년대와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치사상의 변천을, 기초가 된 시세와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메이지 10년대에 이미 패배한 정치사상도 다이쇼 10년대에는 효용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즉, democracy 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필요성을 밝히려는 노력이었다. 요시노가 작

⁹ 吉野作造「憲政の本義を説いて其有終の美を済すの途を論ず」『吉野作造選集 2』(岩波書店) 23 쪽. ‘민본주의’라는 번역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는 요시노 사쿠조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데모크라시와 기독교’(デモクラシーと基督教, 1919)에서 직접 밝히고 있든, 민본주의는 우에스기 싱고(上杉慎吾)가 만든 번역어다. 요시노 사쿠조가 ‘민본주의’라는 번역어, 별명을 사용한 것은 극히 짧은 기간 동안이었으며, 가타카나로 ‘デモクラシ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吉野作造「デモクラシーと基督教」『選集 3』 162 쪽)

¹⁰ 제 1 권 제 1 부 제 8 장 “연장헌법”과 제 2 부 제 8 장 “다수의 폭정을 완화하는 요인”을 참조.

¹¹ 吉野作造「明治文化の研究に志せし動機」『選集 11』 102~103 쪽.

성한 ‘민권자유에 관한 문헌’(『新旧時代』 1926 년 8 월) 목록에도 고이즈카 류의 『자유원론』이 소개되어 있고, 『메이지문화전집』의 ‘자유민권편’에도 ‘토크빌 지음, 오바타 도쿠지로 옮김 『상목자유론』’이 실려 있다. democracy 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보통선거에 반대하는 의견에 맞서기 위한 무기 중 하나로 토크빌의 『데모크라시』가 잠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시대

『데모크라시』가 잊혀졌던 시기,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끝나고 전쟁을 거쳐 종전을 맞이한 일본에서 토크빌은 다시 화려하게 부활한다. 종전 직후 일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컸다. 점령의 주체인 미국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 『데모크라시』는 또 한 번 널리 읽히게 된다.

이때는 ‘민주’라는 번역어가 정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잡지『세계』의 1946 년 5 월 호 특집 ‘미국론’에 실린 나카노 요시오(中野好夫)의 『데모크라시』 소개에서는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로 번역되어 있다. 새로운 시대의 일본 헌법에는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기에 ‘민주’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즉, 국민주권의 원칙과 결부된 것이 이 시대의 democracy 였다. 『자유원론』 이후 처음으로 『데모크라시』의 제 1 권을 완역한 이이 겐타로(井伊玄太郎)도 『미국의 민주정치』(1948)로 번역하고 있다.

‘민주’라는 번역어, 별명이 널리 쓰이게 된 이 시대에 토크빌은 무엇보다 미국을 알기 위해 읽었지만 일본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참고하기 위해서도 읽었다. 정치학자 다카기 야사카(高木八尺)는 대표적인 일본의 미국 연구자 중 한 명이다. 다카기는 전후 1948 년에 출간한 『미국』(アメリカ)에서 “100 여 년 전, 프랑스인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정』이라는 방대한 저작을 그 조국에 바쳐, 민주적 혁명의 도상(途上)에 있었던 프랑스인들을 그 몰이해와 사상적 혼미에서 깨어나게 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¹². “민주적 혁명의 도상”에 있었던 것은 1948 년의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1957 년 발표한 ‘토크빌 민주정론의 현대적 의의’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깊은 의미에서 그의 민주정론의 재고찰이 이뤄져야 할 이유가 있다”며 프랑스와 당시 일본은 “민주정의 발전과정에서 현저하게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더욱 진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¹³. 그리고 democracy 의 유지와 발전에 주된 역할을 하는 인민의 습관과 성격을 형성하

¹² 高木八尺『アメリカ』『高木八尺著作集 4』(東京大学出版会、1971) 103 쪽.

¹³ 高木八尺「トックヴィルの民主政論の現代的意義」『高木八尺著作集 4』 72 쪽.

는 교육과 종교에 관한 논의를 『데모크라시』를 소개함으로써 전개한다.

Democracy의 별명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는 메이지 44년 8월 와카야마(和山)에서 '현대 일본의 개화'라는 제목의 연설을 한다. 이 연설회 첫머리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이어 "복잡한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는 학자들의 솜씨와 능력에는 탄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어리석음을 안타깝게 여길수 밖에 없는 것들이 그들이 내린 정의를 보면 흔히 있습니다"고 말한다. 소세키에게 개념이란 것은 어제 본 와카야마의 바다와 오늘의 바다가 다르듯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면 소세키가 생각하는 좋은 정의란 무엇인가. '흐릿'한 정의다. "흐릿해도 다른 것과 구별이 가능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¹⁴.

토크빌이 democracy의 특징으로서 가장 중심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여러 조건의 평등' (l'égalité des conditions/the equality of conditions)이다. '여러 조건의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사회 상태가 토크빌의 democracy에 대한 '흐릿'한 정의일 것이다. 『데모크라시』에서 democracy가 미국의 정치제도를 지칭하는 경우도 다수 있지만, '여러 조건의 평등'이 토크빌이 생각한 democracy의 핵심임에는 틀림없다. '흐릿'하게 정의한 뒤 문맥에 따라 좀 더 선명한 형태를 부여하고 있다. 1835년 제1권은 미국의 '여러 조건의 평등'이란 환경에서 democracy의 제도가 어떻게 유지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1840년 제2권에서는 고립된 개인의 '개인주의'나 '다수의 전제' 등 '여러 조건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democracy의 부작용에 관한 추상적 고찰이 주를 이룬다.

'흐릿'하게 정의된 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담아 사용되고 있는 토크빌의 democracy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근대 일본에서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흐릿'한 정의 속에서 포착한 특징이나 강조하고 싶은 특징에 기초하여 번역어를 만들었다. 표의문자인 한자를 번역의 소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번역자의 이해나 주장이 담긴 역어가 만들어지게 된다. 어떻게 보면 democracy가 별명을 획득했다고도 할 수 있다. '흐릿'한 democracy에게 다른 이름이 주어졌다. 따라서 토크빌의 democracy에 주어진 다양한 '별명'을 추적하는 것은 다른 이름이 사용된 시대의 특징이나 역자 사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¹⁴ 夏目漱石「現代日本の開化」(三好行雄編『漱石文明論集』岩波書店、1999) 11~14쪽.

슐라이퍼는 ‘여러 조건의 평등’으로서의 democracy 의 병리적 현상을 치료(cure)하는 것이 정치적 제도로서의 democracy 라고 한다¹⁵. 토크빌의 데모크라시에 있어서의 다양한 사용법을 분석한 끝에 내린 결론다. 그렇다면 근대 일본인들은 democracy 를 ‘공화’ ‘평민’ ‘민본’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한 별명을 이용함으로써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치료책을 찾았다고도 할 수 있다. 메이지 시대 초기의 신분제도가 없어진 새로운 시대를 시작으로, 헌법에 의해 인민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나라의 번영을 도모했던 시대, 격렬하게 반대를 받으면서도 보통선거를 추진하던 시대, 국민주권이 선언된 시대를 거치면서 democracy 는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별명을 부여받으면서 해결책으로도 주목받았다.

서양어, 특히 영어에 더 친근감을 갖게 된 현대에는 한자 번역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 발음 그대로를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democracy 는 일본에서는 가타카나를 이용해 'デモクラシー'로, 한국에서는 '데모크라시'로 표기하기도 한다. ‘흐릿’한 이해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democracy 의 다양한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democracy 에 현재 정착된 ‘민주주의’ 이외의 별명을 지어줌으로써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¹⁵ 슐라이퍼의 토크빌 democracy 의 분석에 관해서는 James T. Schliefer, *The Chicago Companion to Tocqueville's Democracy in America* (Univ. of Chicago Press, 2012) pp.60-64 를 참조.

소진형
(ソウル大学校)

“‘서양’ 개념의 형성과 굴절:
『벽위신편』의 천주교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서양” 개념의 형성과 굴절:

『벽위신편』의 천주교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소진형(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서론

조선에서 “서(西)”은 무엇을 지칭하는 말이었을까? “동양” 혹은 동아시아의 대당 개념으로서 유럽 혹은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서양”은 사실 19세기 말에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사대부들의 텍스트에서 “서”이라는 표현이 서학(西學), 즉 예수회에 의해 소개된 유럽의 학문과 연관되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7세기에도 서는 지리적 의미의 유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또, 1801년 신유사옥(辛酉邪獄)을 전후로 “서”는 “천주교”와 연결되어 유교적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사(邪)”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사적으로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서”, “서학”, “서양”의 의미를 조선시대의 정치가, 관료집단, 지식인 계층이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결국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에서의 정치적 판단과 행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서학이 예수회가 소개한 천문학이나 수학, 과학기술과 연결되어 긍정적으로 이해되었을 때와 천주교와 연관되어 사학(邪學)으로 규정되었을 때,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무력으로 통상을 요구하는 서양 세력을 서라고 불렀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 조선의 지식인들은 “서”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였다.

서학이 서양의 학문으로 이해되던 18세기 중후반까지 중국에 연행을 갔던 많은 조선의 지식인들은 새로운 학문을 접하기 위해 북경의 천주교당을 방문하고 책자나 지도 등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시기 서울·경기 지역의 진보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서양 수학이 일종의 교양처럼 받아들여질 정도였고, 예수회에 의해 소개된 서양의 지리 정보 및 지도는 당시 학계의 주변부에 해당했던 지방의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유통될 정도였다. 한편 서학이 천주교와 연관되어 규정되기 시작하면서 “서”는 기이한 것,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서학”은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탈적인 것으로 규정되었고, 서양의 지식에 대한 관심도 “이상하고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취향” 정도로 폄하되었다.

18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의 연해에 서양의 전함들이 출몰하고 1840년대에 제 1차 중영전쟁(1840-1842)이 시작되면서 조선에서 유럽의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에게 서양은 지리정보와 함께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이 때 서양은 구체적 지리정보만으로 설명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 이전 서학, 천주교에 대한 지식인들의 규정과 설명 및 당대에 새롭게 수집한 정보들 중 당대인들이 서양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선택해서 재구성된 관념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84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소위 위정척사파(위정척사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 조선의 지식인들이 구성한 서양 개념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윤종의(尹宗儀, 1805-1886)의 『벽위신편(關衛新編)』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1840년대부터 1860년대라는 시기에, 그리고 『벽위신편』이라는 텍스트를 주목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사료들을 검토해볼 때 1840년대는 조선인들이 서양 국가들의 통상요구 및 물리력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그 이전 서학이나 천주교로 규정되던 막연한 서양에 대한 이미지와 다른, 구체적인 상이 잡혀가던 시기이다. 둘째, 1840년대부터 서양 국가들의 정보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고 그 정보에 기초해 서양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

이를 방증하는 것은 당시 핵심 정치세력인 노론(老論)들이 척사와 관련된 글들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다. 굳이 정치세력을 구분해서 보자면 천주교가 조선의 정치·사회문제가 되면서 183, 40년대까지 “서”를 천주교와 연관시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글을 양산한 것은 남인(南人)들이었지 노론들은 서양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노론들이 서양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183, 40년대인데, 비판자들이 노론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당시까지 남인들이 “서”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선에서 탄압하던 천주교인들의 대부분이 남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천주교인인 남인들의 경우 자신들이 천주교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남인계열의 대표적인 척사서, 즉 『벽위편(關衛編)』, 『이학집변(異學集辨)』과 같은 책들이 출판되었다. 천주교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노론들이 척사관련 책을 편찬하고 서양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글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은 남인들의 문제의식과 다른 정치적 문제를 노론이 직면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노론이 서양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서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구성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19세기에 중요한 정책입안자이자 정책결정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18세기 후반부터 노론 이외의 정치세력, 즉 소론, 남인은 정치에서 소외되기 시작했고, 특히 남인의 경우 천주교 문제 때문에 활동의 제약이 있었다. 이렇게 노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이들이 서양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경우 이는 당시 정치가 및 관료들의 정책적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1830년대부터 노론 관료집단은 국내외에서 서양국가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책이나 직접 쓴 글들이 노론들 사이에서 유통되거나 서신(書信)을 통해 그들의 생각이 논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익은 노론 출신의 사대부로, 척사적 입장을 갖고 있던 노론 지식인·관료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 그는 관료였던 스승과 친구들을 통해 서양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지식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남인 척사서들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그가 『벽위신편』의 초고를 완성한 1848년은 주목할 만한 해인데, 18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영국과 프랑스의 전함들이 조선의 연안에 출몰하고 조선인들과 충돌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외부와의 전쟁 가능성을 지식인들이 염두에 두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윤종익의 『벽위신편』은 한편으로는 서양 국가들의 정보를,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의 해안을 방어하기 위한 해방론(海防論)을 함께 기술한 책이라는 점에서 당대 지식인들의 외부에 대한 불안감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벽위신편』의 특징은 기존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독창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다른 책들을 발췌해서 편집한 것에 불과한데 특히 서양과 관련된 정보는 대체로 남인들의 저술이나 중국의 『해국도지(海國圖志)』나 『황조경세문편(皇朝經世文編)』과 같은 책들에서 가져왔다는 점을 꼽는다. 그러나 이 사실이 『벽위신편』의 정치적 중요성을 반감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중국의 책들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만을 발췌해서 인용했다는 점이며, 그러한 정보와 조선의 해방론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윤종

의가 서양과 외부에 대한 생각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또, 『벽위신편』에 서문을 쓴 이정관(李正觀)은 고위관료로, 윤종익의 스승 이정리(李正履, 1783~1843)의 형제이자 박규수(朴珪壽, 1807~1877)의 척족(戚族)이었다. 개화파(開化派)에 정치사상의 측면에서 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윤종익의 친구인 박규수 역시 이 책에 대한 중요한 평을 남겼다는 사실 역시 『벽위신편』을 중요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이는 『벽위신편』이 윤종익의 고립된 사고를 보여주는 텍스트가 아니라 당대의 영향력있는 관료 및 지식인들 사이에서 “서양”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 연구는 『벽위신편』에서 서양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 천주교인데, 이때 윤종익은 천주교를 현재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종교(religion)가 아닌, 서양 국가들의 이념체계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윤종익은 천주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남인 척사론을 수집하는데, 남인 척사론이 보편적으로 노론들에게까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조선이 서양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노론들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집되고 읽혔던 사실을 드러낸다. 『벽위신편』의 체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서양에 대한 분석과 해방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서양을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그 군사적 해결 방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벽위신편』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사상적인 측면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던 척사론과 동일한 시기에 유행했던, 그러나 서양에 대한 방어가 아닌, 일본에 대한 방어론으로 제시되었고 유통되었던 해방론이 결합되면서 국가를 “서양”으로부터 방어한다는 관념을 보여주는 관점의 이동을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2. 윤종익과 『벽위신편』의 학문적·시대적 배경

윤종익은 파평 윤씨 가문으로 노론에 속하며, 18세에 생원시에 합격했으나 오랫동안 벼슬에 나가지 못하다가 48세가 되던 해인 1852년(철종 3) 음사(陰仕)로 김포군수(金浦郡守)가 되었고, 이후 공조참의(工曹參議),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 1882년에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이른 인물이다. 그는 노론 중 학문적으로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낙론(洛論)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학문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그의 스승이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정리는 노론 중 보수적인 호론(湖論)에 속하는 인물이었다기 때문이다.

『벽위신편』에 서문을 써준 이정관 역시 노론 계열의 보수적인 학자였던 오희상(吳熙常, 1763~1833)의 문인이다. 오희상은 1830년대에 천주교 및 서양을 배척하는 글을 상당히 남겼고, 그의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이정관 역시 1839년 『벽사논증(闢邪論證)』을 저술하였다. 두 사람 모두 위정척사학파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 중 하나인 이항로(李恒老)와 친분이 있었고, 이항로 계열의 척사론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양에 대한 배타적 입장에서 개방적인 태도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박규수는 노론 낙론계 인사로, 윤종익의 절친한 친구였다. 박규수의 문집인 『환재집(環齋集)』을 보면 그의 아우 박선수(朴瑄壽)에게 보낸 것을 제외하면 윤종익에게 가장 많은 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박규수와 윤종익 사이의 서한들은 1849년부터 박규수가 사망하기 1년 전인 1875년 사이에 작성되었다. 편지를 보면 두 사람이 고증학(考證學), 현실 정치, 자신들이 읽은 서적 등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종익이 『벽위신편』을 편집하기 시작한 1840년대는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이 서구세력에 대해 이전과 다르게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시기이다. 조선에서는 1801년 신유박해 이후

천주교 신자가 계속 증가했다는 것을 1830년대에 확인하게 되었는데,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처음으로 외국인 선교사들, 즉 파리외방전교회의 앵베르 주교, 모방·사스탕 신부들이 조선에 비밀리에 잠입, 선교활동을 이어갔다는 것을 사실이었다. 조선 정부는 18세기 말부터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의해 조선이 전복될 것이라는 『정감록(鄭鑑錄)』 계열의 참위설(讖緯說)이 유행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강경한 국가적 대응을 하고 있었고, 신유사옥 때 국가에서 천주교를 국가전복의 시도로까지 생각했던 이유는 「황사영백서(黃嗣永帛書)」와 같은 천주교 신자들이 북경(北京)의 천주교 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 중 “서양의 전함을 불러 조선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정부는 중국에 연행을 갈 때 서양 세력이 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했고, 조사 결과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 천주교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시 완화되었다. 신유사옥 이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지식에 대해 이전과 비교해볼 때 사회적으로 경직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론 지식인들이 천주교에 대해 남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사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1830년대 외국인이 조선에 들어왔고 천주교 교회가 확장되었다는 사실은 노론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1839년 기해사옥(己亥邪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식인들은 천주교와 서양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구체적인 원인은 영국과 프랑스가 조선 영토에 침범한 사건 때문이었다. 1832년 영국 동인도회사 소속 상선 로드 앰허스트(Lord Amherst)호에 의한 통상개방요구, 1840년 영국선 2척이 제주도에서 발포하고 40여 명이 상륙하여 가축을 약탈한 사건, 1845년 사마랑(Samarang)호를 비롯, 4척의 영국 군함이 제주도와 거문도를 향해하면서 남해안을 정밀 탐사하면서 에드워드 벨처(Edward Belcher, 1799-1877)를 비롯한 영국인 200여 명이 어떤 제지를 받지 않고 조선의 영토를 돌아다녔던 사건은 서양에 대해 막연한 관념을 갖고 있던 조선 지식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무엇보다 조선인들을 놀라게 만든 사건은 1846년에 있었던 외연도(外煙島) 사건과 1847년 고군산도(古群山島) 사건이다. 외연도 사건은 1846년 홍주 인근 연해 외연도에 프랑스 프리깃(frigate) 전함 클레오파트르(Cléopâtre)호가 들어와 기해교옥(己亥敎獄, 1839) 때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것에 대해 조선 정부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이고, 고군산도 사건은 이듬해 자신들이 보낸 서한에 대해 답변을 듣겠다는 명목으로 조선에 들어왔다가 전라도 부안군 고군산도에 난파하여 한달여 간을 머물러 있다가 상해로 철수한 사건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길이 52.8m, 52개의 포를 내장한, 870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던 프랑스 프리깃(frigate) 전함 클레오파트르(Cléopâtre)호, 그리고 글로와르호와 빅토리외즈호가 700 여명의 해군을 태우고 조선 해안선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불안이 공포로 변하는 경험을 했고, 조선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졌다.¹⁾

1) 이 두 사건은 조선의 서양세력에 대한 인식변화나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변화만이 아닌, 중국과 프랑스의 조선에 대한 인식변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1846년 클레오파트르호 사건은 동아시아 외교사적으로 볼 때 아편전쟁의 결과로서 중국이 프랑스와 맺은 조약의 해석 문제와 연관된다. 프랑스는 1846년 조선이 기해박해(1839) 때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였다는 것을 문제삼아 조선을 압박하는 서신을 남기고 간다. 파리외방전교회 A-MEP 문서에 들어 있는 클레오파트르 호의 함장 세실(Jean-Baptiste Thomas Médée Cécille)과 마카오의 파리외방전교회 극동대표부 리부아 신부(Napoléon Libois)와의 서신을 보면 당시 세실의 목적은 조선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켜서 프랑스와 단독 통상을 가능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록한다. 세실의 이 발언은 「호문조약(虎門條約)」(1843), 「황포조약(黃埔條約)」(1844)와 밀접한 관련이

이 두 사건은 천주교라는 종교가 서구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척사론자들의 막연한 인식을 구체화시켰고, 정부와 척사론자들의 천주교에 대한 인식은 사상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외교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조선은 18세기 말 을사 추조적발사건, 진산사건 등으로 천주교를 반유교적, 반문명적 세력으로 규정하고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단세력으로 배척했으나, 1801년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천주교의 문제가 단순히 국내 질서의 문제만이 아닌, 이들과 외국세력의 결탁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1846, 47년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노론계열의 척사론자인 윤종의의 『벽위신편』(1848)에서 발견된다. 『벽위신편』은 천주교 교리를 문제 삼거나 남인 척사론자들을 천주교인들과 구분하고자 남인 도통을 세우는 데 방점이 놓여 있는 『벽위편』이나 류건휴의 『이학집변』과 달리 『해국도지』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 유럽 국가의 새로운 명칭들을 정리하고 지도를 대거 첨부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방어하고 대비할 것인지를 고민한 해방책(海防策)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기존 연구자들이 이 책을 윤종의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국내외의 위기를 접한 19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윤종이가 183, 40년대 조선의 정치적 맥락과 그가 유사한 고민을 하던 당대 지식인들로부터 자료를 입수하고 발췌하여 책을 구성해나갔던 과정을 생각해보면 과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²⁾

3. 『벽위신편』의 편제와 인용자료

『벽위신편』은 모두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권 「제가논변(諸家論辨)」, 2권 「이국전기(異國傳記)」, 3권 「연해형승(沿海形勝)」 상, 4권 「연해형승(沿海形勝)」 하, 5권 「정리전도(程里躔度)」, 6권 「비어초략(備禦鈔略)」, 7권 「사비시말(查匪始末)」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체제는 초간본이 아닌 추측된다. 1848년 초고가 완성되고 작성되었던 이정관의 서문에는 『벽위신편』의 초간본 목차가 제시되어 있는데, 초간본에는 개정본에 들어 있지 않은 “오랑캐의 가르침이 발생한 원인(夷教因起)”이라는 제목의 장(章)이 포함되어 있다. 윤종이가 1848년에 완성한 『벽위신편』을 개정하기 시작한 것은 1852년 이후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윤종이가 인용하고 있는 『해국도지』가 1852년 이후 출판된 개정본이기 때문이다. 위원(魏源)의 『해국도지』는 1842년 초판본이 50권, 1847년 개정본이 60권, 1852년 개정본이 100권으로 출판되는데, 이 중 윤종이가 가장 중요하게 인용하는 「천주교고(天主教考)」와 「천방교고(天方教考)」는 1842년판과 1847년 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 1권 「제가논변」은 척사에 관한 글을 모아 놓은 것이다. 제 2권 「이국전기」는 서양국가들을 언급한 것인데, 『명사(明史)』, 『문헌통고(文獻通考)』, 『황조경세문편(皇朝經世文編)』, 『신당서(新唐書)』, 『해국도지(海國圖志)』와 우동(尤侗, 1618~1704)의 『외국죽지사(外國竹枝詞)』에서 발췌한 것이다. 제 3권 「연해형승」은 진륜형(陳倫炯, 1675~1742)의 『해국문견록(海國聞見錄)』, 『황조경세문편』 중 외국들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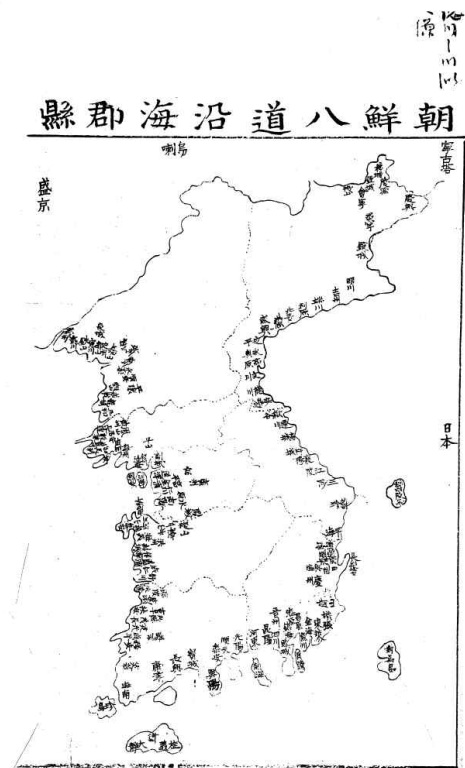
있다.

- 2) 윤종의의 교유 범위는 이정리, 이정관 형제와 박규수 외에도 홍석주(洪奭周, 1774~1842), 김매순(金邁淳, 1776~1840), 서유구(徐有渠, 1764~1845), 윤정현(尹定鉉, 1793~1874),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신석우(申錫愚, 1805~1865), 김영작(金永爵, 1802~1868), 김상현(金尙鉉, 1811~1890)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노론의 고위 관료이거나 그 집안 출신으로 해방론을 견지하며 비슷한 시기에 서양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하던 인물들이다.

국에서 땅을 빌려 교역을 하는 시장을 서술한 「외번차지호시(外蕃借地互市)」를 지도와 함께 제시하며, 4권은 조선의 지도, 조선 서해안, 중국의 동해안, 대만 등의 지도, 조선 전체 지도 등 조선의 해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해로, 조선과 류큐 사이의 해로 등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다.

제 5권 「정리전도」에서는 세계와 지도에 대한 지리학적 설명을, 제 6권 「비어초략」은 서양세력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해안지방의 군사조직과 무기, 병선의 제작을 설명하고 있다. 제 7권 「사비시말」은 1482년부터 1866년까지 조선이 외부와 접했던 사례를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1832년 로드 암허스트호의 통상요구, 1840년 영국선의 제주도 약탈사건, 아편전쟁, 1845년 사마랑호의 제주도 정박, 1846년 프랑스 함선의 출현, 1851년 프랑스 함선의 재출현, 1854년 러시아 전함의 도래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벽위신편』이 184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윤종익이 새로운 자료를 입수하면서 계속 개정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인용한 자료들을 보면 당대의 국내외의 정세를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자료 역시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양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명사』와 같은 자료에서 수집한다는 것이 그런데,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척사”와 연관된 그의 생각의 지향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윤종익의 해방론이 지향하는 것, 그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벽위신편』에서 “서양”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종익의 “서양”은 『벽위신편』에서 명시적으로 보여주듯이 천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벽위신편』의 천주교 관련 서술

제 1권 「제가논변」편에는 21편의 글이 실려 있으며, 紀勻, 李衛, 邱嘉穗, 趙翼, 沈大成, 喬光烈, 張甄陶, 魏源, 楊光先, 黃遵憲과 같은 중국 지식인들의 천주교 비판과 이익(李翼, 1579~1624), 안정복(安鼎福, 1712~1791), 김치진(金致振), 강항(姜沆, 1567~1618) 등이 실려 있다. 위원, 양광선, 황준헌을 제외한 중국 지식인의 저술은 모두 『황조경세문편(皇朝經世文編)』에서 발췌한 것이며, 그 중 장견도(張甄陶)의 글을 비롯, 포르투갈이 주둔하고 있던 마카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윤종익은 『황조경세문편』 중 예정(禮政) 중 천주교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69권, 병정(兵政) 중 해방과 관련되면서 마카오와 관련해서 언급한 83권을 선별해서 인용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황조경세문편』 69권을 인용할 때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순서를 재배치하였다. 이를 표로 만

들면 다음과 같다. 또 내용 전체를 인용한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부분 인용하는 것도 확인된다.

『關衛新編』 「諸家論辨」 중 『皇朝經世文編』 인용부분	『皇朝經世文編』의 순서 및 인용문헌의 원 제목
紀勻, 西學 (四庫全書提要) (전체)	趙翼, 天主教 (『皇朝經世文編』 69권)
李衛, 天主教辨, 經世文編 (부분)	李衛, 改天主堂為天後宮碑記 (『皇朝經世文編』 69권)
邱嘉穗, 又 (부분)	喬光烈, 上慧方伯書 (『皇朝經世文編』 69권)
趙翼, 又 (부분)	邱嘉穗, 天主教論 (『皇朝經世文編』 69권)
沈大成, 又 (전체)	西學, 四庫全書提要 (『皇朝經世文編』 69권)
喬光烈, 又 (부분)	沈大成, 讀通典職官 (『皇朝經世文編』 69권)
張甄陶, 澳門圖說	張甄陶, 澳門圖說 (『皇朝經世文編』 83권)
論澳門形勢狀	張甄陶, 論澳門形勢狀 (『皇朝經世文編』 83권)
上廣督論制馭澳夷狀	張甄陶, 上廣督論制馭澳夷狀 (『皇朝經世文編』 83권)

표 1. 『벽위신편』에서 『황조경세문편』을 인용한 부분과 원 목차 순서

이러한 선택적, 혹은 윤종익의 사고의 특징을 보여주는 인용은 『해국도지』의 인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먼저 윤종익이 『해국도지』에서 인용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關衛新編』 「諸家論辨」 중 『海國圖志』 인용부분	인용된 『海國圖志』 권호수 및 페이지수
魏源, 夷情備采	魏源, 夷情備采 (『海國圖志』 권 83 15a-17b)
魏源, 天主教考上(魏源)	天主教考上, 『海國圖志』 권27, 18a-21b
魏源, 天主教考中	天主教考中, 『海國圖志』 권27, 21b-23b
魏源, 天主教考下	天主教考下, 『海國圖志』 권27, 23b-31b
魏源, 天方教考	天方教考上, 『海國圖志』 권25, 11b-14b
魏源, 天方教考下	天方教考下, 『海國圖志』 권25, 14b-21a
楊光先, 關邪論	楊光先, 關邪論, 『海國圖志』 권27, 8a-9a

표 2 『벽위신편』 중 『해국도지』를 인용한 부분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해국도지』의 초판본이 1844년 10월 26일 연행사의 부사(副使)로 북경에 갔던 권대공이 1845년 3월 28일 귀환하면서 구입하여 조선으로 가져왔다. 이 책을 읽은 조선인들에 크게 관심을 보였던 것은 서양 선박 기술이나³⁾ 해방(海防)과 관련되어 있는 주해편(籌海篇), 유럽의 무력적 확장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국가의 식민화였다.⁴⁾ 『벽위신편』의 제 3권부터 7권까지가 모두 해방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윤종익이 척사와 해방론을 연결시켜 생각하되, 해방을 해야 할 이유를 척사, 즉 천주교로부터의 국가와 사회의 방어에서 찾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金正喜, 『阮堂集』 권 3, 「與權彝齋敦仁」.

4) 일례로 윤종익과 동시대를 살았으며 그와 동일한 학적,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던 신필영(申弼永, 1810-1865)은 『해국도지』를 읽고 유럽으로서 서양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의식 하에 62수로 구성된 『해국죽지사(海國竹枝詞)』를 작성한다. 죽지사는 특정 지역의 풍속 및 인정세대를 사실적으로 읊는 악부(樂府)의 한 형식으로, 조선 후기에는 중국, 일본 및 지리서 독서를 통해 이역(異域)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기도 한다. 신필영은 이 죽지사에서 동남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을 같이 언급하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속(屬)”이라는 표현을 통해 속국 즉 식민지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된다.

윤종익이 해방을 위해서 천주교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정관이 쓴 『벽위신편』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정관은 이 서문에서 전형적인 성리학자처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도(道)와 기(器), 성(性)과 정(情), 리(理)와 욕망(慾)의 구분이 혼란해지는 것이 천하의 변고라는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중략) 감정이 갈라져 사사로운 생각[意]이 되고, 사사로운 생각이 흘러 사악한 것[邪]이 된다. 욕망은 순환하여 이기심[私]이 되고, 이기심이 극에 달하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서양의 가르침이 천하를 교란시키는 것을 보면 그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감정이어서 그 귀착점은 결국 기(器)와 욕망이 된다. 만약 도로 이러한 상황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본성으로 회복하지 못하며 도리로서 제재하지 못하고서 태만하게 아래로 흐르려는 물의 성질을 막고 땔나무에 붙은 불을 때리는 것처럼 한다면 종신토록 노력해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183, 40년대의 조선의 상황에서 이정관이 서양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성리학을 언급하는 것은 당대인들이 보기에도 비현실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 같다. 그는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금 영국과 프랑스의 배가 바다를 휘젓고 다니며 마테오 리치, 줄리오 알레니의 책과 앵베르⁵⁾와 김대건⁶⁾의 무리들이 얼굴을 고쳐 자신들의 행적을 숨기고 방방 곡곡에 숨어있는데도 사대부들은 그저 도, 성, 리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강론하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정관은 이에 대해 서양이 동양을 침범하는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서양의 논리에 동양인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답한다. 즉, 그에 따르면 통상을 요구하거나 서양과 대립해서 싸우는 등의 일은 비유하자면 병을 피부에서만 치료하는 것으로, 뿔속까지 침투한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정관의 논리는 18세기 말부터 천주교나 서학에 낙관적이었던 정조(정조(正祖, 1752~1800) 등이 주장했던 정학(正學), 즉 유교(儒敎)가 제대로 서면 천주교와 같은 사학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논리대로라면 『벽위신편』에 정학, 즉 유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정관의 서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그 단초는 박규수의 「벽위신편평어(關衛新編評語)」에서 발견된다.⁷⁾ 「벽위신편평어」에서 박규수는 윤종익의 척사론을 칭찬한 다음 천주교를 교리 차원에서 비판한다. 박규수의 비판은 당시 척사론자들이 천주교를 미개한 수준의 종교로 간주하고 서학 중 수학이나 천문학은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중국기원론을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 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천주교가 침략성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그는 천주교가 천주교, 개신교, 영국국교회 등의 교파가 있어서 서로 사교로 간주하고 물리적으로 공격하며, 서양의 역사는 침략과 살육으로 점철되어 있고 천주교 역시 그런 역사와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박규수는 천주교의 대책의 하나로 척사서를 대대적으로 간행하고 보급해야 하며, 마카오에 진출한 서양인들로 하여금 모든 서학서를 헌납하고 이를 한문으로 번역해서 유생들로 하여금 이 책들

5) 로랑 조제 프마리위스 앵베르(Laurent-Joseph-Marius Imbert, 1797년~1839) 주교. 로마 가톨릭교회의 사제이며, 한국어명은 범세형(范世亨)이다. 기해사옥 때 순교했다.

6) 김대건(金大建, 1822~1846). 조선 최초의 사제이자 순교자.

7) 박규수의 「벽위신편평어」는 1848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텍스트는 일본 덴리대학(天理大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朴職齋文』,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영인·출판한 『벽위신편』(199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職齋叢書』(1996) 제 5권에 수록되어 있다.

을 연구해서 천주교 교리를 논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주교가 침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냥 배척하면 될텐데 왜 굳이 윤종희와 박규수는 천주교를 연구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일까? 그 이유는 이 글의 말미에 등장한다. 박규수는 중국의 유교 서적들이 싱가포르와 말라카로 계속 수출되고 있고, 이를 번역하거나 학습하는 서양인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유교의 언어를 습득한 서양인들은 천주교를 전파하는데 동양의 언어와 논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동양인들이 천주교의 논리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박규수의 평어로부터 우리는 『벽위신편』에 유교가 아닌 천주교에 대한 설명이 주로 나오에도 불구하고 이정관이 이 책이 유교의 도를 지키는 글이라고 보았던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또, 박규수의 「벽위신편평어」는 윤종희의 서양개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인 척사론자들은 서양 국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서학=사학=천주교라는 도식 하에 성리학의 관점에서 천주교의 논리를 비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윤종희와 노론 척사파들은 서양 국가들을 일별하고 국가와 천주교를 구분하는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천주교를 현재의 종교로 이해하기보다는 국가의 이념체계나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규범, 독트린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

이를 확인하게 해주는 것은 윤종희가 『해국도지』에서 관심을 두었던 것이 천주교 부분만이 아니라 천방교, 즉 이슬람에까지 확장되었다는 데 있다. 이는 『해국도지』나 徐繼畬의 『영환지략(瀛環志略)』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며, 윤종희가 적극적으로 인용했던 『황조경세문편』에서도 등장한다. 청대 관료인 조익(趙翼, 1727-1814)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익은 세계의 종교를 공교(孔敎), 불교(佛敎), 회회교(回回敎), 천주교(天主教) 넷으로 나누면서 공교가 전파된 국가로 남쪽으로는 베트남(交趾), 동쪽으로는 조선, 유구, 일본 밖에 없다고 말한다.⁸⁾ 조익의 글은 『벽위신편』에도 포함되어 있다. 조익과 유사하게 위원과 서여계는 세계의 국가들의 정보를 서술하면서 그 국가가 천주교 국가인지, 천방교 즉 이슬람 국가인지, 불교 국가인지 유교 국가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즉 183, 40년대 지식인들은 천주교를 유교의 대립적인 사학(邪學)이나 사교(邪敎)이나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단으로 보던 이전 세대의 지식인들과 달리 특정 국가의 정치와 사회의 토대가 되는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개항 이전 조선의 서양에 대한 태도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인데, 그 이유는 주체적인 개항을 통한 근대화 및 적극적인 서양 문물의 수입이 당대의 정치적 과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판단으로,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와 사회의 개방보다 서양에 대한 국내 여론이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당대의 정치가들에게는 더 핵심적 과제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또, 내부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새로운 문화가 유입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19세기라는 시점을 생각한다면 비현실적인 판단처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벽위신편』의 분석을 통해 1840년대부터 1860년대 사이 외부와의 충돌이라는 사건에 직면한 지식인들이 척사론과 해방론과 결합하여 서양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19세기 말 개항을 하기 전까지 서양 세력에 대한 국가의 태도, 정책적 결정에

8) 『皇朝經世文編』 권69 禮政. “天下大教四, 孔敎, 佛敎, 回回敎, 天主教也. 皆生於亞細亞洲, 而佛敎最廣…亦見明史外國傳孔敎, 僅中國之地, 南至交趾, 東至琉球日本朝鮮而已.”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거칠게나마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당시 노론 지식인들의 서양에 대한 인식이 결과적으로 서양의 문제를 청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관료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고, 이때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 그리고 당대까지 조선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속국(屬國) 개념이 정치적 비용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杉山亮 Ryo SUGIYAMA
(東京都立大学)

“포섭과 배제:
남북조 문제와 그 주변”

2023년 12월 9일

제16회 한일정치사상학회

포섭과 배제 – 남북조 문제와 그 주변

도쿄도립대학東京都立大学 스기야마 료杉山亮

1. 남북조 정운南北朝正閏 문제란?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도쿄 도립대학에 있는 스기야마 료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 이노우에 테츠지로井上哲次郎의 국체론国体論이 러일전쟁 이후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일전쟁 즈음부터 메이지 말기에 걸친 시기 동안에는, 국체라는 것이 모름지기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 이를 따지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902년 철학관哲学館 사건과 교과서 의옥疑獄 사건이 발생했으며, 1910년에 대역사건大逆事件에 따른 검거가 시작됩니다. 1912년에는 미노베 타츠키치美濃部達吉가 『헌법강화』憲法講話를 간행하여, 우에스기 신키치上杉慎吉와 천황의 헌법상의 지위를 놓고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상과 같은 사건들 중에서 중세일본 남북조시대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둘러싸고 일어난 「남북조 정운 문제」입니다. 1904년부터 국정교과서 편찬 업무를 맡게 된 키타 사다키치喜田貞吉는, 남조南朝와 북조北朝 중에서 어느 쪽이 정통인지 언급하지 않는다는 서술 방침을 취했습니다. 남조는 고다이고後醍醐 천황으로부터 군주위를 계승한 계통인데,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가 세운 북조에게 압도되어 요시노吉野로 도망친 뒤, 아시카가 막부 제3대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満 시절 북조에 흡수되는 형태로 소멸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시카가 막부가 무력으로 남조를 흡수한 셈이 되는데, 만약 남조를 정통이라 인정해 버리면 북조의 후예인 현 천황은 윤통閏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키타는 어느 쪽이 정통 혹은 윤통인지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두 개의 계통兩統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교과서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1911년 국정교과서 강습회에서, 미토학자水戸學者이자 학교장이던 미네마 신키치峯間信吉가 이의를 제출합니다. 미네마는 남조만이 정통이라 굳게 믿고 있었지요. 미네마의 이의는 신문사설을 통해 세간에 퍼졌고, 이를 읽은 와세다早稻田 대학의 한학자漢學者가 남조 정통론을 외치며 정치운동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회의원들이 중의원衆議院에서 질문하거나, 야당이 내각탄핵 결의안을 제출할 정도로 커다란 정치문제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북조 정통론자 및 양통 정통론자와 남조 정통론자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당시 카츠라 타로桂太郎 내각은 남조를 정통이라 판정하고, 교과서 역시 남조 정통론의 입장에서 다시 쓰도록 명령합니다. 키타는 휴직처분을 받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남북조 정운 문제에 관해 최근 중대한 연구성과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가령 치바 이사오¹⁾는 『남북조 정운 문제—역사를 둘러싼 메이지 말기의 정쟁』(南北朝正閏問題—歴史をめぐる明治末の政争(치쿠마 서방^{筑摩書房}, 2023년)에서, 정부 안팎의 여러 액터와 미디어가 이런 일련의 논쟁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상세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바에 따르면, 이 문제의 근저에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의 사회적 균열을, 역사교육을 이용한 도덕교육으로 미봉하고자 했던 통치 엘리트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메이지유신 당시의 반 막부파^{討幕派}와 친 막부파^{佐幕派}의 대립이나, 공업화 진전에 따른 빈부 격차, 사회주의 유행 등에 대해서, 천황의 신하라는 의식을 강조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역경에 놓여 있었음에도 천황에게 충절을 다한 남조의 충신들은 그 절호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조가 윤통 취급을 받게 되면 충절의 모범이 되지 못한다. 치바는, 바로 이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남조 정통론이 인기가 높았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구치 미치히로^{山口道弘}²⁾는, 키타가 속해 있던 관학 아카데미즘 역사학의 세대교체와 역사학 인접 학술분야와의 관계 변화에 착안해서, 논쟁 원인을 내재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910년대 관학 아카데미즘에서는, 실증과 사료고증을 중시했던 역사학 제1세대에 대해서, 쿠로이타 카츠미^{黒板勝美}·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 등 제2세대 역사학자들이 역사학을 다른 학술영역에도 적용한다는 응용사학을 구상해서는, 제1세대와 잠재적 대립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 밖에서는, 역사를 이용해서 도덕적 이상에 접근한다는 인격주의적 교육론을 주창하던 이노우에 테츠지로^{井上哲次郎}와 아네사키 마사하루^{姉崎正治} 등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키타가 제1세대 역사학을 계승해서 실증을 중시한 결과 남·북조를 병기한다는 방침을 취했음에 반해서, 제2세대 역사학자나 인문학자들은 남조 정통을 주창했기 때문에, 논쟁으로 발전했다고 야마구치는 말합니다.

¹ 『남북조 정운 문제—역사를 둘러싼 메이지 말기의 정쟁』(치쿠마 서방, 2023년), 「남북조 정운 문제」(야마구치 테루오미^{山口輝臣}/후케 타카히로^{福家崇洋} 편 『사상사강의【메이지 편 II】』思想史講義【明治篇II】(치쿠마 서방, 2023년). 이와 유사한 시각의 연구로는, 오비나타 스미오^{大日方純夫} 「남북조 정운 문제의 시대배경」南北朝正閏問題の時代背景(『역사평론』歴史評論 No.740, 2011년 12월)이 있다.

² 「정운—남북조 정운 논쟁」正閏—南北朝正閏論争(코노 유리^{河野有理} 편 『근대일본정치사상사—오규 소라이에서 아미노 요시히코까지』近代日本政治思想史—荻生徂徠から網野義彦まで, 나카니시야 출판^{ナカニシヤ出版}, 2014년), 「남북조 정운 논쟁과 관학 아카데미즘 사학의 문화사적 전개」南北朝正閏論争と官学アカデミズム史学の文化史的展開『법정연구』法政研究(제87권 4호·제88권 1호, 큐슈대학 법정학회^{九州大学法政学会}, 2020년 3월/7월)

본 심포지엄의 테마인 「포퓰리즘과 데모크라시」와의 관계에서 말하자면, 히로키 타카시 廣木尚³의 연구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히로키는, 정운 문제가 확대된 계기가 된 와세다⁴ 稲田 한학자 그룹의 자기의식에 주목했고, 이들이 정부 고관에 맞서는 약소한 「초망」 草莽이란 자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재야의 한 사인⁵ 私人に 불과한 초망에게는, 북조 정통론이나 양통 병기론이라는 국체의 위기에 직면하여 천황의 신하로서 마땅히 「간주」 諫奏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에 입각해서 자신들이 위기를 불러온 정부고관, 즉 「권문」 權門을 비판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보고에서는 히로키의 시점을 부연 설명하면서, 와세다 대학에 모인 한학자들의 중심적 존재였던 마츠다이라 야스쿠니 松平康國와 마키노 켄지로 牧野謙次郎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모두 관학 아카데미즘과는 다른 지적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 능력에 걸맞는 정부 요직에 발탁되기도 못했고, 아카데미즘에서도 사회에서도 주류로부터 걸뺏히면 배제 당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네트워크는 포섭성을 띠었고, 관료적 절차나 합의와는 다른 회로로 문교정책과 정치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마키노와 마츠다이라가 지녔던 사회적 위상과 운동 방식이야말로, 다이쇼⁶ 大正 시기 이후 일본 정치에서 보이는 포퓰리즘⁷의 선구이지 않을까? 본 보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키노 켄지로와 마츠다이라 야스쿠니의 전기적⁸ 傳記的 사향을 개관하고,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북조 정운 문제를 소재로, 히로키가 지정한 초망으로서의 자기규정을 재확인함과 더불어 운동 방식을 개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중모중대사건⁹ 宮中某重大事件을 소재로 들어, 이들이 정운 문제에서 맡았던 역할과 사용했던 방법론이 이 사건에서도 다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반관적¹⁰ 反官的 국가주의가 어떻게 포퓰리즘의 산실이 되었는지 그 일단을 밝히고자 합니다.

2. 와세다¹¹ 稲田 그룹의 형성

마키노 켄지로 牧野謙次郎(1862~1937)*

먼저 와세다의 한학자들에 관해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문제를 국회가 논의하게

³ 「남북조 정운 문제와 역사학의 전개」 南北朝正閏問題と歴史学の展開 (『역사평론』 歴史評論 No.740, 2011년 12월), 『아카데미즘 사학의 위기와 복권』 アカデミズム史学の危機と復権(시분카쿠 출판 思文閣出版, 2022년)

⁴ 츠츠이 키요타다 筒井清忠 『전전 일본의 포퓰리즘』 戦前日本のポピュリズム(쥬오코론 신사 中央公論新社, 2018년)

된 계기를 마련한 이가 마키노 겐지로입니다. 마키노는 1862년 사누키讃岐 지역의 다카마츠高松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부와 부친은 다카마츠 마츠다이라松平 가문을 섬기던 유학자였으며, 겐지로 역시 유소년기부터 경서經書를 소독素誦하기 시작했습니다. 1877년에 오사카大阪에 나가서,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의 학맥을 이은 유학자 후지사과 난가쿠藤沢南岳의 하쿠엔泊園 서원에서 1년간 수학합니다. 1893년에는 상경하여 『일본신문』日本新聞 기자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쿠가 카츠난陸羯南⁵·후쿠모토 니치난福本日南⁶·미야케 세츠레이三宅雪嶺⁷·코

*역자주: 원저자는 일본어 원문에서 연도 표기시에 원호와 서력 표기를 병용하고 있는데, 번역자는 편의상 이를 모두 서력 표기로 통일했다. 이하 동일.

⁵ 1857년 10월 14일생. 내각관보국內閣官報局에서 근무한 뒤, 1888년 타니 타테키谷干城 등의 원조를 받아 신문 『도쿄전보』東京電報를 창간했다. 이듬해 이를 『일본』日本으로 개명한 뒤 1906년까지 사장과 주필을 겸직했으며, 이 기간동안 일관되게 국민주의國民主義에 입각한 저술활동을 했다. 1907년 9월 2일에 51세로 사망. 무츠陸奥 지역 히로사키弘前(현 아오모리현) 출신. 사법성司法省 법학교 중퇴. 옛 성은 나카타中田이며 본명은 實. 저작으로 『근시정론고』近時政論考·『원정급국제론』原政及國際論 등이 있다. (『일본인명대사전』日本人名大辭典)

⁶ 1857년 5월 23일생. 세이쿄샤政教社 동인을 거쳐 1889년 신문 『일본』의 기자로 활동. 아시아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필리핀 루송 섬에 건너가기도 했다. 1905년 큐슈일보九州日報 사장 겸 주필을 지냈으며, 1908년에 국민당国民党 소속으로 중의원衆議院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21년 9월 2일 65세로 사망. 치쿠젠筑前(현 후쿠오카현) 출신. 사법성 법학교 중퇴. 본명은 誠. 저작에 『겐로쿠 쾌거록』元禄快挙録 등이 있다. (『일본인명대사전』)

⁷ 1860년 5월 19일생. 미야케 류켄三宅立軒의 차남. 1888년 시가 시게타카志賀重昂 등과 세이쿄샤를 결성했고, 잡지 『일본인』日本人(이후 『일본과 일본인』日本及日本人으로 개명)을 창간하여 국수주의를 주장했다. 재야 언론인으로 사회시평·철학·역사에 관한 논설로 활약했다. 1943년 문화훈장 수상. 부인은 미야케 카호三宅花圃. 1945년 11월 26일 86세로 사망. 카가加賀(현 이시카와현) 출신으로 도쿄대학 졸업. 본명은 유지로雄二郎. 저작으로 『진선미 일본인』真善美日本人·『우주』宇宙·『동시대사』同時代史 등이 있다. (『일본인명대사전』)

쿠부 세이가이国分靑厓・카츠라 코손桂湖村⁸・나이토 메이세츠内藤鳴雪⁹・마츠오카 시키松岡子規¹⁰ 등과 교우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쿠가 카츠난의 집은 카가加賀 마에다前田 가문의 저택 바깥 편에 있었다. 그곳을 네기시根岸에서는 우구이스 요코쵸鶯横町라 불렀다. 선생님이 사시던 곳은 마에다 가문의 별저別邸 안 깊숙이 있어서, 판자로 만든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에다 가문의 정원과 붙어 있었다. 그리고 같은 별저 안에 마츠오카 시키도 살고 있어서, 시키의 집 대문을 통해서 가면 카츠난의 집에 빨리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곳을 통해서 갔다. (미우라 카노三浦叶『메이지의 석학』明治の碩学)

본 보고와 관련되기 때문에 덧붙이자면, 마키노는 위 인용문에서 보이듯 시키의 집과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일본신문』 기자로 활약하다가 우익활동가가 된 이오키 료조五百木

⁸ 1868년 10월 16일생. 일본신문사日本新聞社에 객원사우 자격으로 초빙된 후, 중국에서 서화와 도기를 연구. 일본에 돌아온 뒤 토요東洋 대학과 코쿠가쿠인国学院 대학에서 강의하다 와세다 대학교 수에 취임하였다. 1938년 4월 3일 71세로 사망. 에치고越後(현 니이가타현) 출신으로 도쿄 전문학교(현 와세다 대학) 졸업. 본명은 고주로五十郎이며 별호別号로 라이안雷庵 등을 썼다. 저작으로 『한적해제』漢籍解題 등이 있다. (『일본인명대사전』)

⁹ 1848년 4월 15일 이요伊予 지역 마츠야마번松山藩 가신 집안에서 출생. 문부성文部省 참서관參事官을 거쳐 옛 마츠야마 번주가 설립한 도키와카이常磐会 기숙사 감독을 지냈다. 이때 기숙생이던 마츠오카 시키松岡子規에게 하이쿠俳句를 배웠고, 시키가 죽은 뒤에도 일본파日本派의 장로서 문단에서 활약했다. 1926년 2월 20일 80세로 사망. 에도江戸 출신. 본명은 素行이며 별호로는 南塘, 老梅居를 썼다. 하이쿠집으로 『메이세츠 하이쿠집』鳴雪句集, 저작으로는 『메이세츠 자서전』鳴雪自叙伝 등이 있다. (『일본인명대사전』)

¹⁰ 1867년 9월 17일생. 1892년 일본신문사에 입사하여 신문지상에서 하이쿠 혁신운동을 전개했다. 1895년 이후에는 병상에 있으면서 1897년 창간한 『호토토기스』ホトトギス(두견새: 역자), 1898년에 설립한 네기시 단가회根岸短歌会 활동에 주력하여, 단가短歌의 혁신과 사생写生 하이쿠·사생문을 제창했다. 야구의 보급에도 공헌하여 2002년 신세기 특별표창으로 일본 야구의 전당에 입회되기도 했다. 1902년 9월 19일 36세로 사망. 이요(현 에히메현) 출신으로 도쿄 제국대학 중퇴. 본명은 츠네노리常規이며 별호로 닛사이 서옥주인獺祭書屋主人, 대나무 마을사람竹の里人을 썼다. 저작으로 하이쿠집 『한산낙목』寒山落木, 단가집 『대나무 마을 노래』竹乃里歌, 그 밖에 『닛사이 서옥 하이쿠 이야기』獺祭書屋俳話, 『단가를 읊는 이에게 드리는 글』歌よみに与ふる書, 『병상육척』病牀六尺 등이 있다. (『일본인명대사전』)

良三¹¹와도 이 무렵에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02년에는 와세다 대학 강사로 취직해서 한학을 강의하게 됩니다.

마츠다이라 야스쿠니松平康国(1863~1945년. 호는 瓊浦・北疆斎・破天荒斎・天行 등)

한학자 외길 인생을 걸었던 마키노와는 대조적으로, 마츠다이라 야스쿠니는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친형은 영어학자인 사쿠마 노부야스佐久間信恭입니다. 마츠다이라는 니쇼가쿠샤二松学舎에서 배운 뒤, 정치에 뜻을 품고 1885년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미시건 대학에서 정치법률을 공부하고 1889년에 귀국했습니다. 이후 도쿄 전문학교 강사를 지내면서,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 편집국에서 근무합니다¹². 그리고 이곳에서 다카다 사나에高田早苗¹³나 이치시마 켄키치市島謙佑¹⁴ 등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계열 인사들과 접점을 갖게 됩니다. 1903

¹¹ 1870년 12월 14일생. 1889년 상경하여 동향 출신인 마츠오카 시키 등과 함께 하이쿠 작시作詩에 몰두하였다. 1895년 일본신문사에 취직했으며, 1901년에 『일본』日本 편집장을 지냈다. 1928년 세이쿄샤로 옮겨 『일본과 일본인』을 주재했다. 대아시아주의를 주창했다. 1937년 6월 14일 68세로 사망. 이요(현 에히메현) 출신. 하이쿠계에서의 호俳号는 효테이飄亭이며, 저작으로 『효테이 하이쿠 일기』飄亭俳句日記 등이 있다. (『일본인명대사전』)

¹² 『요미우리 신문』은 1887년 타카다 사나에高田早苗가 초대 주필에 취임하면서, 정치색을 띠는 한편으로 츠보우치 소요坪内逍遙, 이치시마 켄키치市島謙吉, 요시다 토고吉田東伍, 시마무라 호게츠島村抱月, 마사무네 하쿠초正宗白鳥, 오가와 미메이小川未明 등 수많은 와세다 관계자 및 출신자를 받아들였다. 타카다 역시 1910년 3월까지 계속 중역 자리에 있었다. (카와사키 요시노리川崎吉紀「신문업계 사회집단으로서의 와세다」新聞界における社会集団としての早稲田, 이노키 타케노리猪木武徳 편『전간기 일본의 사회집단과 네트워크 데모크라시와 중간단체』戦間期日本の社会集団とネットワーク—デモクラシーと中間団体 (NTT출판, 2008년) p.139

¹³ 1861년 3월 14일생.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를 도와서 입헌개진당立憲改進黨 결성과 도쿄 전문학교(현 와세다 대학) 창립에 참여. 1890년 중의원 국회의원(당선 6회, 개진당改進黨). 외무성外務省 통상국장, 제2차 오오쿠마 내각 문부성 장관 등을 역임. 1923년부터 1931년까지 와세다 대학 총장. 1938년 12월 3일 79세로 사망. 에도 출신으로 도쿄대학 졸업. 호는 한포半峰이며 저작으로 『교육 시언』教育時言・『한포 옛날이야기』半峰昔ばなし 등이 있다. (『일본인명대사전』)

¹⁴ 1861년 2월 17일생. 도쿄대학을 중퇴하고 1882년 입헌개진당에 참여했다. 이듬해 고향 니이가타新潟의 『타카다 신문』高田新聞, 이후 『니이가타 신문』・『요미우리 신문』 주필을 맡았으며, 1894년 중의원 국회의원(당선 3회). 도쿄 전문학교 창립과 그 운영에 헌신했다. 1906년 국서관행회国書刊行会를 설립했고, 일본 도서관협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1944년 4월 21일 85세로 사망. 호는 순조春城이며 저작으로 『순조 필어』春城筆語 등이 있다. (『일본인명대사전』)

년에는 청조清朝 직예총독直隸總督이던 원세개袁世凱의 초빙을 받아 중국을 방문했고, 1909년에는 호남총독湖南總督 장지동張之洞의 정치고문이 되어 입헌제도에 관해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96년 무렵부터 코노에 아츠마로近衛篤磨¹⁵의 정치단체인 조난소城南莊에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마츠다이라는 이곳에서 대외경파對外硬派와 친분을 맺게 되었고, 1904년에 아츠마로가 사망한 이후에도 조난소에 출입하며 이오키 료조五百木良三·오타케 칸이치大竹貫一¹⁶·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¹⁷·모리타 기로森田義郎 등과 「코노에의 잔당余黨」을 형성하기에 이릅니다. 마츠다이라는 이오키와 모리타의 생활비를 원조하는 등 우익활동가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¹⁸.

와세다를 향한 길

마키노와 마츠다이라는 인생의 경로는 달랐지만, 둘 다 와세다 대학에서 근무했고 오쿠마 시게노부의 브레인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마츠다이라는 와세다가 아직 도쿄 전문학교로 불리던 1891년부터, 그리고 마키노는 1901년부터 교편을 잡았습니다. 창설 당시의 와세다 대학은 강렬한 야당 기질을 갖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야 정신」과 「진취적 정신」에서 비롯된 학생들의 반체제 경향 때문에, 관료가 아니라 신문기자나 지방의 정당정치가를 지

¹⁵ 1863년 6월 26일생. 코노에 타다히로近衛忠熙의 9남이며, 코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히데마로秀麿 형제의 부친이다. 형 타다후사忠房의 집안을 잇기 위해 양자로 들어간 후, 라이프치히 대학 등에서 공부했고, 1890년 귀국해서 귀족원貴族院 국회의원이 되었다. 번벌藩閥 정부를 비판했으며 대륙 정책에 적극 가담했다. 아시아 각국의 대동단결을 주장하여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 등을 결성했다. 학습원學習院 원장, 귀족원 의장, 추밀고문관枢密顧問官을 역임했다. 1904년 1월 2일 사망. (『일본인명대사전』)

¹⁶ 1861년 3월 12일생. 1894년 중의원 국회의원(당선 16회). 국권주의를 주장했고 국민당国民党, 혁신당革新黨 등을 거쳐, 1932년 국민동맹國民同盟에 가입했다. 러일전쟁에서는 대러 강경론을 주창했으며, 러시아와의 강화에 반대하는 히비야日比谷 국민대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다이쇼 시대에는 보선普選 실시운동에 열심이였다. 1944년 9월 22일 사망. (『일본인명대사전』)

¹⁷ 1869년 12월 1일생. 변호사가 된 후 동아동문회, 대러동지회對露同志會에 참가하여 대러 주전론을 주장했다. 1903년 중의원 국회의원(당선 10회).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 간사장幹事長, 카토 타카아키加藤高明 내각 법무성 장관, 타나카 기이치田中義一 내각 철도성 장관을 지냈으나, 1929년 사사철 의욕 사건五私鉄疑獄事件에 연루되어 정계를 은퇴했다. 1942년 2월 5일 74세로 사망. 시나노信濃(현 나가노현) 출신. (『일본인명대사전』)

¹⁸ 야마가미 지로山上次郎『가인 모리타 기로와 시키·효테이』歌人森田義郎と子規・瓢亭(후루카와 서방古川書房, 1972년).

향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¹⁹. 마키노와 마츠다이라는, 야당 기질이 강한 와세다 인맥 중에서도, 한학에 관한 지식 면에서 그룹의 대표인 오쿠마 시게노부보다 월등히 뛰어나 그에게 관련 지식을 제공한다고 하는 특이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 둘의 인맥은, 오쿠마 같은 지배층 establishment의 일원부터 이오키 료조와 같은 우익활동가, 혹은 카와시마 나니와川島浪速 같은 대륙낭인大陸浪人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있었습니다.

【】와세다 대학의 마키노·마츠다이라 두 선생은 오쿠마 후작侯爵의 중국문제 브레인으로, 중국통인 미야지마 다이하치宮嶋大八·카와시마 나니와·츠크다 노부오佃信夫 등과 친교가 있었다. 그리고 이 두 교수와 동료인 카츠라桂 선생도 강유위康有為·양계초梁啓超나 그 밖의 요인들과 교제했고, 마찬가지로 중국문화에 정통하셨던 분들(미우라 카노, 『메이지의 석학』)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남북조 정운 문제에 임했던 것일까요?

3. 반관적反官的 국가주의—자기규정과 운동방식

1911년 요미우리 신문 지면에 정부 교과서를 비판하는 사설이 실리자, 마키노 일파는 이 사설에 주목하게 됩니다. 마키노는 남북조의 정운을 분명히 가리지 않는 문부성文部省의 태도에 분개했고, 일이 문부성 교과서와 관련된 이상, 국회에서 문제 삼는 편이 효과적이겠다고 마츠다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키노와 마츠다이라 모두, 정당 차원에서 운동을 벌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국회의원 개인 자격으로 국회에서 거론하는 형태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귀족원貴族院의 타니 타테키谷干城²⁰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둘은, 문제의 성질상 귀족원이 일을 맡는 것이 적당하겠고, 귀족원 중에서도 이와 같은 큰 일을 맡기에 타니谷 장군만큼 책임자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장군은 요새 병상에 있어 면회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중의원에게 기대를 걸기로 했다(마츠다

¹⁹ 히로키 타카시廣木尚「와세다 대학의 건학이념과 「와세다 인맥」」早稲田大学の建学の理念と「早稲田人脈」『미타 평론』三田評論 No.1255(2021년 5월)

²⁰ 1838년 2월 12일생. 본래 토사土佐 지역 코치번高知藩의 무사 출신으로, 유신 이후 육군에 들어가 쿠마모토 진대熊本鎮台 사령장관을 지냈다. 세이난 전쟁西南戦争 때 사이고 타카모리西郷隆盛가 이끄는 반군에 맞서 쿠마모토성을 지켜냈다. 1878년 육군중장. 제1차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에서 농상공부 장관에 취임하지만,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외무성 장관의 조약개정안에 반대하여 사임했다. 이후 학습원学習院 원장과 귀족원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11년 5월 13일에 사망. (『일본인명대사전』)

이라 야스쿠니/마키노 켄지로「국정교과서 사건 수기」国定教科書事件手記)

그러나, 타니는 병으로 거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중의원의 후지사와 모토조藤澤元造(코카쿠黃鶴)에게 일을 부탁하게 됩니다. 후지사와는 마키노가 수학했던 하쿠엔泊園 서원 원장 집안의 3대째로, 마키노와는 사촌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둘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후지사와는 이들과 행동을 함께하기로 하고, 문부성에 있던 기타흠田와 미카미 산지三上参次를 방문하여 같이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지사와는, 국체와 관련된 일로 자기 홀로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견디지 못했는지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여기에 카츠라 타로桂太郎 내각의 물밑공작도 있어, 간신히 기회를 얻은 국회질문은 지리멸렬한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지사와는 의원직을 사직해 버립니다.

마키노와 마츠다이라는 활동은 국회에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끝났지만, 국회질문 자체는 크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여론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그 결과 남조 정통론과 북조 정통론, 그리고 양통 병립론은 신문 미디어를 포함해서 세간에서 공공연하게 논의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키노 일파도 한학자들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한학자인 우치다 슈헤이 内田周平²¹가 운동을 위해 일가 전체를 이끌고 상경했고, 그 밖에 미시오 쿠마타三塩熊太²², 코바야시 쇼사쿠小林正策 등이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입헌국민당立憲国民党的 이누카이 츠요시犬養毅, 귀족원 국회의원 오오키 엔키치大木遠吉 등도 관심을 보입니다. 여기에 남조 정통론자인 종교학자 아네사키 마사하루姉崎正治, 역사학자 쿠로이타 카츠미黑板勝美 등이 가세하여 대일본국체옹호단大日本国体擁護団이 결성됩니다*. 대일본국체옹호단은 연설회를 개최하거나 빠라를 뿌리거나 해서 여론에 호소했고, 마침내 입헌국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 탄핵결의안이 제출됩니다. 이렇게 운동이 자신들의 손을 떠나 진행되자, 마키노와 마츠다이라는 옹호단에서 손을 빼게 됩니다.

관학官學 아카데미즘과 정부 요인들의 대응

²¹ 1854년 11월 7일생. 학습원 강사, 제5고등학교 교수 등을 거쳐, 1898년 철학관哲学館(현 토요東洋대학) 교수. 유학과 하르트만Nicolai Hartmann 미학을 강의했다. 1944년 12월 23일 사망. (『일본인명대사전』)

²² 문학사文学士. 마키노 일파와 행동을 함께 했으며, 1923년에 다이토 문화학원大東文化学院이 설치되자 학생으로 들어가 마키노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이노우에 테츠지로井上哲次郎가 마키노 일파를 학원에서 몰아내자, 이노우에 규탄운동에 참가했다.

*역자주: 원문에는 '대일본국체옹호단', '대일본옹호단', '국체옹호단'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번역문에서는 사료상의 표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대일본국체옹호단'이나 '옹호단'으로 통일했다.

이렇게 여론이 남북조 정운을 놓고 가열되어 간 반면, 이 소동의 시작이라 할 관학 아카데미즘 쪽의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치바 이사오가 지적한 것처럼, 남북조 정운 문제의 특징은 논자들이 상대 주장을 전혀 듣지 않고 마치 신앙고백처럼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했다는 점에 있었는데²³, 관학 아카데미즘에서는 의사표명 자체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관학 아카데미즘이 보인 태도에서 공통된 점은, 「남북조 문제는 정운경중正閏輕重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역사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익명의 인물은 『호치 신문』報知新聞 지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문부성 본래의 의향은, 남조와 북조 사이에 정운 구별을 하거나, 혹은 북조를 정통이라 간주하거나, 내지는 남북조 양립을 확정하고자 시도하는 것에 결코 있지 않다. (중략) 정운을 결정짓지 않고 양쪽을 존송尊崇하는 선에서 그치며, 오직 신자臣子 만을 대상으로 그 충역忠逆을 구별하여, 충군애국이란 국수國粹를 발휘하게 하고자 할 뿐이다. 따라서 아시카가 타카우지足利尊氏 같은 이에 대해서는, 명백히 남조에 대해 역신逆臣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이 확립한 북조에 대해서도, 그 존명尊名을 빌어 자신만을 위한 이른바 무가武家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신자臣子の 분수를 넘은 처사로서 결코 충신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을 교시해 두었다. (『남북조론: 현대 명가』南北朝論: 現代名家)

그러니까, 교과서의 편찬 의도는 어디까지나 신하된 자들의 충성심의 모범을 보이는 것에 있고, 황통이 정통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것은 역사교육의 범주를 넘는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야마구치도 지적하고 있지만 교과서의 편찬의도에는, 메이지유신 이래 지속된 사회적 균열 문제와, 그리고 아이누アイヌ 민족, 류큐琉球 민족, 한국병합으로 일본에 편입된 한민족 등 다양한 민족의 통합이란 문제를, 동일한 군주인 천황을 받들어 모신다는 국체 관념으로 미봉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²⁴. 그런데 마치 이 정통성을 시험이라도 하듯 이리저리 뜯어보고 정운의 근거를 논한다면, 정통성의 근거는 황통과는 별개의 것으로 옮겨 가 버립니다. 정치적 정통이란, 「사람들이 당연한 전제로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승인하는 것, 따라서 누구도 그것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²⁵」에 존재하기 때문에. 황통의 정운이라는 제국일본의 통치 정통성 근거를 공공연하게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정통성을 위협하기 쉽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관학 아카데미즘을 비롯한 기득권층establishment은 정운 논쟁에 소극적이었는

²³ 치바千葉(2023), p.97.

²⁴ 야마구치山口(2003년 3월), pp.387~388.

²⁵ 모리모토 안리森本あんり『이단의 시대—정통의 형태를 찾아서』異端の時代—正統のかたちを求めて(이와나미 서점岩波書店, 2018년), p.234.

데, 이에 반해 마키노·마츠다이라를 비롯한 대일본국체옹호단 멤버들은 적극적으로 정운 문제를 논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 오오키 엔키치大木遠吉가 남긴 문장에는, 이들이 어떻게 자신을 규정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국체옹호단이라는 정정당당한 이름과 활동에서 볼 때, 누구라도 큰 유력자들이 중심이 되고 큰 재산가들이 후원하는 단체라고 상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실체는 소수의 학생學究과 장년지사壯年志士の 결합체에 불과했다.

【】항공하게도 국가의 녹위祿位를 받아 직수職守하는 신분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잊고 본인과 그 집안의 편의만을 꾀하거나, 아니면 권문權門의 개가 되거나, 혹은 국체를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걸음 잘못 내딛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음에도, 이를 뒤돌아보지 않고 국가를 우려하는 사士가 초망草莽 중에서 나온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다. 이를 보면 조종祖宗의 여택余沢과 금상금上 폐하의 지덕至德이 얼마나 깊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오오키 엔키치「서」序『정운단안 국체의 옹호』正閔斷案 国体之擁護)

고위고관들이 권력과 보신保身을 위해 권문의 개가 되었음에 반해, 자신들은 국가의 장래만을 우려하는 마음을 지닌 초망이라는 것입니다. 일개 한학자에 불과했던 마키노나 마츠다이라, 그리고 우치다 등은 그렇다 해도, 귀족원 국회의원인 오오키나 국민당 당수 이누카이를 과연 똑같이 초망이라 부를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제쳐 두더라도, 이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은 확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개 초망에 불과한 이들이 어떻게 황통의 정운 같은, 국가 정통성의 근거에 개입할 수 있었을까요? 마츠다이라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자식이 있다면, 그 아버지는 불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천자天子께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신하가 7명 있다면 천하를 잃는 일은 없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간쟁諫爭 또한 신하의 도리이다. (중략) 황통은 국가의 일이며 황실만의 내사內事가 아니다. 국체의 신정新政을 옹호한다는 정신에서 정운을 논하겠다는데, 어찌 불가不可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마츠다이라 야스쿠니「사학의 추세와 국체관」史学の趨勢と国体観)

충신일수록 시비곡직을 따지고 황통의 정통성을 논하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초망의 소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마츠다이라 일파는 황통을 존송한다는 점에서 국가주의자라 볼 수 있겠지만, 지배층establishment이 생각하는 식으로 충의와 황통을 논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적극적

으로 개입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다는 점에서는 반관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운동의 방식

마키노·마츠다이라 일파를 비롯한 대일본국체옹호단 멤버들은, 지배층이 기피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초망의 에토스를 지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옹호단의 운동이 활발해져 야당이 추진하던 정권탄핵과 결부되어 가면서, 마키노와 마츠다이라는 서서히 운동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정윤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된 중의원에서의 질문도, 마키노와 마츠다이라는 군이 무소속인 후지사와에게 맡기고자 작업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중의원이 부패했다고는 해도 아직 둘 셋 정도는 괜찮은 이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둘은 이것이 정치문제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정당이 이를 이용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 이외의 인물에게 의탁해야 할 것이다. (마츠다이라 야스쿠니/마키노 켄지로 「국정교과서 사건 수기」)

위의 글에서는 마키노와 마츠다이라의 「고충」孤忠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치적 이용이나 도당徒党的의 형성을 피하여 개인 단위로 행동하고 연대한다. 초망 지사志士는,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 속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 자격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보여준 운동 방식은, 정당정치가나 여론을 움직여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따라서 신문 미디어가 발달한 메이지明治 말기에, 이들의 운동 방식은 손쉽게 정치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모순을 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일본국체옹호단이 추진했던 운동은, 결국 이누카이를 중심으로 한 카츠라 타로 정권 탄핵결의안 속으로 흡수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4. 반관反官 국가주의의 근대

초망지사를 자임하는 소수 지식인이 먼저 여론을 대상으로 운동을 한 뒤, 여론의 지지를 배경으로 지배층을 공격한다, 그리고 그 문제가 국회로 넘어간다, 혹은 넘어가지는 못해도 이 과정에서 지배층은 공격을 받는다. 이러한 구도는 1920년에 벌어진 궁중모종대사건宮中某重大事件에서도 반복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황태자 히로히토裕仁의 혼약자로 내정된 쿠니노미야 케久邇宮家の 나가코 여왕良子女王에게 색맹 유전이 있다는 의혹이 부상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원로元老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이를 문제시하여 혼약을 취소하려는 쪽으로 움직이

게 됩니다. 하지만 황태자 담당관東宮御用掛이던 스기우라 주고杉浦重剛²⁶는, 궁정이 한 번 결정한 사항을 뒤집는 것은 「윤언여한」 綸言如汗이란 성어처럼,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입장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스기우라는 자신처럼 한학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마키노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마키노는 이를 다시 마츠다이라와 상담했고, 마츠다이라는 이 오키나 오타케 같은 조난소城南莊 그룹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스기우라의 당초 의도는, 마키노 일파에게 오키나 시게노부를 설득하게 해서 야마가타山縣에 맞서게 한다는 것이었는데, 마키노는 이러한 스기우라의 생각을 뛰어넘어 다음과 같이 방침을 세웁니다.

【】나(원저자주: 마키노 켄지로)는 이 문제를 국론에 호소해서 그 성패를 결정하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이를 들은 우리가 말하기를, 스기우라 선생의 뜻은, 이 사건이 궁중 일이므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디 일을 조용히 어둠 속에 묻어 버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심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나 또한 몹시 격앙되어 분개하며 말했다. 우리 황실의 문제는 곧 우리나라의 문제이며, 이 점이 우리의 국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할 때 크게 뛰어난 까닭이다. 이 일이 어찌 보잘것없는 스기우라 한 개인의 사사私事이겠는가? (중략) 국가의 중대한 문제는 마땅히 국민과 함께 공희공우公喜公憂해야 할 것이다. (마키노 켄지로 「피운비기」 披雲秘記)

마키노·마츠다이라 일파는 이오키 료조와 모리타 기로 같은 조난소城南莊의 우익 활동가들과 함께 행동을 개시했고, 황족이나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같은 중신重臣에게 제언서와 의견서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중의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움직임이 보이자, 야마가타는 결국 국회에서 황통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 사태를 막고자 추밀원樞密院 의장을 사임하고 어쩔 수 없이 그 결과로 실각하게 됩니다.

마키노와 마츠다이라는 스기우라의 뜻에 반해 황통 문제를 정치문제화하고자 했던 셈인데,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코쿠부 세이가이国分靑厓가 마키노 켄지로에게 이야기한 것

【】메이지 이래 천하의 그 누구도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었던 야마가타 공공을 한 순

²⁶ 1856년 3월 3일생. 대학남교大學南校(역자: 메이지시대 초기의 관립고등교육기관으로, 도쿄제국대학 법학부·문학부·의학부의 전신)에서 수학한 뒤 영국유학. 1882년 도쿄대학 예비문장予備門長(역자: 후일의 제1고등학교 교장). 1885년 도쿄 영어학교 설립, 1888년 미야케 세츠레이 등과 함께 세이쿄샤를 결성하여 국수주의를 주창했다. 1890년 중의원 국회의원. 1914년 동궁어학문소어용과東宮御學問所御用掛 취임. 1924년 2월 13일 사망. (『일본인명대사전』)

간에 저 깊은 구천으로 보내 버린 것은 여러분이었기에 가능했다. 이는 토고東郷平八郎 대장이나 스기우라 옹이라 해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면 일단 관직에 오른 자는 아무리 장관, 대장이라 해도 야마가타는 마치 자기 가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경멸하며 덤비지만, 초망 같은 사람들, 특히 이런 문제에 자신의 처지를 돌보지 않고 뛰어드는 선생님들 같은 분들을 상대로는, 야마가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 말했다. (마츠다이라 야스쿠니 「동궁후 폐립사건 일지」東宮后廢立事件日誌 여록余祿)

부패한 채 권세를 휘두르는 야마가타 같은 권문權門·벌족閥族에게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맞서는 초망. 초망은 국체와 황통에 관해서 일종의 도덕적 평등성을 가지며, 이를 정치문제화함으로써 벌족을 공격한다. 남북조 정운 문제에서 나타난 구도와 어딘가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²⁷?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북조 정운 문제에서 드러난 것은, 황통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해서 여당과 지배층을 공격하는 중요한 도구로 삼는다는 경향성입니다. 이 경향성이 국회에 반영되면, 국회는 더 이상 이해를 조정하는 장소가 아니라 황통에 관한 이단 심문장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런 이단심문을 이용한 이들은 대체로 야당 정치가들이나 비주류파 정치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 문제를 찾아내지 않았습니다. 황통이나 국체에 관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국회로 넘긴 것은, 바로 마키노와 마츠다이라 같은 반관적 국가주의 지식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카데미즘의 방류에 있었고, 문부행정이나 문교정책에서는 배제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학식과, 와세다 대학이란 야당 기질 강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우익 활동가나 정치가, 미디어 등 사회 각층을 관통해 흐르는 포섭성 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냈습니다. 궁중모종대사건에서도, 마츠다이라는 전에 근무하던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밤에 요미우리 신문 사원 모 씨가 기세 좋게 찾아와서는, 방금 내무성內務省에서 황태자 혼약 건은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지시가 왔다고 보고했다. 자리에 있던 일동은 만세를 외쳤다」(마츠다이라 야스쿠니 「동궁후 폐립사건 일지」東宮后廢立事件日誌 2월 10일 조문)

그리고 이들이 자신을 초망으로 규정했다는 점 때문에, 이들이 보기에 황통이나 국체의 위

²⁷ 아사미 마사오淺見雅男『투쟁하는 황족—어느 미야케의 3대』闘う皇族—ある宮家の三代(카도카와 서점角川書店, 2013년)에 따르면, 마키노와 마츠다이라 일파의 운동은 사건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아사미에 따르자면, 야마가타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스기우라로부터 다른 루트로 상담을 받은 코지마 카즈오古島一雄·시모오카 추지下岡忠治를 중심으로 하는 중의원에서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코지마 등이 지향했던 바는 마키노 일파와 마찬가지로 혼약해소 문제를 정치문제화하는 것이었으므로, 사건을 대하는 자세에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기라 판단되는 일이 발생하면, 지배층에 대해 불 같이 공격을 퍼붓게 됩니다. 이들의 네트워크가 광범위한 사회 영역으로 문제를 확산시키고, 결국 국회를 무대 삼아 정치문제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마키노와 마츠다이라 같은 존재와 남북조 정운 문제는, 타이쇼大正 시기 이후 반복되는 전전戰前 일본에서의 포퓰리즘 현상의 발화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소재를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